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52-01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도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김 인 숙

2011년 12월 27일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진 소개

책임연구원 김 인 숙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기획이사)

공동연구원 현 온 강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명예교수)

연구원 황 소 영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교육팀장)

정 병 수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연구보고서

요약	3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	15
제1절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목표	15
제2절 인권교육의 내용	18
제3절 인권교육의 원리	21
1. 유아교사와 유아	21
2. 유아교사의 특성 및 전문성	22
3. 유아교사의 아동인권 현장 적용	23
제4절 인권교육 교수방법	25
제5절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29
1. 해외 유아교사 인권교육프로그램	29
2. 국내 유아교사 인권교육 프로그램	34
제3장 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45
제1절 욕구조사의 실시	45
1. 욕구조사 대상 선정 및 실시방법	45
2. 욕구조사 문항 구성	46
제2절 욕구조사 분석결과	47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8

2. 인권교육에 대한 일반사항	51
3. 인권교육 경험 및 활용여부	53
4. 인권교육의 필요성	57
5. 인권교육 방법	58
6. 인권교육 목표 및 내용	60
7. 인권교육 실행의 실제	61
제3절 면접조사의 실시 및 분석 결과	64
1. 면접조사 참여자의 대상 및 실시방법	64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66
제4장 프로그램 개발	69
제1절 프로그램의 인권 요소 선정	70
제2절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	71
제3절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성	74
1. 인권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74
제4절 인권교육프로그램 영역의 교육내용	76
제5절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교수방법	80
1. 민주, 참여식 방법	80
2. 상호연계와 독립적 구성	81
3.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81
제5장 결론 및 제언	82
제1절 결론	82
제2절 제언	85

제2부 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91
제1장 아동이란?	101
교육자료 1. 아동이란?	102
1.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118

2. 아동기와 아동존중	124
제2장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134
교육자료 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135
3. 아동인권과 배경	151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162
제3장 주제별 아동인권	178
교육자료 3. 주제별 아동인권	179
5. 비차별의 원칙	202
6. 주제별 아동인권	215
제4장 아동 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234
교육자료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235
7. 아동인권 모니터링	238
8. 콘텐츠 속 인권 상황	243
9.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동	246
10.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251
참고문헌	255
부록	263

표 목 차

<표 1> 인권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주제]	7
<표 2-1> UN이 제안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25
<표 2-2> 교과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원리	27
<표 2-3> 미네소타대학의 인권교육자료센터와 국제사면위원회가 제안한 인권교육 교수방법	28
<표 2-4> 「Human Rights Academy」의 주요 교육 내용	31
<표 2-5>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내용	35
<표 2-6> 교사대상 인권교육 과정 운영	36
<표 2-7> 2010년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	37
<표 2-8>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교육 관련 교재개발 현황(2012년 현재)	37
<표 2-9>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현황	39
<표 2-10> CAP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41
<표 2-11> 인권교육 워크숍 일정 및 내용	43
<표 3-1> 인구사회학적 배경 (기관별)	48
<표 3-2> 인구사회학적 배경 (대상자)	50
<표 3-3> 교사의 인권교육 선 경험 유무	51
<표 3-4> 교사의 인권교육 선경험 시기와 동의여부	52
<표 3-5>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53
<표 3-6> 인권교육 경험 기관과 교육연수 횟수	53
<표 3-7>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이유	54
<표 3-8> 인권교육 내용 및 효과성	55
<표 3-9> 인권교육 효과성 유무의 이유	56
<표 3-10> 인권교육 경험의 활용 여부(기존 교육의 실태 분석)	57
<표 3-11> 인권교육 경험 활용 형태 및 효과성	57
<표 3-12> 인권교육의 필요성	58
<표 3-13> 인권교육 방법	59
<표 3-14> 인권교육의 내용	60

<표 3-15> 인권교육 실행 형태	61
<표 3-16> 인권교육 실행의 실제	63
<표 3-17>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65
<표 3-18> 심층면접의 범주별 질문과 응답 내용	66
<표 4-1>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주제	74
<표 4-2> 인권교육 모듈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77
<표 5> 프로그램의 구성	92
<표 6> 교육모듈의 회기별 구성과 주제	94
<표 7> 모듈1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95
<표 8> 모듈2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96
<표 9> 모듈3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97
<표 10> 모듈4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98
<표 11> 교육방법	100
<표 12> 1장의 구성(1, 2회기)	101
<표 13> 1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118
<표 14> 2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124
<표 15> 2장의 구성(3, 4회기)	134
<표 16> 3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151
<표 17> 4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162
<표 18> 3장의 구성(5, 6회기)	178
<표 19> 5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202
<표 20> 6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215
<표 21> 4장의 구성 및 회기별 목표(7~10회기)	23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진행 모형	14
<그림 2-1> 유아교육기관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구성	24
<그림 3-1> 욕구조사 문항도	47
<그림 4-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	69
<그림 4-2> 프로그램에 반영된 인권 요소	70
<그림 4-3> 유아교사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	72

»»» 1부 연구보고서





요약

모든 공동체 사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대상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 제 3, 4차 아동권리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모든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아동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교육을 실행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번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은 영유아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교사를 훈련하는 교육 전문가 집단 역시 포함된다. 영유아기 아동의 부모와 교사는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와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국가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2008년 유치원장(감) 대상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2009년 보육교사용 아동 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가 마련되면서 조금씩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의 체계나 제도적 마련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문미희(2005)가 제안하듯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학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도록 돕고 유아교육환경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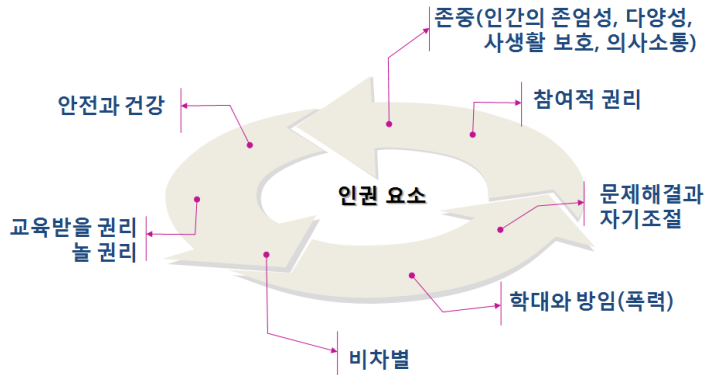
-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아동권리 영역 추출
 - 세계인권선언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기존 교사 대상의 국내외 인권교육프로그램 특성 검토
 - 해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영역 및 내용, 방법
 - 국내 활용되고 있는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주요영역 및 내용, 방법
- 국내 유아교육현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조사
 - 관련 신문기사를 통한 유아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이슈 조사
 - 유아교사 대상의 욕구조사 결과를 통한 시급한 이슈 조사
- 인권교육의 목표와 원칙의 토대 마련
 - 유아 인권의 이해 및 유아를 향한 인권적 태도 형성
 -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실현을 교육 전반에 적용
 - 인권을 존중하는 유아교육환경 형성
- 현장적용이 용이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 자격종류(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및 구분(유치원 정교사 1·2급, 보육교사 1·2·3급)과 전공이 다양한 유아교사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 유아교사가 융통성 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듈별 프로그램 구성
 - 교육환경에 맞추어 조정 가능하도록 각 모듈을 개별적인 차시로 구성
 - 참여적 활동을 포함한 워크숍 형태의 교육프로그램과 개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중심의 교재를 함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형 욕구조사, 6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면접형 욕구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를 통해 추출된 결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반영되었다. 설문형 욕구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교사들로 총 492명의 교사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조사 목적에 따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및 유아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욕구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조사방법은 우편과 전자우편, 연합회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62%가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받아본 38%의 교사 중 63%가 교사 임용 이후 1-2회의 인권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인권교육의 참여 경험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6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하였다. 교사들이 원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아동관련 이슈가 월등히 많은 응답률(71.3%)을 보였으며, 약 15%에 불과한 교사만이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유아교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 콘텐츠로 인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80%로 가장 많이 나타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교사는 인권교육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더욱 많았다. 그러나 인권교육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교사들도 있어 현재 인권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효과적인 인권교육방법은 보수교육(31.1%)과 관할지역별 특강(28.9%)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참여적 활동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형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적합한 교수학습 원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태도 및 심리적 변화(45.5%)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인권교육을 향한 교사의 태도와 프로그램 구성 시 참고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사들은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아동을 존중하는 태도(28%),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27.8%),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22.2%)를 제시하였으며, 아동학대와 방임(34.1%)을 가장 중요한 아동인권관련 문제로 응답하였다. 면접형 욕구조사는 전문가 집단, 원장, 교사, 부모, 일반인을 포함한 6개 집단의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집단을 통해 인권 개념,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목적, 침해사례 및 존중사례, 필수내용, 아동인권 접근 방향 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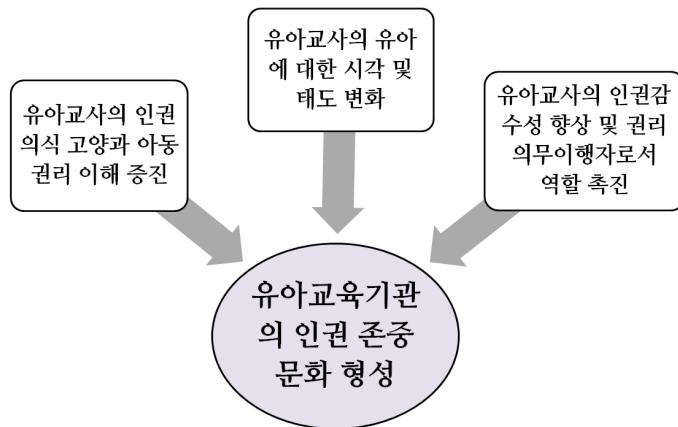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과 욕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할 7가지의 인권요소를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이 지향할 방향과 그 목적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에 활용될 인권요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로그램의 인권요소]



위의 인권요소를 통하여 프로그램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4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의 모듈과 회기별 구성과 주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인권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주제

모듈		회기	주제
1	아동이란?	1.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아동과 교사
		2. 아동기와 아동존중	아동기와 아동존중
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 권리협약	3. 아동인권과 배경	아동인권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3	주제별 아동인권	5. 비차별의 원칙	비차별
		6. 주제별 아동인권	아동 관련 이슈
4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7. 아동인권 모니터링	인권의 현장적용
		8. 콘텐츠 속 인권 상황	
		9.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동	
		10.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권교육은 모든 공동체 사회에서 인권을 현실화시키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N, 2006).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제1기(2005-2009년)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2004/71을 수용하여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의 장기적 예방 및 평등,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간의 참여 향상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994년 12월 23일, 유엔총회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하였다(UN, 1994). 이것은 국제인권법, 즉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엔나 선언, 비엔나행동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제1기(2005-2009년)는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실행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정부의 주요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아동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및 중등학교 제도 내의 인권교육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이 행동강령은 초·중등학교과정 내의 인권교육의 이행을 촉구하고,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교육부, 학교, 시민사회의 주역이 파트너십을 갖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행동강령으로 꼽는다. 제1기의 세계행동계획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사항은 세계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인권교육의 기초를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선택된 지침들의 기본

원칙과 구조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이양희, 2004). 이 후속으로 제 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은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그 영역 속에서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열린 한국 제 3,4차 아동권리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은 아동과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을 위한 아동권리협약의 충분한 교육 실행과 관련 전문가를 위한 정기적 교육훈련의 질을 체계적 정례보고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받은 바 있다(UNCRC,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번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2005)을 통해 영유아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권 친화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중요한 역량을 위해 교실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EDC: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과 인권교육(HRE: Human Rights Education)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전체 학교와 더 넓은 수준의 지역사회에서의 적용을 포함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2009).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목 영역의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집단과 고등교육체계에서 교사를 양성하거나 보수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의 출발을 영유아기로 두고, 이 시기의 아동과 부모, 교사가 인권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영유아기의 1차 환경인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고 아동권리를 실행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광주시가 제정하였고 전남, 전북, 강원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진행 중이고 조례는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아 대상의 교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최근 유아 관련 종사자가 유아 대상의 사회문제나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가 여러 차례 드러나면서 일부 유아교사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인권 인식 수준이 표면화되었고, 인권교육의 필

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으로 아동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아교사는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첫 사회적 관계 대상이며, 교육 및 보호가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는 아동의 교육과 발달전반에 중요한 모델이 되며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목표분야, 중점 교육대상, 주제 영역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권교육 대상을 학교영역, 공직종사자 영역, 시민사회 영역으로 나누고 고등교육체계 내의 인권교육, 교사 및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인권을 중심으로는 교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상담자, 아동 및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시행하는 중에 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는 2008년 유치원장(감) 80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개최한 이래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지속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되어 온 유아교사 및 관련 교원 대상의 인권교육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 내용은 주로 아동안전이나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예방 교육에 국한되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아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전반의 가치를 포함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향상과 아동인권 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 유아교사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인권의 주요원칙과 기본 요소를 다루어 교사의 인권 이해를 촉진하고, 아동에 대한 인식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인권 의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구성하는데 적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아동권리 영역 추출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검토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유엔(UN)의 지침을 반영하여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영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검토한 국제인권조약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 기존 교사 대상의 국내외 인권교육프로그램 특성 검토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의 국내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자 한다. 좋은 실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영역과 내용을 검토하고 교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영역 및 내용, 방법
- 국내 활용되고 있는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주요영역 및 내용, 방법

3) 국내 유아교육현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조사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교사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은 구성원이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유아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있다. 현

재 시급한 유아교육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 관련 신문기사를 통한 유아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이슈 조사
- 유아교사 대상의 욕구조사 결과를 통한 시급한 이슈 조사

4) 인권교육의 목표와 원칙의 토대 마련

본 연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다음의 내용에 기초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 유아 인권의 이해 및 유아를 향한 인권적 태도 형성
-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실현을 교육 전반에 적용
- 인권을 존중하는 유아교육환경 형성

5) 현장적용이 용이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환경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유아교사 대상의 교육훈련체계를 반영하여 교육 실시가 용이하고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 자격종류(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및 구분(유치원 정교사 1·2급, 보육교사 1·2·3급)과 전공이 다양한 유아교사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 유아교사가 융통성 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듈별 프로그램 구성
- 교육환경에 맞추어 조정 가능하도록 각 모듈을 개별적인 차시로 구성
- 참여적 활동을 포함한 워크숍 형태의 교육프로그램과 개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중심의 교재를 함께 구성

2. 연구방법

1) 문헌 고찰

인권영역 선정과 인권교육내용 및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제인권조약, 국내외 인권교육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을 통해 현재 교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관련 문헌을 통한 인권영역 검토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7번
 - 일반논평 7번을 위한 영유아기 지표 :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A Framework of Early Childhood Indicators for GC. 7 :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s)
 - Teaching Human Rights
- (2) 국내외 기존의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 분석
 - 국외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사례
 - 국내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사례(인권단체, 관련기관 등)
- (3)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유아교사 인권교육 관련 연구
 - 유치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연수 내용 분석
 - 유아교사의 인권교육 관련 연구 분석
- (4)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Child Rights based Programming)의 핵심 요소

2) 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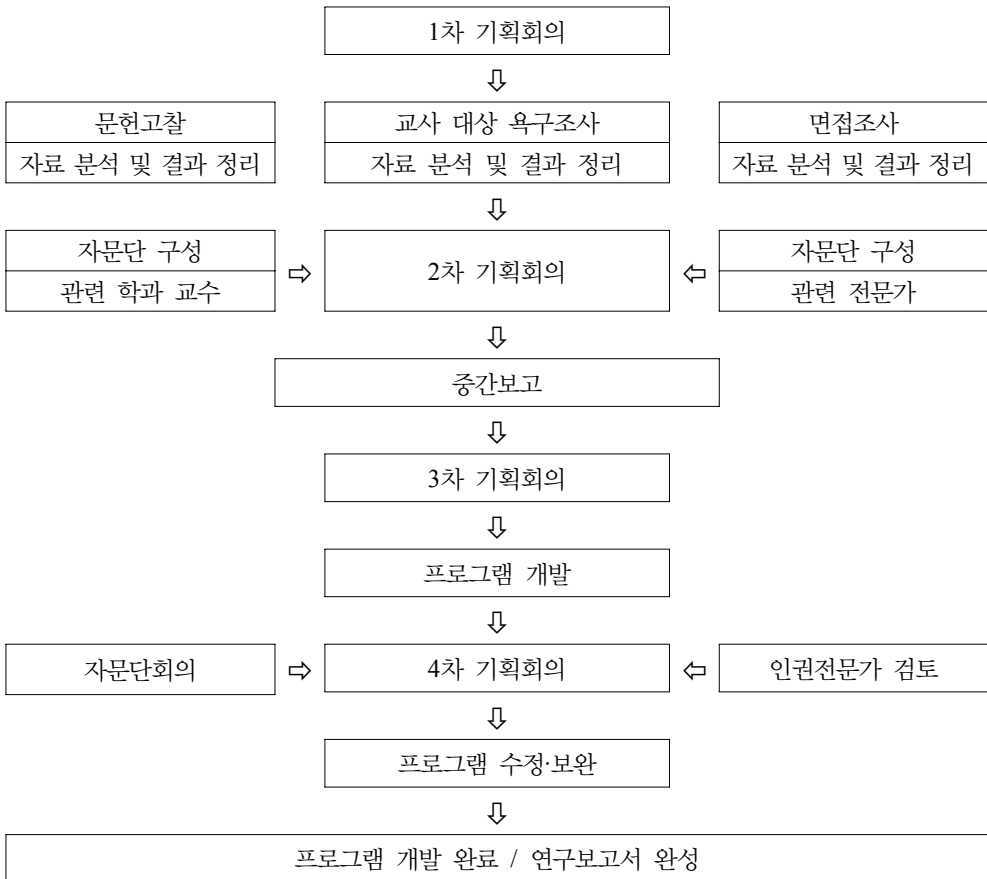
- (1) 유아교사 및 원장 대상의 설문형 욕구조사

- ① 조사대상 :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및 원장 492명
- ② 내용 : 아동인권 사전 경험 여부 및 인권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욕구 파악
- ③ 조사방법 : 우편 설문조사, 전자우편 설문조사, 연합회 온라인 시스템

(2) 면접형 욕구조사

- ① 조사대상 : 6개 집단(인권전문가, 원장, 교사, 부모, 유아, 일반인)의 23명
- ② 내용 : 아동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교육 구성의 세부사항
- ③ 조사방법: 교수 1명, 박사수료 2명에 의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약 1시간 ~ 1시간30분 동안 일대일 면접 진행 후 분석

〈그림 1-1〉 연구 진행 모형



제1절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목표

인권교육은 인권을 보편적인 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에 두고 정보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UNESCO, 2005).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이 인권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 공감하며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증적으로 인권교육의 체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으로써 평등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체계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도모하는 등 그 공헌이 크다(UN, 2010).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 26조(1948), 국제인종차별철폐조약 7조(196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1966), 고문방지협약 10조(1980), 이주노동자권리보호조약 33조(1990), 장애인권리조약 4항 및 8항(2006),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29조(1989) 등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유엔의 인권조약을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촉구되면서 유엔은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으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계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행동계획(2005-2009)은 초·중등학교과정 내의 인권교육 촉구를 목적으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은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및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현재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그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년도 계획수립에 따른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계획은 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독려하였고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기업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1차 계획의 초점이며서 비교적 가장 오래전부터 인권교육을 시도한 것은 학교영역이다. 아동의 삶 대부분이 학교를 비롯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누리는 것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구정화, 2009).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 강조는 아동이 경험하는 다른 생애 시기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생애를 위한 충분한 준비’에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구정화, 2009). 학교인권교육이 시도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의 요구가 서서히 늘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 구체적인 인권을 다루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아기는 인권에 관한 태도를 기르는데 결정적인 시기라는 연구결과(구정화·설규주·송현정, 2004)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 주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에 결정적인 시기이다(김숙자·김현정, 2008). 이는 유아 대상의 효과적인 유아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유아를 교육하는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아동인권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인권과 유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동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 간의 차이에서는 아동, 부모, 교사 전부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 교사들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에 대한 아동과 교사들의 인식 연구에서 아동과 교사 모두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은 미비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용교, 1999). 교사의 인권의식을 조사한 연구(심성보, 2002)에 따르면, 교사들은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체계적이지 못한 동시에 상당히 빈약한 상태라고 했다. 더욱이 인권개념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못한 교사들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권 의식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를 긍정적인 모델로

삼아 교사의 행동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은 관찰과 모방에 의해 행동을 학습하며, 유아기는 모방을 통해 행동을 습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한다(송길연, 2009). 이러한 근거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유아교사는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교사가 유아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교육을 경험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사가 유아에게 인권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자율적인 참여시민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공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실시와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권리주체인 아동 참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양희·구미향·정영선, 2009). 인권교육의 시행은 학교교육, 직업전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교육에서나 시민사회기관, 가족, 매스미디어를 통한 비정규 교육에서나 전 연령 집단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하도록 유념해야 한다(UN, 1994). 인권교육활동은 인권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 평등, 비차별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수반해야 한다. 동시에 활동들은 배우는 사람의 실제 생활 경험과 연관되는 경험적 인권이 되어야 하며 인권의 원칙들을 자신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찾아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Unicef, 2007). 주입과 설명이 아닌 유아가 질서와 규칙을 내면화하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을 조망하고 그 역할을 경험해보고 사고능력을 확장시키는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자인 교사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이해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교사교육에서 훈련과 연습, 모의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영옥, 1990).

한국 정부는 3·4차 통합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25조와 관련한 아동보호시설과 아동상담·치료관련 전문가 대상의 아동권리 정기 교육과 훈련 및 보호의 질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검토를 권고 받은 바 있다(UN, 2011). 유아를 교육·보육하는 유아교사를 위해서도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서 유아교육기관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도와야 하며, 현직교사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기 이전부터 인권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 내에 아동권리의 이해를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문미희, 2005).

제2절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물들은 대체로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인권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아동인권교육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협약이 추구하는 정신은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약속과 규범일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모든 수준의 교사교육 안에서 인권을 소개하는 시간은 교사 자신과 학생들 모두의 인권상황과 기타 학교생활 전반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은 아동과의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UNESCO(2007)에 따르면 교육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존중하는 환경 만들기
- 아동 각각의 다른 요구 수용하기
- 지역사회 참여 촉진
- 파트너로서 아동과의 관계 맺기
- 권리와 책임의 균형 이루기

교육환경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고 교사의 역할을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하기 위하여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은 인권으로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가장 주요하게 따른다.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아동의 필수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교사 대상 교육의 초점을 교사 교육에서 아동인권을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것에 두고 있다(Child Rights Foundation, 2004). 교사가 학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하도록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의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더 효율적으로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사가 되기 이전 공식적인 양성 과정에 아동권리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아동권리, 아동 참여, 통합교육, 긍정적 훈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아동 매매 및 성적 착취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사 교육을 통해 제공한다. 미래의 교사가 될 인재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관련 이슈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친화적인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은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사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하려는 태도와 인권옹호행동 실천력이 향상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USAID(2009)의 교사교육 모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은 아동에 대한 태도 및 시각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교사는 아동에 대한 시각을 성찰하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동의 개념과 행동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개발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개발, 평화, 인권침해의 특정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UNESCO, 1998). 유네스코는 교사들에게 국제 이해, 협력, 평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발과 협력, 평화와 살기 좋은 나라는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교사의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민감함과 지역사회 및 세계 전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교사는 아동이 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다(Council of Europe, 2009).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아동인권의 주류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위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인권이라는 규범이 민주주의의 발달이라는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이미 각종 사회제도 속에 제도화되어 있고, 사회성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면화되어 있다(이용교 외, 1997). 따라서 선진 국가에서의 인권은 어느 정도 생활화되어 있으며, 많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인권에 기반 한 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과 파시즘, 세계화와 이주노동에 따른 인종주의적 편견과 범죄의 증가, 다민족사회에서 발견되는 다른 문화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 등의 근본적인 해답을 인권교육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보편적 가치를 다루면서도 보편적 가치의 구체적 현 상태를 다루어 실천적인 함의를 끌어내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교사의 역량은 교사가 아동기에 경험한 학교 교육뿐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역량 개발을 자연스럽게 돕고 있다.

한편 국내의 교사 대상 인권교육은 국제사회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두 가지 노력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향상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향상과정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과 인권 관련 다양한 이슈, 학교에서의 인권 관련, 인권 친화적 학교 비전 세우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09), 심화과정에서는 인권과 소수자의 인권 침해, 학교와 학급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용 및 복지시설 실무자용 인권교육 교재를 집필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아동과 인권에 대한 소개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루고 인권 친화적 접근과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 훈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 교재들을 통해서 볼 때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그 내용에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장(감) 대상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시도에서는 유치원장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제목으로 인권교육을 개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박경양(2005)은 지역아동센터 교사 교육과정에서 아동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다양한 교육과 복지, 문화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에 기초한 인권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사와 아동의 소통을 위한 참여식 교육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아동의 권리를 중요히 여기고 아동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노력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며 노력이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인권교육단체와 교사들의 모임 등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만큼 그 내용에 대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인권교육의 중심은 아동권리에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을 위한 국가의 움직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절 인권교육의 원리

1. 유아교사와 유아

아동은 서구의 중세까지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다 17세기부터 비로소 근대적 의미로의 아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고, 수동적이고, 미숙하고 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이후 20세기에 비로소 아동은 고유한 인격체를 가진 특별한 존재임과 동시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이강안, 2009).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 연령의 영유아도 협약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반논평 7에서 언급하면서 이 시기 아동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호와 지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주변의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존엄성 이해, 타인 인식, 더 나아가 타인 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인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다(구정화·설규주·송현정, 2004; 이양희, 1999). 이 시기 유아들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성인으로부터 권리를 존중받고 학습하게 되므로 유아 주변의 성인인 부모와 유아교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안에서 유아와 유아교사의 관계는 유아발달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나정, 2001; Whitebook, Howes, & Pemberton, 1989). 따라서 유아교사는 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통해 유아의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어야 하며, 유아의 능력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서영숙·김진숙·서혜정, 2009; 이혜경, 2006). 또한 유아교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존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아들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Agee, 1997; Korthagen, 2001).

유아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배운다면 인간으로서 평생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심성보(2000)는 유아들이 유아기

발달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받게 된다면 유아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유아교사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에게 유아인권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권리 옹호자이자 의무 이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아교사의 특성 및 전문성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지만, 교사의 질 또한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Beeby, 1966).’라는 말이 있다. Spodek(1973)은 유아들의 미분화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 환경이나 내용보다는 유아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연구들(Morrison, 1976; Read & Patterson, 1980; Jensen & Chevalier, 1990)은 유아교육의 특수성으로 유아교사들은 보다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유아교사의 역할 중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보호·양육, 상담 및 안내, 교수, 교육과정의 운영, 의사결정, 중개적 역할 등 폭넓게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이희경·김성수, 2000). 이러한 유아교사의 역할들을 통해 유아들은 그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긍정적인 자아 개념,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친사회적인 행동 발달 및 긍정적 정서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유아교사의 가치관과 태도는 실제 교사의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Enochs & Riggs, 1996), 유아교사의 교수행동은 실제 교수-학습방법(서현아·배지미, 2004)과 유아의 발달(박은혜, 2009)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유아교사의 행동을 모방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 개념을 형성해 나가게 되므로(전영화, 2000) 유아교사가 갖는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유아가 유아교사로부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는 경험을 했다면, 그 유아는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 타인 존중 및 배려의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교수자가 아닌, 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해야하며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해야하며,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열린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Lansdown, 2005).

유아교사가 유아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식하고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며 교육환경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준다면 유아 역시 자연스럽게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본받게 될 것이다. 유아교육 환경에서 유아들의 인권존중 가치관과 태도 형성은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통해 실현가능하다고 국제사회에서도 공감하였다(양심영, 2003). 따라서 유아교사가 유아들의 권리 옹호자이자 의무 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을 유아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유아교사의 아동인권 현장 적용

이용교(2003)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 유아교사들은 대체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그 내용은 기본생활습관에 제한되어 있으므로(김숙자 등, 2003),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옥, 최미숙, 1995). 이것은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권교육의 기본은 교사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준, 2003).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김세진, 2002; 김숙자·김현정·변선주, 2008; 김정래, 1999, 2002; 서영숙·서혜정·김진숙, 2009; 성정숙, 1998; 안동현, 1997; 이배근, 1997; 이소라, 1998; 이재연·강성희, 1997; 이재연·이소라, 1998; 최윤진, 1998, 1999)에서 교사들이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데에는 프로그램의 부족과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서영숙·서혜정·김진숙, 2009)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사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유아 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더불어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유아교사의 인권감수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안경환, 2004). 인권을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찾고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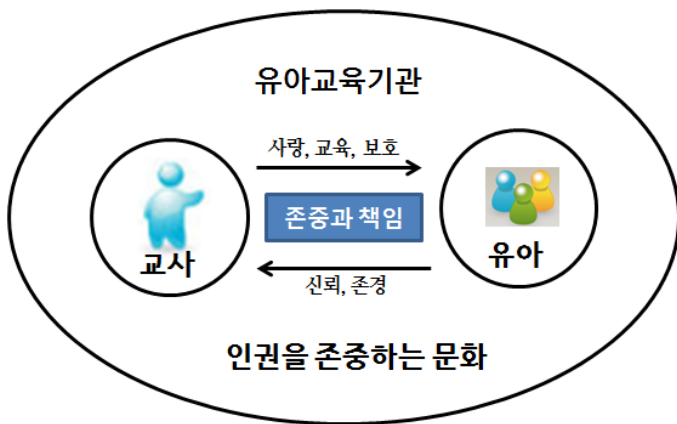
15항에서 말하는 “아동들은 가정, 학교 혹은 사회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인권의 기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인권을 학습해야만 한다. 즉, 인권교육은 종합적인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어야 하며 일상과 아동의 경험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9).”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에게 적용하는 인권교육방법으로는 일회성의 단편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아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 권리의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정선아, 2002). 또한 유아교사는 유아권리존중을 위해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적극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다(서영숙 외, 2010).

따라서 유아교사의 인권교육은 권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사 자신이 인권감수성을 형성하고 유아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적인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적용되어 인권감수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는 유아와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권리에 대해 알고, 높은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적인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인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유아교육기관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교사와 유아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1〉 유아교육기관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구성



제4절 인권교육 교수방법

인권교육은 인권의 영역과 교육의 원리가 잘 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수·학습방법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면, 일종의 지식전달로 그치기 쉽다(이양희, 2005).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한영숙, 2006),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이들이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지고 개인 간의 차이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사전에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미네소타대학 인권자료센터, 2000). 문미희(2005)에 의해 개발된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교수 전략은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에 기초하였다. 딜레마 토론 수업은 딜레마의 확인, 감정적 입장의 진술, 토론(추리)의 전개, 각자 입장의 정립이라는 4단계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 딜레마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전통적 강의식 인권수업보다 인권감수성의 변화가 더 효과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연구결과로 뒷받침하였다(문미희, 2005).

1994년 유엔총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을 선포하면서 인권교육은 정보의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사회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종합적인 평생과정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UN, 2004). UN(2004)은 인권교육의 교수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합한 방법이 적용될 경우 비판적 사고, 인지적·정서적 학습, 경험 및 견해의 차이 존중, 학습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 개입 등이 촉진될 것이라 제시하였다.

〈표 2-1〉 UN이 제안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교수방법	내 용
브레인스토밍	이론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한 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 제시된 문제에 대한 모든 반응을 어떠한 제안도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큰 칠판에 기록한 후 분류·분석하면서 통합·수정·삭제 과정을 거쳐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방법
사례연구	소그룹으로 인권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실제 또는 상상의 사례를 한꺼번에 전체를 제시하거나 전개되는 상황의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이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는 방법. 이때 사례는 두세 개의 주요 이슈에 초점을 둔 신빙성이 있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해야 함.

교수방법	내 용
창의적 표현	이야기·사그래픽·미술 조각·연극·노래·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인권에 대한 지적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는 반응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
토론	토론기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의 주제에 따라 적합한 방법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 공식적 토론, 패널 또는 피시 보울(fish bowl, 어항)의 형태 ▪ 토크 써클(Talking Circle, 말하는 원): 두 개의 겹친 원을 만들고 안쪽 원의 아동들은 원 바깥쪽으로 바깥 원의 아동들은 원 안쪽을 보고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들과 토론을 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사가 안쪽 원의 아동들에게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여 동일한 주제로 새로운 파트너와 토론하는 방법 ▪ Talking Around: 개인적이나 정서적인 주제들은 둘 혹은 소집단 토론이 적합. 하나의 주제로 대집단이 토론할 때는 돌아가며 말하기 방법 ▪ 디스커션 웹(Discussion Web, 토론 거미줄): 원을 만들어 앉은 뒤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털실 뭉치를 계속 이어 전달하며 이야기하는 방법
현장견학/ 지역사회 방문	인권문제가 전개되는 법원, 교도소, 출입국관리소 등이나 권리를 수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식품 및 의류배급소, 무료 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인터뷰	인터뷰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활동가, 지도자 또는 인권관련 사건의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서화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함.
연구 프로젝트	도서관이나 인터넷 시설을 이용하는 공식적인 연구, 인터뷰·여론조사·미디어 관찰·기타 자료 수집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연구가 있음. 개인 프로젝트, 집단 프로젝트 구분 없이 독립적인 사고와 자료 분석 기술을 발달시키며 인권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방법
역할극/ 시물레이션	이야기의 형태와 상황극 형태가 있으며, 짧게 할 때 가장 효과가 크고 대체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짐. 역할극 후에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됨. 역할극을 통한 이점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면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느낌, 두려움 또는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 모의재판, 가상 인터뷰, 시물레이션 게임, 청문회, 심판 등은 역할극의 변형된 형태로 이는 사전 준비할 것이 많음.
시각 자료	철판, OHP, 포스터, 전시물, 플립 차트,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등을 통해 간결하게 요약된 정보나 개요 또는 목록의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 텍스트 양이 많은 경우는 유인물을 활용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에서는 수동적으로 개발된 인권자료 사용에 변화를 꾀하여 비판적인 안목으로 선택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권을 교육하는 진행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인권교육과 자료의 원리를 파악한다면 교육이 보다 쉽고 원활해질 것이며 인권을 실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2〉 교과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원리

교육원리	내용
실천의 원리	이론적 경험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제 행동으로 행하여 습관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원리
경험의 원리	인권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가를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 역할극, 역할놀이, 인권침해 현장의 방문, 인권침해 당사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가능한 인권 상황이나 유사한 인권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학습자의 인지 중심의 원리	인간은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자신이 가진 인지적 틀에 의해 통합적으로 재구성되므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인식의 틀로 인권을 이해하여 어떤 상황에서 인권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돕는 것
참여의 원리	학습자의 참여 속에서 개념 명료화, 주제 분석, 활동 실행이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 촉진되고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것
문제제기의 원리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실천의 부족, 일관성의 부족, 이해의 부족, 비논리적 부분(학습자의 편견, 선입견, 그에 대한 이전의 지식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변증법적 원리	시대적, 공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민적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에 적합한 인권의 의미를 찾고 그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 상황이 바뀌어도 인권을 돌바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석의 원리	인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실천되어야 함으로 올바른 개념과 상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연관된 근본적 원리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
종합의 원리	분석된 각각의 사실은 인권의 전체적 인식의 틀 속에서 제 자리를 찾고 의미 있게 종합하는 것
방법의 원리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실천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의 침해를 범한다면 인권의 보호, 증진, 개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을 실천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위와 같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교육 방법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과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원리를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권교육 방법을 소개하겠다. 미네소타대학의 인권교육자료센터(2000)와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교육의 교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에 나열되어 있는 교수방법은 인권교육 시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다.

〈표 2-3〉 미네소타대학의 인권교육자료센터와 국제사면위원회가 제안한 인권교육 교수방법

인권교육자료	제안한 교수방법	
미네소타대학 인권교육자료센터	브레인스토밍 토론 영화와 비디오 대중매체 활용	현장견학 영상자료해설 연극 사례연구
국제사면위원회	역할놀이 브레인스토밍 프로젝트 수업 만화	소그룹 활동 집단토론 사진 등 자료 활용 날말 연상놀이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참여하며, 학습자와 교사 그리고 학습자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토의와 토론 중심의 민주적 방법의 수업, 학습자의 삶 속에 관련되어 있는 인권 문제 중심의 수업을 통해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에서 어렵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다루는 것은 인권이 반드시 가치관의 갈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바가 있음에 초점 맞추어야 한다(UN, 2004).

제5절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1. 국외 유아교사 인권교육프로그램

유엔 결의안을 따르기 위해 각 당사국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교사의 인권 인식의 증진과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각 국가 마다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실행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1) 미국의 「This is My Home!」

미네소타 대학 인권 자원 센터(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Resource Center)에서는 학생, 교사, 법률가, 지역지도자 및 기타 관련자들이 미국 또는 해외의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훈련 받도록 독려하기 위해 '북부중서부협력프로그램(Upper Midwest Fellowship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다양한 모형을 통해 미네소타의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인권 현안과 인권교육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4년, 미네소타 주 인권위원회(Minnesota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er)에서 인권센터에 미네소타 주 전체 초·중등학교를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요청하면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유래 없는 주정부와 대학 간 제휴 사업이 이뤄졌다. 이 제휴 사업을 통하여 'This is My Home: A Minnesota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가 개발·운용되었으며,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 및 지역사회 훈련이 사업의 주된 초점이다. 'This is My Home'은 교사, 학생, 가정, 인권위원, 기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인권 교육을 교실, 학교, 지역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커리큘럼, 훈련 및 전문적 개발지원을 제공한다. 'This is My Home'이 미네소타 주의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는 했지만,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원 덕분에, 미국 내 다른 지역, 그리고 해외의 교육가들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¹⁾

1)미네소타 대학교 인권센터(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Center)
<http://www.hrcenter.umn.edu>

(2) 미국의 「Human Rights Education: Concepts & Pedagogies」

‘Human Rights Education: Concepts & Pedagogies (인권교육: 개념과 교수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교육 관련 전공자들(만 22세 이상)을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²⁾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사들이 인권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식, 동기, 교수법을 제공하는데 주안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포용을 위해 다양성과 교육을 강조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평등, 정의, 평화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인권선언문, 시민권, 경제권, 사회권을 포함하여 UN에서 제시하는 인권에 대한 필수 개념을 다루며, 국제기구의 강점과 한계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다루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HRW(Human Rights Watch) 같은 NGO들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모든 학생이 개별 모의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평가받음으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실행과 적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는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통한 인권교육교사 양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³⁾

(3) 영국의 「Rights, Respect, Responsibility: A Whole School Approach」

잉글랜드 햄프셔의 한 교육당국은 UNICEF의 '권리존중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학교에서의 권리, 존중 및 책임감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in Schools)'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⁴⁾ 이 프로그램은 만 3~16세 아동과 그들의 교사 및 학교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강조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한 국가의 시민으로 보며, 권리 주체자로서 아동의 정체성과 자존감 증진을 도모, 아동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책임 또한 교육하면서 권리를 교육하고

2)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http://www.soe.usfca.edu/departments/ime/index.html>.

3) 인권 관련 주요 교육계획안은 <http://learning.berkeley.edu/AIUSA-syl/toc.html> 참고

4) <http://www3.hants.gov.uk/education/childrensrights/>

배우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권을 기반으로 한 문학, 수학, 과학, 역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교육에 있어 참여적 환경을 조성·제공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학교 전체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의 교육 조사관들은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3년에 걸친 외부평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아동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교사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들의 수업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4) 노르웨이의 「Human Rights Academy」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인권 아카데미(Human Rights Academy)⁵⁾'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학교(Human Rights School)'를 제공하고, 인권 교육 교재 'Build Bridges, Not Walls'를 발간한 노르웨이의 인권 교육 기관이다. 이들의 프로그램과 교재는 전문가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 바탕과 UN, Amnesty 등 국제기구 및 기타 다른 인권 관련 기구들의 인권교육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동남 유럽 등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권 교육 교재 'Build Bridges, Not Walls'는 교사들과 교사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공교육 환경 밖에서도 인권교육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며, 노르웨이, 소벳, 러시아어, 주제에 따라 영어로도 이용가능하다. 인권 아카데미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모두 인권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기간구분에 따라 5일과 9일 간의 워크샵이 있다.

〈표 2-4〉 「Human Rights Academy」의 주요 교육 내용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인권 교육	- 인권이란 - 인권의 역사와 인권선언문 - 인권의 국제적 시스템 - 여성, 아동, 난민, 그리고 다른 취약 계층과 그들의 인권 - 사회·정치적 권리,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 인권과 나의 관계 - UN과 인권교육

5) <http://www.menneskerettighetsakademiet.no/Eng1.htm>

교육 주제	교육 내용
	- 시민사회 - 인권과 딜레마 - 인권과 관련된 상황들 분석하기
다문화 이해	- 노르웨이 시민(Norwegian)의 사회: 다문화 사회 - 정체성과 문화 -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소 - 고정관념과 편견 -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 - 다름에 대한 역량
평화로운 갈등 해결방안	-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서의 갈등 - 갈등이란 오로지 나쁘기만 한 것일까? - 갈등과 감정 - 평화로운 갈등 해결방안

출처 : 본 연구를 위하여 분석한 결과임.

(5) 호주의 「Understanding and Teaching Human Rights: Teachers' In-Service Training」

호주의 인권 관련 기구 ETC(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⁶⁾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과 자세, 인권 실천 등의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인권 이해와 교육(Understanding and Teaching Human Rights: Teachers' In-Service Training)’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교사와 학생, 학교 관련 종사자, 학부모, 교실과 학교, 지역 사회 모두를 포함하여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각 지역별 교사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인권 교육 지침서와 인터넷 상으로 이용 가능한 PPT 및 활동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 교사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서비스 또한 지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실행되도록 도모한다. 제공되는 매뉴얼과 이용 가능한 활동자료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Need to Know), 알아두면 좋은 것(Good to Know), 선택 활동(Selected Activities), 인권과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건들

6) <http://www.etc-graz.at>

을 다루는 연대표의 주요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주요 범주 안에는 차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건강할 권리 등을 포함 한 총 14개의 주제가 있으며, 이는 인권에 대한 문화 간 관점 및 인식을 제공하고 영어, 불어, 러시아어 등을 포함한 총 1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 여러 지역 및 국가에서 이용가능하다.

(6) 아일랜드의 「Lift Off」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는 유엔국제아동권리 협약에 비준에 따른 아동권리 이행을 위하여 1998년 인권향상을 최우선 사항으로 여기겠다는 의미의 ‘벨파스트 평화협정(Belfast/Good Friday Agreement)’을 기점으로 국경을 초월 한 협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Lift Off'는 이러한 국가 간 협력의 일환으로 아일랜드와 영국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아일랜드 교사 단체, 얼스터(the Ulster)의 교사들, 그리고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Lift off는 만 4~12세 아동들과 그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와 권리 책임 의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정체성과 언어, 각기 다른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발달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들이 점차적으로 학습의 주체로 발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교 구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도모한다. 교육 내용은 3가지 교육 자료⁷⁾로 구성되어 인권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교사들의 경우, 각각의 짜여진 단계별 구성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전문성이 강조된다. 또한 아동과 교사, 그 외 의무이행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모두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기 위해 교육 인사과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교육 관련 자료들과 인권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교사용/아동용 평가도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상의 모든 자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⁸⁾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에 있는 5,00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을 받은 많은 학교에서 학교 전체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덴마크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다.

7) 4-8세; Right Start(2007), 8-10세; Lift Off(2004), 10-12세; Me, You, Everyone(2006)

8) <http://www.liftoffschools.com>

2. 국내 유아교사 인권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아동권리교육은 교재개발, 아동과 교사를 포함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황옥경, 2010). 하지만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비하여 적절한 인권교육 연수가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서정은, 2001). 또한 보육 및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에 있어서 유아인권에 대한 교육이 하나의 필수적인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국내 아동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보육 교사 및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행해 온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대중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간헐적인 캠페인 활동을 시행해 왔다. 2008년에 들어서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민간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교재를 개발, 배포하였다. 이 교재는 교육 대상에 따라 아동용,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실무자용, 보육 교사용으로 개발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시행 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과정'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 보육교사용⁹⁾’은 유아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표준보육과정 속의 유아권리 주제 활용, 아동권리협약 주제 관련 동화와 교구 활용, 일상생활의 문제 사례 활용, 프로젝트 접근법 등을 제공하여 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더불어 교실 내에서의 실제적인 활용을 지원한다.

(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아동관련 전문종사자의 아동권리 인식의 확대를 위한

9)보건복지부 자료실에서 열람 및 저장 가능 함
<http://library.mw.go.kr/>

교육을 계획, 실행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의 교육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과정1’과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과정2’를 개설하여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아동권리인식과 감수성을 향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발달을 제고하고 아동·청소년의 각 분야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중심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on-off line의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9).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공무원, 복지종사자, 보육교사, 초등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각 영역의 실무자 교육을 공통 인권교육 및 영역별 인권교육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무자 대상의 교육과 같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서도 아동권리 교육을 포함하여 함께 진행하고 있다.

〈표 2-5〉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내용

교육내용	시간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법	활용자료
유아교사	2시간 혹은 3시간	유아권리에 대한 기초/유아권리 존중 보육 이해하기		강의	강의PPT 체크리스트
		유아권리 존중 환경 만들기			
		유아권리 주제교육의 이해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	4.5 시간	아동권리협약 이해하기		강의 · 토론	강의PPT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권리접근			
		아동청소년 권리실천			
초등교사	4.5 시간	아동인권감수성향상	아동청소년 복지법과 인권	사례연 구	강의PPT
			아동권리협약 이해하기		
		학교중심의 아동인권친화적 환경조성	초등학교 아동 권리교육 프로그램 이해하기		
			초등학교 아동 권리교육 프로그램 적용하기		

출처: 황옥경 (2010). 아동권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아동참여권 증진을 위한 권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한국어린이재단, 27-56.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권고와 함께 아동권리 교육의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재개발 및 교수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아동권리교육을 직접적으로 실행해 왔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인권교육과 정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이버 인권교육배움터를 통해 편리하게 인권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인권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나, 점차적으로 인권교육 대상자들을 확대하여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표 2-6 참조). 2010년도에 들어서는 급증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인권 교육 강사양성 과정(표 2-7 참조)을 개설하였으며, 공무원·지방의원 등의 정책리더, Wee Project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개발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on-off line 형태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양적인 면에서 인권교육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¹⁰⁾.

〈표 2-6〉 교사대상 인권교육 과정 운영

교육 과정명	인원	주요프로그램
교원 인권감수성 직무연수교육 (초등교사반/ 중고등교사반) -2009년도 실시	3박4일	1일차 - 몸풀기/마음열기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론과 인권적 교육방법 영화로 만나는 인권
	초등교사 31명	2일차 -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다문화자녀의 인권과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장애인과 장애학생 그리고 통합교육 인권연극 워크숍
	중고등교 사 39명	3일차 - 자유, 참여, 그리고 책임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 서로를 살리는 대화 학생인권 체크리스트 만들기
		4일차 - 인권친화적 학교 비전세우기

10) <http://m.edu.nhrc.go.kr/>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인권감수성 향상과정(교육행정공무원·유치원관리자·인권교육연구학교·사회적약자활동가·평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전문 인력 과정(학교 인권강사·초중등 교사·인권연수 운영자·교정 경찰 출입국 분야 인권강사), 사이버인권 교육과정(성차별 예방과정·장애차별 예방과정·행정과 인권)을 개설 실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명	인원	주요프로그램
2010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심화과정	2회 38명	- 인권적 학급운영의 난제들 - 인권교육 연구학교 및 우수 실천사례 발표 - 교과서에서의 인권교육 모니터링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비전 세우기
2010 Wee Project 상담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기본과정	3회 104명	-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권 - 상담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처벌 -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학생인권 해법 찾기 - 몸과 마음을 돌보는 비폭력 대화 - 인권친화적인 선도 프로그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9~2010).

〈표 2-7〉 2010년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

교육과정절차	인원	주요프로그램
제 1차 워크숍 (이론)	36명 수료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나누기 -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차별 사례 나누기 - 쟁점별 인권 토론
제 2차 워크숍 (실기)	31명 수료	- 인권교육의 체험 -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교안 해석과 사연 - 인권교안 만들기 및 발표
소모임별 시연 및 평가	29명 수료	- 소모임별 초등저학년반, 초등고학년반, 청소년반으로 나누어 소모임별 시연 및 평가대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0).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권리교육 교재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인권영화 제작, 인권사진집 제작 등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인권교육 교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중 2004년도에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2006년도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재로 개발되었다. 2005년도에 개발된 ‘초·중·고등학교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교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사의 인권 이해를 돕고 교실 내에서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교육 관련 교재개발 현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2-8〉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교육 관련 교재개발 현황(2012년 현재)

대상	교재명	연령	특징	개발 년도
교사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교사	학교교육에 인권교육을 통합하기 위하여 학 습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계열성 및 다른 교 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인권교육 과정을 교사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 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한 것	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교사 및 아동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	교사 및 아동	유엔에서 발간한 교육자용 인권교육 입문서 <유엔 인권교육ABC>를 번역한 것으로 인권 교육의 기본 내용과 함께 인권교육을 실시하 면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구체적 사 례 및 조언을 포함	200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3~2010).

인권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아와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은 아직 전무하다. 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교사 및 유아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은 유아에게 인권을 기반으로 한 환경을 제공하여 궁극적인 아동권리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나. 아동권리 관련 민간기관

(1)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은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INGO-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27개 회원국이 120여 개 사업장에서 아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교육할 수 있는 훈련자를 위한 훈련(TOT-Training of Trainer)과정을 수료한 교육전문가에 의해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전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는 법무부 소년보호공무원 및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훈육(Positive Discipline)¹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권리교육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다른 기구들과는 다르게 유엔의 아동폭력 보고서¹²⁾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자료들을 번역,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권리 옹호 활동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다음 표로 제시하겠다.

〈표 2-9〉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현황

대상	교육명	교육 횟수 (참가자 수)	특징	개발년 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장학사, 학부모	아동권리 교육	60(1,203)		2005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장학사, 학부모, 원어민교사, 교정공무원	아동권리 교육	32(1,901)	직원을 위한 아동권리역량강화 - 신규직원교육매뉴얼 제작 보급 - 아동보호정책, 포스터 제작 보급 - 아동보호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 - 아동권리교육 2단계 3개 영역	2006
시설장/종사자/아동, 대학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정공무원	아동권리 교육	-(4,443)	- 아동양육시설 시설장/종사자/아동을 위한 전국순회, 아동은 캠프형태로 진행	2007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업파트너, 공무원, 초등학교교사, 장학사, 아동(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고/대학생, 대학원생	아동권리 교육	68(2,365)	- 긍정적인 훈육 교육 적용 - 법무부 소년보호공무원 및 교정 공무원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8

11) 긍정적인 훈육이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이 성공하도록 도와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한 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sc.or.kr/sc/bbs/edu_tab1.php 참조

12) 2003년 2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전문가인 파울로 세르지오(Paulo Sérgio)와 핀헤이로(Pinheiro)가 연구한 내용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아동폭력 에 대한 국제적 양상을 보여주 고, 이런 이슈에 대처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시사해 준다.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는 주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violencestudy.org/> 참조

대상	교육명	교육 횟수 (참가자 수)	특징	개발년 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업파트너, 공무원, 초등학교교사, 장학사, 아동(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고/대학생, 대학원생, 공무원	아동권리 교육	-(2,837)	- 법무부인권감수성향상 프로그램개발 - Peter Newell방안 국제사회의 아동폭력/체벌에 대한 국제워크 샵, Joan Durrant 방한 저자직강 긍정적인 훈육교육	2009

*출처: 황옥경 (2010).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2) 어린이 재단

어린이 재단은 1948년부터 60여 년 간 국내외 아동의 생존지원·보호지원·발달지원·권리옹호 사업을 펼쳐 온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교육 활동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유아, 초·중등, 부모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교재 발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권의 권리교육교재를 발간하였다. 그 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우리 아이 지키는 미아 예방 지침서: 미아예방교육 교사 안내서(2004)와 '초등학생 교육용 유괴예방워크북 「소중한 우리아이 안전하게 지키기」'(2008)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교재 모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인권교육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적인 권리교육을 목표로 한 교사 대상의 권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볼 수 있다.

아동권리교육의 실행에 있어서는 활동중심, 문제해결중심의 권리교육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CAP(Child Assault Prevention) 프로그램 과정이 있다. CAP 프로그램은 1978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30년 캐나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아동폭력예방을 위하여 2009년 2월 미국 ICAP을 통해 CAP프로그램을 도입, 재단 차원의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CAP의 권리개념과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실제의 이해를 도와 아동들이 CAP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에 앞서 교사와 부모 순으로 먼저 CAP교육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며, 교사에 대한 CAP

교육의 목적 또한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 크기 때문에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권리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AP의 구성과 세부내용을 아래 표로 제시하였다.

〈표 2-10〉 CAP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대상	구성	내용
교사	1회, 60분	- CAP프로그램 소개 - 아동폭력 예방전략 소개 - 아동폭력의 이해 - 교실에서 CAP활용하기 - 지역사회 자원 소개
부모	1회, 60분	- CAP프로그램 소개 - 아동폭력 예방전략 소개 - 아동폭력의 이해 - 가정에서 CAP활용하기 - 지역사회 자원 소개

출처: 본 연구를 위하여 분석한 결과임.

(3)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참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형극을 통한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교육 교재개발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주안을 두고 있다. 1999년 6~7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 힘 키우기(CES), 2007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한 놀면서 배우는 권리(CRA)가 개발된 대표적인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기는 하였으나 아동 및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가하여 권리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한 실정이며, 보육 교사 및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학대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유니세프(UNICEF)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된 어린이의 권리를 홍보하고,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 지지, 아동권리 관련 행사 지원,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권리 캠페인, 홍보자료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는 국내 아동관련 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함께 결성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의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옹호,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니세프의 기본사명은 어린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인권교육은 태도, 가치관, 기본개념 및 인권에 관한 법, 제도·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인권시장에 현실참여의 5가지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는 유니세프 뉴욕 세계 교육부가 엮고 유니세프 코리아가 펴낸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 (아동 권리협약 교사용 지침서)'라는 교재가 있다. 이 교재는 아동권리협약을 배우는 내용과 행동계획(NPA)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도록 이끄는 시도를 담고 있으며,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원하는 것(Wants) 그리고 필요한 것(Needs)을 생각하는 카드놀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별 카드 만들어 무리 짓기'와 같은 활동들을 들 수 있다.

(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의 내용,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교육방법 등 인권이해와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기적인 모임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익히고, 아동·청소년, 대학생 및 아동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또한 실시하는 단체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 목표는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의 가치를 행동에 옮기는데 있으며, 현장학습, 역할극, 이미지 학습, 단어 연상과 낱말 맞추기 등의 게임, 토론학습, 모둠활동, 만화나 그림을 이용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상시 진행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 기간의 인권

교육 워크숍 또한 진행 하고 있다.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은 개설되지 않았으나 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들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역량에 따른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간인권신문 「인권 오름」과 운영 중인 홈페이지¹³⁾를 통하여 인권활동가들의 인권교육활동과 인권교육관련 자료들이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권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인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표 2-11〉 인권교육 워크숍 일정 및 내용

대상	일정	주요 내용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교사	첫째 날	- 인권이란 - 인권의 역사 - 인권교육이란	
	둘째 날	인권교육 방법론	강의, 브레인스토밍, 역할극, 사례연구, 종결, 글/그림 등을 이용한 창조적 표현, 논쟁, 토론, 이야기하기, 극화, 활성화, 견학과 탐방, 게임, 모의 재판, 이미지 해석, 인터뷰, 조각 맞추기 활동, 대중매체 분석, 연구프로젝트, 등급 매기기, 모의 실험, 설문 조사와 관찰
		- 커리큘럼 설계	
	셋째 날	- 교과목과 인권교육 - 인권교육 평가론	

출처: 본 연구를 위하여 분석한 결과임.

(6)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의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교재인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1997)를 소개한다. 이 교재는 특정한 대상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 권리 인식의 증진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총 3장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내용은 유엔아동권

13) <http://sarangbang.or.kr/>

리협약(UN CRC-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설명하는 ‘제 1장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다양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들을 토론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제 2장 아동의 권리는 보장하는 평화가족’, 그리고 ‘제 3장. 게임으로 배우는 어린이 권리 교실’이다. ‘제 3장 게임으로 배우는 어린이 권리 교실’에서는 팔호 속에 말 넣기, O/X 치기 등 한국 아동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아동의 권리’ 및 ‘평화가족 만들기’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연령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 수집 및 프로그램 대상자의 욕구와 현 실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육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육구조사는 전국의 모든 유아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와 소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두 형태로 진행하였다. 먼저 제1절과 2절에서 설문 형태로 이루어진 육구조사의 대상 및 실시방법, 조사의 분석결과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 제3절을 통해 심층면접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육구조사의 실시

1. 육구조사 대상 선정 및 실시방법

설문 형태의 육구조사 대상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및 교사 492명이었으며, 인권교육의 대상이 될 유아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므로 육구조사 역시 두 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한 육구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집 하였다. 그 목적은 전국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적용과 다양한 집단과 지역적 차이를 수렴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전국의 고른 분포로 표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활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발주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보육시설연합회, 유치원지역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고 교육청 유아교육 장학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을 포함한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92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

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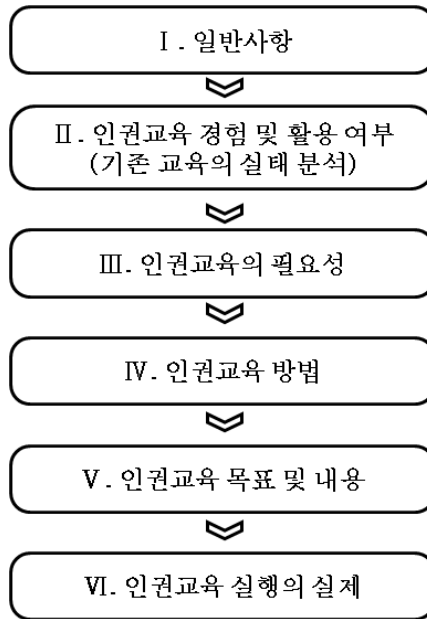
본 욕구조사는 첫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조사에 참여한 교사와 원장이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기존의 인권교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진행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욕구를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전국 유치원정교사·보육교사와 원장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전, 한국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교육청 장학사의 협조를 구함.
- 한국유치원교원연합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욕구조사 요청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의 연합회장에 요청
- 유아관련 학회, 학과 교수를 통한 요청
-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도·대전, 경상도·대구·부산, 전라도·광주, 강원도, 제주도로 구분
-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국공립(시립, 구립 포함), 법인, 사립(민간), 직장보육, 가정보육으로 구분
- 각 지역의 조사 대상을 균형적으로 표집 할 것을 고려함

2. 욕구조사 문항 구성

욕구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과적인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과 관련하여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전문가에 의해 기존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와 국내·외 인권교육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조사에 사용된 자격 종류 및 구분의 용어는 유아교육법(개정 2011년 7월 25일)과 영유아보육법(개정 2011년 8월 4일)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유아교사 2인의 검토를 진행한 후 최종 조사지는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연구원 간의 cross-checking을 거쳐 완성된 조사지는 크게 18문항, 세부 15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욕구조사의 문항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3-1〉 욕구조사 문항도



제2절 욕구조사 분석결과

본 연구의 욕구조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유아교사의 견해를 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연합회의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 및 원장 대상의 욕구조사 진행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유아교육현장의 업무가 과다한 시기로 조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원화되어 있는 관할부처의 상이한 업무체계 및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비협조적인 분위기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등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욕구조사는 교사들이 응답한 본인의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길 원하는 내용과 형태 등에 대한 문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 활용되었다.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욕구조사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앞서 현장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선 경험, 인권교육에 대한 견해 등을 알아보고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교사들로 원장 118명,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사 345명, 무응답 29명, 총 492명이 최종 자료 분석에 참여하였다. 근무 기관별로 유치원은 151명, 어린이집은 333명, 무기명으로 응답한 교사 8명이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조사 목적에 따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및 유아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욕구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조사방법은 우편과 전자우편, 연합회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에서 2012년 1월 17일까지였으며, 조사기관은 전국 16개 시·도의 유아교육기관을 임의추출로 선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이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린이집(67.7%)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유치원(30.7%)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조사 대상의 기관 유형은 국공립(39.2%), 민간(29.5%), 법인(21.1%)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지역별로 서울(23.8%), 경기/인천(21.7%), 전라도/광주(15.0%), 강원도(12.6%), 충청도/대전(12.6%), 경상도/대구/부산(9.1%), 제주도(3.7%) 순이었다.

〈표 3-1〉 인구사회학적 배경 (기관별)

		단위 : 명 (%)
유아교육기관 구분	어린이집	333 (67.7)
	유치원	151 (30.7)
	무응답	8 (1.6)
	계	492 (100.0)
기관종류 구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193 (39.2)
	사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	145 (29.5)
	법인 어린이집	104 (21.1)
	직장어린이집	13 (2.6)
	가정어린이집	14 (2.8)
	무응답	23 (4.7)
	계	492 (100.0)

지역별 구분	서울	117 (23.8)
	경기 / 인천	107 (21.7)
	충청도 / 대전	62 (12.6)
	경상도 / 대구 / 부산	45 (9.1)
	전라도 / 광주	74 (15.0)
	강원도	62 (12.6)
	제주도	18 (3.7)
	무응답	7 (1.4)
	계	492 (100.0)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여자(96.5%)가 대부분이었으며 남자는 2.2%로 포함되었다. 연령대는 20~29세 사이의 교사가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었고(42.9%), 다음으로 30~39세(25%), 40~49세(17.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학/아동복지(11.2%), 보육관련학과(8.1%), 특수교육 관련 학과(2.6%), 그리고 사회복지(2.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욕구조사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우리나라 관련 전공의 교사자격 과정과 제도에 따라 여러 개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높은 급수와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을 중심으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1급(24.2%), 보육시설장(17.9%), 보육교사 2급(17.3%), 유치원 정교사 2급(14.0%), 유치원 정교사 1급(12.2%), 유치원 원장/원감(6.1%) 순으로 자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가 교사(78.7%)였으며 원장 및 원감은 19.5% 정도가 참여하였다. 교사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3~5년(18.3%), 1~3년(18.1%), 10~20년(16.1%), 20년 이상(10.6%), 1년 미만(2.6%)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한해서 담당 유아연령 분포는 5세가 18.1%로 가장 높았으며, 4세(13.4%), 3세(13.2%), 2세(12.8%), 1세(10.2%), 1세 미만(4.9%) 순이었다(표 3-2 참조).

〈표 3-2〉 인구사회학적 배경 (대상자)

단위: 명 (%)

성별	여자	475 (96.5)
	남자	11 (2.2)
	무응답	6 (1.2)
	계	492 (100.0)
연령	20대	211 (42.9)
	30대	123 (25.0)
	40대	86 (17.5)
	50대	47 (9.6)
	60대 이상	2 (0.4)
	무응답	23 (4.7)
	계	492 (100.0)
전공학과	유아교육	291 (59.1)
	아동학/아동복지	55 (11.2)
	보육관련	40 (8.1)
	특수교육 관련	13 (2.6)
	사회복지	12 (2.4)
	교육학	3 (0.6)
	가정관리 관련	3 (0.6)
	기타	11 (2.2)
	무응답	64 (13.0)
	계	492 (100.0)
자격사항	유치원 원장·원감	30 (6.1)
	유치원 정교사 1급	60 (12.2)
	유치원 정교사 2급	69 (14.0)
	보육시설장	88 (17.9)
	보육교사 1급	119 (24.2)
	보육교사 2급	85 (17.3)
	보육교사 3급	1 (0.2)
	유아특수교사 1급	1 (0.2)
	유아특수교사 2급	10 (2.0)
	무응답	29 (5.9)
	계	492 (100.0)

직위	원장·원감	96 (19.5)
	교사	387 (78.7)
	무응답	9 (1.8)
	계	492 (100.0)
경력	1년 미만	13 (2.6)
	1년 ~ 3년	89 (18.1)
	3년 ~ 5년	90 (18.3)
	5년 ~ 10년	105 (21.3)
	10년 ~ 20년	79 (16.1)
	20년 이상	52 (10.6)
	계	492 (100.0)
담당연령	만 1세 미만	24 (4.9)
	만 1세	50 (10.2)
	만 2세	63 (12.8)
	만 3세	65 (13.2)
	만 4세	66 (13.4)
	만 5세	89 (18.1)
	무응답	135 (27.4)
	계	492 (100.0)

2. 인권교육에 대한 일반사항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우선 인권교육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대다수는 아동권리교육이나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 보았다고 하였다(81.7%) (표 3-3 참조).

〈표 3-3〉 교사의 인권교육 선 경험 유무

단위: 명 (%)		
아동권리교육이나 인권교육의 선 경험	있다	402 (81.7)
	없다	90 (18.3)
	계	492 (100.0)

아동권리교육이나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들이 아동권리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처음 접한 시기는 교사가 된 후(54.7%)가 교사가 되기 전(45.3%)보다 조금 많았다. 교사들이 처음 인권교육을 접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대학 교육과정’이라고 응답한 비율 32.1%로 가장 높았으며, ‘책이나 TV 등 매체’라고 답한 비율이 31.1%, ‘자격 및 보수교육’이 14.9%, ‘외부특강’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의 65%가 ‘충분히 동의하며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19%가 동의하지만 인권교육실시는 현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여 교사들이 유아교사를 대체로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4 참조).

〈표 3-4〉 교사의 인권교육 선행 경험 시기와 동의여부

단위: 명 (%) N=402		
처음 접한 시기	교사가 되기 전	182 (45.3)
	교사가 된 후	220 (54.7)
	계	402 (100.0)
접하게 된 경로	책이나 TV 등 매체	125 (31.1)
	대학 교육과정	129 (32.1)
	자격 및 보수교육	60 (14.9)
	외부특강	46 (11.4)
	기 타	28 (7.0)
	무응답	20 (5.0)
	계	402 (100.0)
인권교육에 대한 동의 여부	충분히 동의하며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61 (64.9)
	동의하지만 인권교육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39 (9.7)
	동의하지만 인권교육 실시는 현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79 (19.7)
	동의하지 않는다.	0 (0.0)
	잘 모르겠다.	19 (4.7)
	무응답	4 (1.0)
	계	402 (100.0)

3. 인권교육 경험 및 활용여부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62%의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인권교육 유무	있음	187 (38.0)
	없음	305 (62.0)
	계	492 (100.0)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은 아동관련단체(23.5%), 대학교육과정 내(23%), 정부기관(1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을 받아본 교사 중 교사 임용 이후 인권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교사가 80%를 넘었다(표 3-6 참조). 반면 인권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교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 ‘교육이 마련되지 않다’(67.2%)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특별연수로 이루어져 자신에게 기회가 없었음(10.7%)’과 ‘과중한 업무(6.6%)’가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표 3-7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보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공급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함을 알 수 있다.

〈표 3-6〉 인권교육 경험 기관과 교육연수 횟수

단위: 명 (%)		
인권교육 받은 기관	정부기관 (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36 (19.3)
	시민단체나 인권관련 단체	12 (6.4)
	아동관련 단체	44 (23.5)
	교원단체(전교조, 한국교총 등)	3 (1.6)
	대학 교육과정 내	43 (23.0)
	대학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9 (4.8)
	기 타	18 (9.6)
	무응답	22 (11.8)
	계	187 (100.0)

교사 임용 이후, 인권교육이나 연수 유무	없음	30 (16.0)
	1~2회	118 (63.1)
	3~4회	26 (13.9)
	5회 이상	7 (3.7)
	무응답	6 (3.2)
	계	187 (100.0)

〈표 3-7〉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교육이 마련되지 않음	225 (67.2)
	특별연수로 이루어져 자신에게 기회가 없었음	36 (10.7)
	기회는 있었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9 (2.7)
	과중한 업무	22 (6.6)
	기 타	18 (5.4)
	무응답	25 (7.5)
	계	335 (100.0)

교사들이 최근 받은 인권 교육 형태를 물어본 결과, 보수교육(32.5%), 특강(31.2%)이 가장 높았으며, 법인이나 재단 내 교육(12.7%), 자격/승급 교육(8.9%) 순이었다. 이들이 받은 인권 교육의 내용은 아동관련 이슈(장애아교육, 아동학대, 안전 등)가 7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15.3%)으로 나타났다. 이때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자신이 받은 인권교육에 대해 효과적이었다고 답하였고, 보통은 38.9%, 3.2%정도의 교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표 3-8 참조).

〈표 3-8〉 인권교육 내용 및 효과성

단위: 명 (%)		
최근 받은 인권교육 형태	특강	49 (31.2)
	보수교육	51 (32.5)
	자격·승급 교육	14 (8.9)
	법인이나 재단 내 교육	20 (12.7)
	대학수업	4 (2.5)
	기 타	15 (9.6)
	무응답	4 (2.5)
	계	157 (100.0)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의 역사	0 (0.0)
	인권과 법	6 (3.8)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24 (15.3)
	아동관련 이슈 (장애아교육, 아동학대, 안전 등)	112 (71.3)
	기 타	5 (3.2)
	무응답	10 (6.4)
	계	157 (100.0)
인권교육의 효과성	매우 효과적	34 (21.7)
	비교적 효과적	56 (35.7)
	보통	61 (38.9)
	효과적이지 않음	5 (3.2)
	전혀 효과 없음	0 (0.0)
	무응답	1 (0.6)
	계	157 (100.0)

인권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를 ‘유아교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 콘텐츠’(4.4%)이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콘텐츠’(24%), ‘실제 적용의 용이’(12%)과 ‘교육방법의 적합성’(10%) 순으로 응답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한

교사들은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에 그친 교육내용(80%)’과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한 콘텐츠(20%)’를 그 이유로 답하였다(표 3-9 참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적합한 콘텐츠와 교육 방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9〉 인권교육 효과성 유무의 이유

단위: 명 (%)

도움이 된 이유	유아교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 콘텐츠(내용)	67 (44.4)
	인권감수성 향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콘텐츠(내용)	37 (24.5)
	교육방법의 적합성	15 (9.9)
	실제 적용의 용이	18 (11.9)
	기 타	10 (6.6)
	무응답	4 (2.6)
	계	151 (100.0)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한 교육 콘텐츠(내용)	1 (20.0)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에 그친 교육 내용	4 (80.0)
	계	5 (100.0)

교사 임용 이후 인권교육을 받은 교사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인권교육을 교실에서 활용해 보았는지 물어본 문항에 대하여, 교사들은 ‘직접 교실에서 활용해보았다(56.3%)’, ‘활용해 보지 않았다(17.1%)’ 정도였고, ‘직접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활용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6.6% 정도였다(표 3-10 참조). 직접 활용해 보았다는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 전반에 걸쳐 활용(38.6%)‘ 하였고 답하였으며,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한 경우가 각각 23.9%, 20.5%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고나서 직접 교실에서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약 62%가 활용 시 효과적이었다고 답하였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교사는 없었다(표 3-11 참조).

〈표 3-10〉 인권교육 경험의 활용 여부(기존 교육의 실태 분석)

단위: 명 (%)

인권교육 후, 교실 활용 여부	예	88 (56.7)
	아니오	27 (17.2)
	직접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활용을 해볼 의향이 있음	42 (26.8)
	계	157 (100.0)

〈표 3-11〉 인권교육 경험 활용 형태 및 효과성

단위: 명 (%)

인권교육의 활용 형태	유아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 전반	34 (38.6)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18 (20.5)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	21 (23.9)
	기 타	13 (14.8)
	무응답	2 (2.3)
	계	88 (100.0)
활용 시 효과성	매우 효과적	10 (11.4)
	비교적 효과적	45 (51.1)
	보통	33 (37.5)
	효과적이지 않음	0 (0.0)
	전혀 효과 없음	0 (0.0)
	계	88 (100.0)

4. 인권교육의 필요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4.1%가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21.5%, ‘대체로 필요 없음’이 4.1%를 보였다. 이러한 인권교육 연수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교사는 68.9%, 28%가 보통, 2.6%가 거의 참여할 생각 없음을 응답하

였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의 결과를 통하여 교사들이 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체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3-12 참조).

〈표 3-12〉 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음	0 (0.0)
	대체로 필요 없음	20 (4.1)
	보통	106 (21.5)
	대체로 필요함	229 (46.5)
	매우 필요함	136 (27.6)
	무응답	1 (0.2)
	계	492 (100.0)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연수 참여 의사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2 (0.4)
	거의 참여할 생각 없음	13 (2.6)
	보통	138 (28.0)
	대체로 참여할 생각 있음	233 (47.4)
	적극 참여할 생각 있음	106 (21.5)
	무응답	0 (0.0)
	계	492 (100.0)

5. 인권교육 방법

교사들은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수교육(31.1%)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은 관할지역별특강(28.9%), 자격/승급교육(14.6%)과 대학 교육과정 내 제공(12.2%) 순으로 원하는 교육방법을 응답하였다. 인권교육의 진행방법은 시청각 자료 활용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8%의 강의식 진행으로 나타난 반면 게임/놀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 학습(7.9%), 프로젝트 탐구 학습(6.1%), 역할극(5.9%), 모둠활동(5.7%), 현장체험/캠프(5.3%)은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또한 인권교육에서 사용될 적합한 교수 학습 원리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태도 및 심리적 변화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배운 내용의 현실 연계 및 적용(16.7%), 사례분석을 통한 인지적 갈등 유발을 통한 사고력 함양(14.8%), 문제해결중심접근(11.6%), 모방을 이용한 모범사례의 학습(7.1%) 순의 결과를 보였다(표 3-13 참조).

〈표 3-13〉 인권교육 방법

		단위: 명 (%)
효과적인 연수 방법	보수교육	153 (31.1)
	자격·승급교육	72 (14.6)
	관할지역별 특강	142 (28.9)
	원 자체 특강	41 (8.3)
	대학 교육과정 내	60 (12.2)
	기 타	7 (1.4)
	무응답	17 (3.5)
계		492 (100.0)
적합한 진행 방법	강의	138 (28.0)
	프로젝트 탐구 학습	30 (6.1)
	역할극	29 (5.9)
	모둠활동(토론 및 협동)	28 (5.7)
	시청각 자료 활용(영상 및 매체)	151 (30.7)
	현장체험 / 캠프	26 (5.3)
	게임·놀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 학습	39 (7.9)
	기 타	6 (1.2)
	무응답	45 (9.1)
계		492 (100.0)
적합한 교수학습 원리	다양한 프로그램 (놀이/게임)을 통한 태도 및 심리적 변화	224 (45.5)
	모방을 이용한 모범사례의 학습	35 (7.1)
	문제해결중심접근	57 (11.6)
	배운 내용의 현실 연계 및 적용	82 (16.7)
	사례분석을 통한 인지적 갈등 유발을 통한 사고력 함양	73 (14.8)
	기 타	2 (0.4)
	무응답	19 (3.9)
	계	492 (100.0)

6. 인권교육 목표 및 내용

교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아동을 존중하는 태도(28.0%), 아동권리의 기본원칙(27.8%),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22.2%)와 같이 아동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였다. 그 외에도 인권감수성 훈련 내용(5.9%), 체벌이나 부적절한 언행(5.1%),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 형성(4.5%)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요한 아동인권 관련 문제 중에서 아동학대와 방임(34.1%), 의사소통방법(25.0%)과 아동과 교사의 안전(21.1%)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표 3-14 참조).

〈표 3-14〉 인권교육의 내용

		단위: 명 (%)
인권교육의 내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09 (22.2)
	인권감수성 훈련 내용	29 (5.9)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생존 및 발달)	137 (27.8)
	아동을 존중하는 태도	138 (28.0)
	체벌이나 부적절한 언행	25 (5.1)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 형성	22 (4.5)
	기 타	4 (0.8)
	무응답	28 (5.7)
	계	492 (100.0)
중요한 아동인권관련 문제	아동학대와 방임	168 (34.1)
	아동과 교사의 안전	104 (21.1)
	영양 및 보건	4 (0.8)
	놀이와 여가	17 (3.5)
	의사소통 방법	123 (25.0)
	교사의 권리	47 (9.6)
	기 타	4 (0.8)
	무응답	25 (5.1)
	계	492 (100.0)

7. 인권교육 실행의 실제

실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기존의 연수나 보수교육을 통한 워크숍(56.7%)으로 하는 교육방식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으며, 특강(16.1%), 인권교사교육을 받은 현직교사의 전달연수(8.7%), 인권이나 아동관련 단체의 캠프형태(8.5%), 사이버교육(6.5%) 순의 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인권교육의 형태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39.4%)하기를 원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5~7회기 단기프로그램(23.0%)과 일회성 특강(20.9%)의 형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회기 당 적합한 시간은 1~3시간 이내라고 대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 중 90%가 넘었다. 가장 적합한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강사진은 인권단체, 아동관련 단체의 교육훈련가(40.2%)와 아동(교육)전문가(34.1%)가 1, 2위로 나타나 아동인권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강사진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인권교육교재의 구성형태는 인권적인 학급 및 기관 운영을 위한 현장 적용 자료집(33.3%)이 가장 높았고, 인권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과 사례중심의 워크북(24.0%), 아동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재(19.9%),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 중심의 자료집(18.5%)의 형태의 순으로 선호하였다(표 3-15 참조).

〈표 3-15〉 인권교육 실행 형태

단위: 명 (%)		
기대하는 인권교육 방식 (효과성과 현실가능성 고려)	기존의 연수나 보수교육을 통한 워크숍	279 (56.7)
	인권교사교육을 받은 현직교사의 전달연수	43 (8.7)
	특 강	79 (16.1)
	인권이나 아동관련 단체의 캠프형태	42 (8.5)
	사이버교육	32 (6.5)
	사이버교육과 캠프 병행	2 (0.4)
	기 타	1 (0.2)
	무응답	14 (2.8)
계		492 (100.0)

적절한 회기	일회성 특강	103 (20.9)
	5~7회기 단기프로그램	113 (23.0)
	한 학기 교육프로그램	66 (13.4)
	정기적 프로그램	194 (39.4)
	기 타	10 (2.0)
	무응답	6 (1.2)
	계	492 (100.0)
한 회기 당 적절한 시간	1시간 이내	134 (27.2)
	2~3시간	312 (63.4)
	5시간	29 (5.9)
	8시간	6 (1.2)
	기 타	9 (1.8)
	무응답	2 (0.4)
	계	492 (100.0)
적합한 강사진	인권교육을 받은 현직교사	60 (12.2)
	아동(교육)전문가	168 (34.1)
	인권변호사	12 (2.4)
	인권단체, 아동관련단체의 교육훈련가	198 (40.2)
	관련학과 대학교수	16 (3.3)
	기 타	4 (0.8)
	무응답	34 (6.9)
	계	492 (100.0)
교사 대상 인권교육교재 구성 형태	아동인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재	98 (19.9)
	인권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과 사례 중심의 워크북	118 (24.0)
	인권적인 학급 및 기관 운영을 위한 현장 적용 자료집	164 (33.3)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 중심의 자료집	91 (18.5)
	기 타	2 (0.4)
	무응답	19 (3.9)
	계	492 (100.0)

한편,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실행 시 어려운 점에 대한 문항에서는 자료나 프로그램의 부족(39.6%)을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외에도 수업 시간 확보의 어려움(23.8%), 참여자의 동기 부족(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교육이 정책상 실시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90.5%로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상 실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3-16 참조).

〈표 3-16〉 인권교육 실행의 실제

단위: 명 (%)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실행 시 어려운 점	자료나 프로그램의 부족	195 (39.6)
	수업시간 확보의 어려움	117 (23.8)
	참여자의 동기 부족	77 (15.7)
	전문 강사의 부족	25 (5.1)
	교사 및 기관장의 관심부족	42 (8.5)
	기 타	12 (2.4)
	무응답	24 (4.9)
	계	492 (100.0)
정책상 실시 시 참여 여부	예	445 (90.4)
	아니오	39 (7.9)
	무응답	8 (1.6)
	계	492 (100.0)

제3절 면접조사의 실시 및 분석 결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와 더불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에서는 얻기 어려운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현장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다양한 집단의 견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 면접조사 참여자의 대상 및 실시방법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이해 및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유아 관련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 다양한 집단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Q 방법론’에 근거하였다. 면접 참여자의 주관성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본질적 관심을 두고 있는 Q 방법론은 면담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중복된 진술문이 제외됨에 따라 추출될 수 있는 진술문은 줄어들게 되고 더 이상 면담이 의미가 없는 통합체(concourse)가 완성된다는 원리에 기반 한다. Q 방법론에 따르면 진술문의 중복으로 더 이상 면담이 의미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데는 통상적으로 10회 정도의 면담이면 충분하다(김홍규, 2007). 면접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냄으로써 완성되는데, 특정 주제의 전문가, 특정 주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들 등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창의적으로 신중히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는 2012년 1월 12일~14일 총 3일 동안 6개 집단의 총 14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6개 집단은 유아 관련 전문가 집단, 원장, 교사, 유아의 학부모, 일반인까지 인권 전문가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대상에 따라 60분~90분이 소요되었으며,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및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지는 인권교육의 기본사항과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에

서 얻기 어려운 확장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의 메구로구 「아동조례」¹⁴⁾를 바탕으로 고안된 ‘인권감각 체크시트(유치원용)’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인권정의개념, 인권교육,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 하에 각기 다른 인터뷰 대상 집단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동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인권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될 수 있으므로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표 3-17〉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번호	집단	명수	성별	연령	직업
1	전문가 집단	4	여	43	교수(유아교육과)
2			여	40	인권 분야 공무원
3			여	41	인권 분야 공무원
4	원장	2	여	58	유치원 원장
5			여	43	보육시설 원장
6	교사	2	여	48	유치원교사
7			여	42	보육교사
8	부	2	남	42	자영업
9			남	38	대안학교 교사
10	모	2	여	40	주부
11			여	45	주부
12	일반인	3	여	56	사회복지사
13			여	53	육아도우미
14			남	49	공무원
총 계		14			

14) 2005년 12월에 시행. 아동권리에 있어 개별시책에서 명칭만의 추상론은 피하고 실질적이 이념의 보장을 지향하여 메구로구 기본계획, 지역복지계획, 차세대육성지원행동계획에도 아동조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의 인권 확립이나 권리의 존중이 내세워지고 있다. 어린이의 성장기 중에 인간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유유아(乳幼兒)기’에 대하여 보호자의 역할과 육아를 뒷받침하는 지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6개 집단의 피면접자 14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다양한 견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질문 범주별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로 제시하겠다.

〈표 3-18〉 심층면접의 범주별 질문과 응답 내용

범 주	질문 내용	응답 내용
인권 정의, 개념	인권의 정의	•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을 권리 •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타인으로부터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을 권리
인권교육	인권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아의 의사표현 및 선택권 증진 • 인권 친화적 환경 구성 •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 침해 사례	• 아동의 의견 무시, 차별, 학대
	인권 존중 사례	• 선택권 (예: 교구·교재에 대한 선택권, 간식 선택권)
	필수 내용	•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 • 타인에 대한 배려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아동인권 접근 방향	• 아동에 대한 기본태도 형성 - 인격적으로 아동 대하기 • 아동인권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산된 워크샵 형태의 인권교육
	아동인권 이슈	• 언어폭력 및 학대 • 교사의 노력 및 정책적 개선 • 아동의 행복

첫째, 인권 및 아동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권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타인으로부터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을 권리’라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다수의 응답자에게 있어 ‘인권’이 의미하는 바가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존중’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인권 침해 사례 및 인권 존중 사례’, ‘인권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의 질문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교육’ 범주에서는 인권

친화적 환경을 구성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에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음을 응답하였다.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 혹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상황 등이 보고되었으며, 아동 학대 또한 대다수의 응답 내용에서 나타났다. 인권 존중 사례에서는 절대 다수가 교구·교재 및 간식 등에 대한 선택권을 이야기하였다. 인권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의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응답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권 정의에 대한 응답과 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유아 대상 인권교육’ 범주에서는 ‘유아 인권교육의 내용’과 ‘유아인권교육의 방법 및 형태’의 질문으로 면접 인터뷰가 이뤄졌다. 유아 인권교육의 내용으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비교적 다양한 응답을 하였는데, ‘존중받을 권리’, ‘비차별’, ‘안전할 권리’, ‘놀이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인권 요소들이 나타났다. 유아인권교육 방법 및 형태에 있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그 누구보다 인권교육을 받은 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강조되어 나타났으며, 강의식 교육이 아닌 아동이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응답하였다. 또한 상황극, 인형극, 동극 등의 활동 및 손가락 인형, 그림카드, 동화, 동시의 활용을 통한 인권교육 방법이 유아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아 인권교육’ 범주에서 얻어진 응답 내용은 유아교사가 유아 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 참고,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 인권교육의 내용에서 나타난 아동권리 요소들에 있어 교사들의 이해가 유아 인권교육에 앞서 매우 중요시되므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또한 적절하게 다루어 교사들로부터 올바른 이해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 대상 인권’ 범주에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접근 방향’과 ‘아동인권에 대한 이슈’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인권에 대한 접근 방향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 방향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과 아동인권에 있어 교사들이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산된 워크숍 형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들은 유아교사 인권교육 프로

그럼 개발에 있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형성’과 같은 개념적이고 근본적인 측면과 함께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을 위한 체계적 측면 모두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심층면접 분석결과는 여러 문헌 조사와 설문 조사의 결과와 많은 부분 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견해 및 인식을 탐구하고, 문헌 조사와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데 궁극적인 정보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면접조사의 결과는 인권의 필요성 및 목적, 인권 요소, 인권교육방법론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제4장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국제인권조약 및 인권, 인권교육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룰 인권영역을 추출하였다. 준비단계를 거친 후 문헌고찰, 욕구조사(설문, 면접) 단계를 진행하여 인권영역을 완성하고 프로그램 전반의 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의 모듈별 주제를 선정하고 각 모듈의 회기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각 회기의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단계에서 연구진 이외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여러 차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 작업을 거친 후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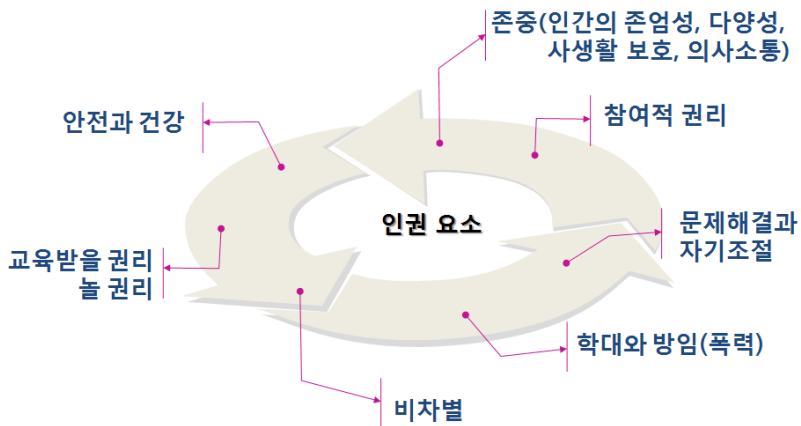
〈그림 4-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

준비단계	기초 작업 단계	프로그램 모듈 구성 단계	프로그램 내용 구성 단계	전문가 검토 단계	프로그램 개발 완료 단계
국제인권조약 및 인권문헌 분석 후 인권요소 추출	문헌고찰 - UN 인권 관련 문헌 - 인권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관련 연구 욕구조사 - 설문조사 - 면접조사	인권영역을 반영한 프로그램 모듈 주제 및 회기 구성	각 회기의 내용 및 활동 구성 프로그램 전반 평가 및 수정 보완	자문의견 검토 후 수정 보완	프로그램 완성

제1절 프로그램의 인권 요소 선정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기에 앞서 주요 인권 요소를 선정하였다. 인권 요소 선정은 프로그램 개발의 준비단계 및 기초 작업 단계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관련 문헌과 욕구조사의 결과가 기초가 되었다. 유아교사의 인권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아동인권 관련 요소와 유아교사의 인권인식 및 태도 관련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활용될 인권 요소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될 인권 요소는 다음과 같이 7가지이다.

〈그림 4-2〉 프로그램에 반영된 인권 요소



제2절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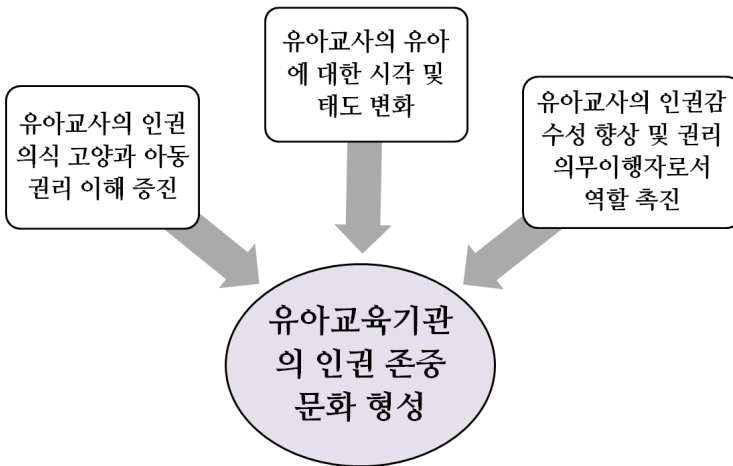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으로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가 중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유엔인권교육10개년 계획(1995-2004)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거 틀을 제공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일반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의 확대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권교육의 기본적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보편적 이해 증진을 꾀한 점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제1기(2005-2007)를 제시하여 초·중등학교과정 내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춘 권고를 하여 적극적인 시행을 도왔다. 이후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5)이 시행되면서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 역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 교원, 아동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아동상담치료사 등)를 위한 인권교육은 이미 시도된 바 있으나,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교사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 주류화(human rights mainstreaming) 시도로 인하여 한국사회도 인권의 중요성과 각 분야의 적용을 시도하였고, 그 노력은 아동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를 운영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을 기본 바탕으로 운영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참여적 권리를 가장 크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 의식에 기초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형성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 유아교사들 역시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역량을 형성하도록

돕는 인권교육의 그 목적 및 방향은 이러한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2. 유아교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하여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찰할 수 있다.
3. 유아교사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아동권리에 기반을 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4-3〉 유아교사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



위와 같은 목적 아래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인권의 주요원칙과 기본 요소를 다루어 교사의 아동인권 이해 촉진을 위하여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자료 구성
2. 아동에 대한 인식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인권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모듈 제공

3.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 적용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

4.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유아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긍정적인 교육 방안을 고려하여 사전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구성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 구성 방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가 지향하는 방향, 인권교육의 기본 지침이 가지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주요원칙과 기본 요소를 다루어 교사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둘째,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인권 인식을 증진한다.

셋째,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유아교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유아교사는 아동인권의 옹호자/의무이행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성

1. 인권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을 융통성·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단기프로그램으로서, 유아교사와 유아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한 아동인권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을 하였다. 프로그램은 유아교사를 위한 필수적인 인권요소를 선정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교육자료와 교육모듈로 이루어지며, 교육모듈은 10개의 회기로 구성된다. 각 회기는 주제에 따라 다수의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활동에는 목표, 기대효과, 준비물, 소요시간, 참고자료, 진행방법, 진행자를 위한 조언(Tips), 그리고 참고할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할 텍스트는 각 장에서 제시된 교육자료 외에도 활동을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교육자료를 명시하고 있어 진행자와 참가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을 정리하면, 4개의 장이 각각 교육자료와 교육모듈로 구성되고 교육 모듈은 10개의 회기로 구성된다. 각 모듈의 주제와 회기구성을 살펴보면, [모듈1]은 아동이란?(2회기), [모듈2]는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2회기), [모듈3]은 주제별 아동인권(2회기), [모듈4]는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4회기)으로 구성된다. 교육실행은 모듈1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참가자의 필요와 교육환경에 따라 필요한 회기 혹은 활동을 재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주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주제

프로그램 구성	회기	주제
1장 아동이란?	1.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아동과 교사
	2. 아동기와 아동존중	아동기와 아동존중
2장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3. 아동인권과 배경	아동인권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3장 주제별 아동인권	5. 비차별의 원칙	비차별
	6. 주제별 아동인권	아동 관련 이슈
4장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7. 아동인권 모니터링	인권의 현장적용
	8. 콘텐츠 속 인권 상황	
	9.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동	
	10.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제4절 인권교육프로그램 영역의 교육내용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각 모듈 및 회기에 구성된 교육내용은 유아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모듈 및 회기 별 활동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핵심적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1]은 나와 아동, 그리고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과 아동존중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본 모듈을 통해 아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아동기를 위해 아동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모듈2]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배우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아동인권의 원칙과 기본권을 통해 아동인권 이해 증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3]은 아동인권을 다룰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동의 안전, 보호, 교육, 놀이,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4]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과 매체를 통해 유아교사의 인권문화 형성을 돕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 인권교육 모듈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회기	활동	목표	시간	참고할 텍스트
모듈1. 아동이란?		나와 아동, 그리고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동기 경험과 아동존중의 중요성을 인식		
1.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A.나와 아동	나와 아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선구자들의 지혜의 글을 통해 아동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배운다.	30분	- 존재에 대하여 - 선구자들의 아동관
	B.유아교사로서의 나	유아교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재정립해본다.	30분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사
2.아동기와 아동존중	A.아동기	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역사 속 아동기와 아동관을 배운다.	60분	아동기란 무엇일까?
	B.아동기와 아동 존중	아동기를 위해서는 아동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60분	아동존중에 대하여
모듈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과 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아동인권의 기본 원칙을 통해 아동인권 이해 증진을 도모		
3.아동인권과 배경	A.아동인권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활동을 통해 배운다.	30분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 아동인권이란?
	B.아동인권의 배경과 역사	아동인권이 나오게 된 역사와 배경을 배운다.	30분	- 아동인권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 선구자들의 아동관
4.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A.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협약의 구성과 기본권, 일반원칙을 배운다.	50분	교육자료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반
	B.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체계를 이해하고 배운다.	30분	
	C.아동인권 퀴즈	아동인권의 전반적 이해도를 점검한다.	30분	

회기	활동	목표	시간	참고할 텍스트
모듈3. 주제별 아동인권		아동인권을 다룰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통해 아동의 안전, 보호, 교육, 놀이,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5. 비차별의 원칙	A.차별이란?	차별받는 느낌 체험해 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30분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B.편견과 고정관념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차별행동을 생각해본다.	50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C.동화에서 배우기	동화 “빼빼 롱스타킹” 읽고 동화 속 주인공의 생각과 언어, 행동을 통하여 아동을 이해한다.	40분	- 선구자들의 아동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6.주제별 아동인권	A.우리 기관 안전한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60분	-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B.우리 아이 안전한가?	유괴와 실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과 관련된 교사지침을 배운다.	40분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C.이게 아동학대라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한다.	40분	아동학대와 방임
	D.학대를 보는 눈, 보호하는 손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배우고 유아교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한다.	40분	아동학대와 방임
	E.교육이란? 교육의 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를 배우고 유아의 잠재력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30분	- 아동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F.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놀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다.	30분	유아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G.버릇없음에서 참여로	아동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참여가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5분	-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회기	활동	목표	시간	참고할 텍스트
모듈4.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과 매체를 통해 유아교사의 인권 존중문화 증진 도모		
7. 아동인권 모니터링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목표와 역할을 배 운다.	40분	교육자료 1, 2, 3, 4장 전반	
8. 콘텐츠 속 인권 상황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권감수성에 대 해 체험할 수 있다.	40분		
9.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 동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배양 할 수 있다.	40분		
10. 입장 바꿔 생각해보 기	갈등 상황 속에서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 고 상호간의 존중하는 마음을 키운다.	50분		

제5절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교수방법

본 프로그램은 인권의 감수성을 형성하고 교사로서 유아교육환경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각 모듈과 회기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사가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재고하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 인권의 다양한 이슈에 민감한 태도를 갖게 하여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기술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이것은 인권의 인지적 이해와 비판적 분석, 인권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세 가지 인권교육 모형 아래 구성되었다.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과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태도 및 실천 과정이다(이양희, 2004). 인권교육의 목표와 연관된 교육내용을 이 세 가지의 교육 모형으로 구성할 경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식, 기술 및 태도, 행동을 적절히 구성한 모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기와 적극적인 태도, 진행자의 참여자 학습 촉진 및 상호작용 기술이 매우 중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은 참여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참여적 워크숍 형태, 정보전달을 위한 적절한 강의, 다양한 매체 활용, 토론 및 협동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모둠활동 등을 고르게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더욱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한 교수방법인 아동인권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분석, 익숙한 소재의 매체를 인권을 존중하는 사고로 재분석하는 활동을 첨가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 시 유의할 세 가지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 참여식 방법

본 유아교사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 참여식 훈련 방법을 권장한다.

2. 상호연계와 독립적 구성

본 프로그램은 모듈-회기-활동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모듈과 회기, 활동은 긴밀한 상호연계를 지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진행자가 적절한 활동의 배합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가능하다.

3.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본 프로그램은 모듈-회기-활동의 순서와 진행시간, 방법 등이 진행자의 역량과 특성과 참여자의 특성과 진행환경에 따라 유연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활동 시간은 1차시 평균 40분 기준 (짧게 30분, 길게 60분)으로 총 23차시 활동이 운영된다.

제1절 결론

1993년 3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센터의 공동주최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과 관련한 국제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5년-2004년)이 발표되면서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도모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더불어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효과적 전략이 수립되고 국제·지역·국가지방차원에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역량 개발 강화, 매스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여성, 아동, 노인, 소수자, 난민 등 취약집단과 경찰, 교도관, 교사, 변호사, 판사, 공무원, 민간단체 실무자, 국회의원 등 전문 인력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훈련이 실시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 유엔은 유네스코와 함께 인권교육 필요성의 인식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기(2005-2009)에 관한 행동강령을 통해 초·중등교육과정내의 인권교육을 강조한다. 단기적으로 제시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기가 끝나면서 유엔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행동계획을 발표한다. 이것은 유네스코의 자문을 받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초안을 마련하여 국가인권기구, 학술연구기관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 각 국가(28개국)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한 것으로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교육 및 훈련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지방에서 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영리 정부기구 및 민간단체,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의 확산을 점차 발전시켜가고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의무화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제적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국내 인권교육 제도화는 그 명분과 기준점이 분명히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한 이래로 세 차례 심의를 받은 한국 정부는 모두 인권교육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제1,2차 국가보고서의 최종견해에서 아동, 일반국민, 아동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았고, 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교사, 아동시설 종사자 및 아동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부족 및 체계화·정례화에 대하여 권고 받았다.

최근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대한 노력으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는 고등교육과정 내의 인권교육을 조사한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인권재단(2011)은 대학 교육과정 내의 인권교과를 조사하여 제시하기도 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2012)은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관련 교육 경험의 유무를 조사(예비교사의 74%가 아동인권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하여 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본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유아교육환경의 인권 존중 문화를 형성하는데 최종의 목적을 두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에 다루어질 인권영역을 구성하였고, 참여와 강의, 사고를 독려하는 활동을 고르게 분배한 프로그램 실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의 목적을 인권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관의 인권 존중 문화 형성으로 두고, 그 아래 목표는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과 기본 요소를 통해 교사의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 촉진, 둘째,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 셋째,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유아교육환경 형성, 넷째, 유아교사는 아동인권 의무이행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이행으로 설정하였다.

교사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을 가지는 훈련을 통하여 교실 상황에서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나아가 전반적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권요소와 인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가 형성되므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사들의 변화는 교사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존중하게 되는 점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장점을 가진 본 인권교육프로그램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4개의 모듈,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대상자에 맞게 적절히 운영 가능하여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적용하여도 무관하다. 이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들이 인권과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참여 증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아교육환경이 아동 친화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2절 제언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이 착수된 목적은 제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교원집단의 인권교육 이행 중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요구는 컸으나 국내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은 없었으므로 국내 현장에 대한 욕구조사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본 연구의 욕구조사는 같은 시점에 착수된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욕구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것은 유아의 직접 설문 참여의 어려움과 가장 유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적절한 견해를 제공해 줄 전문가가 유아교사이며,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 2부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착수된 시점은 겨울이 시작되는 때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하는 욕구조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연구기간의 부족함과 더불어 연구가 끝날 시점인 11월 - 2월까지의 유아교육기관의 현장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분주한 시기이다. 잇따른 겨울 행사(김장,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눈썰매 소풍 등)와 졸업과 입학 준비를 연달아 해야 하는 교사와 유아의 실정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각 관계부처와 지역 연합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와 관심과 협조의 정도가 저조하여 전국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집단의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적절하게 편성하고, 부처 간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기간을 두고 진행한다면 연구를 보다 현실성 있게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연구진은 문헌고찰과 현장의 욕구조사, 전문가에서부터 일반인까지 폭넓게 조사한 면접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인권요소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여 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그 내용을 충실히 구성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긍정적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내의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이며 유아교육기관의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고, 단기프로그램은 연구발주처의 요청을 고려한 것이었다.

셋째, 연구진은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하여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인권요소와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면 연구를 기반에 둔 프로그램 진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넷째,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자와 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재가 적절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의 형태가 적절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까지 국내 인권교육에 대한 비판 중 인권교육을 수십여 가지 정부시책 교육 중 하나로 인식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입장이 가장 강하다.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인권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하기보다 인권교육을 실시했다는 실적을 남기고자 하는데 국한하여 2-3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교육이나 한두 시간 이내의 일회성 강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 효과가 의문시 되는 점과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교사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이들이 유아를 직접 교육하도록 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우 민감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의 제언 점에 이어 유아교사들은 유아와 직결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여 임용이 되는 시기의 전후에 인권교육의 책무를 부여하는 입법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완수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관계부처는 협의 하에 중요하게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본 프로그램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교사들에게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정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사들의 동기와 상황이 잘 고려되어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프로그램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현대사회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 가족과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중심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사람이 유아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성만큼 열악한 교육보육 환경을 발전시키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부작용으로 최근 들어 아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의 사건이 이슈화되어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환경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부재했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어 유아교육현장을 향한 프로그램의 기여도가 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부

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유아교사가 아동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와 존중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적극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유아와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진행자가 아동 인권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유아교육현장의 인권 존중 문화 형성을 촉진하는데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현장 유아교사(어린이집, 유치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욕구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아동인권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유아교사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교육자료와 교육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특성과 진행환경에 따라 진행자의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므로 진행자는 강의나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자의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목표, 구성, 특징 및 활용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프로그램 목표

1.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정보 습득

유아교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인권조약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인권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유아에게 적용하여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아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인권감수성 향상

유아교사는 나와 아동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통한 인간 존엄성을 인식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증진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간다.

3.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교사 역할 인식

유아교사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인권의 존중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을 통해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감정과 충동을 관리하는 문제해결기술과 자기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4. 아동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 구성

유아교사는 의무이행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아동인권 친화적으로 구성하여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천하는 적극적 옹호자가 될 수 있다.

II.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구성

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주제에 따라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크게 교육자료와 교육모듈로 나뉜다. 교육프로그램의 전체구성은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프로그램의 구성

구성	교육자료	교육모듈	
		모듈	회기
1장. 아동이란?	〈아동이란?〉 • 존재에 대하여 • 아동의 정의 • 아동기란 무엇일까? • 선구자들의 아동관 •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사 • 아동존중에 대하여	모듈1. 아동이란?	1회기.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2회기. 아동기와 아동존중

구성	교육자료	교육모듈	
		모듈	회기
2장.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 리협약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 아동인권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 아동권리의 4개 기본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모듈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 리협약	3회기. 아동인권과 배경
			4회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3장. 주제별 아동인권	〈주제별 아동인권〉 •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 아동학대와 방임 •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 유아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모듈3. 주제별 아동인권	5회기. 비차별의 원칙
			6회기. 주제별 아동인권
4장.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 장 적용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아동인권을 강조한다면, 교사와 부모의 인권은?	모듈4.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 장 적용	7회기. 아동인권 모니터링
			8회기. 컨텐츠 속 인권 상황
			9회기.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동
			10회기.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2. 교육자료의 구성

교육자료는 교육모듈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교육자료는 각 주제에 맞춰 아동(유아), 교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안전, 학대와 방임, 의견존중 등 아동인권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최소한 제시된 교육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각 장에 제시된 교육

자료는 해당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본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진행자는 가능한 모든 교육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교육모듈에 제시된 활동과 회기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각 장에 제시된 교육자료의 구성은 앞서 제시된 표와 같다.

3. 교육모듈의 구성

교육모듈은 회기-활동의 구조로 10회기, 23차시의 활동으로 [모듈1]은 아동이란?(2회기), [모듈2]는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2회기), [모듈3]는 주제별 아동인권(2회기), [모듈4]는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4회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은 각각 다수의 회기로 구성되며, 각 회기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에 대한 대략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 6〉 교육모듈의 회기별 구성과 주제

모듈		회기	주제
1	아동이란?	1.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아동과 교사
		2. 아동기와 아동존중	아동기와 아동존중
2	아동인권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3. 아동인권과 배경	아동인권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3	주제별 아동인권	5. 비차별의 원칙	비차별
		6. 주제별 아동인권	아동 관련 이슈
4	아동인권의 유아 교육 현장 적용	7. 아동인권 모니터링	인권의 현장적용
		8. 콘텐츠 속 인권 상황	
		9.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동	
		10.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각 모듈은 회기와 활동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각 회기와 활동에는 목표, 기대효과, 준비물, 소요 시간, 참고자료, 진행방법, 진행자를 위한 조언(Tip), 그리고 참고할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듈1]은 나와 아동, 그리고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과 아동존중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1은 1회기와 2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1회기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는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나와 아동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2회기 ‘아동기와 아동존중’에서는 스스로의 아동기 경험을 돌아보는 활동을 통해 아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아동기를 위해 아동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표 7〉 모듈1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모듈1. 아동이란?		나와 아동, 그리고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동기 경험과 아동존중의 중요성을 인식		
1.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A.나와 아동	나와 아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선구자들의 지혜의 글을 통해 아동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배운다.	30분	- 존재에 대하여 - 선구자들의 아동관
	B.유아교사로서의 나	유아교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재정립해본다.	30분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사
2.아동기와 아동존중	A.아동기	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역사 속 아동기와 아동관을 배운다.	60분	아동기란 무엇일까?
	B.아동기와 아동 존중	아동기를 위해서는 아동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60분	아동존중에 대하여

[모듈2]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배우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아동인권의 원칙과 기본권을 통해 아동인권 이해 증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2는 3회기와 4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3회기 ‘아동인권과 배경’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통해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4회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해 배우고 협약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배움으로써 아동인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표 8〉 모듈2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모듈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과 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아동인권의 기본 원칙을 통해 아동인권 이해 증진을 도모		
3. 아동인권과 배경	A. 아동인권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활동을 통해 배운다.	30분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 아동인권이란?
	B. 아동인권의 배경과 역사	아동인권이 나오게 된 역사와 배경을 배운다.	30분	• 아동인권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 선구자들의 아동관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A.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협약의 구성과 기본권, 일반 원칙을 배운다.	50분	• 교육자료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반
	B.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체계를 이해하고 배운다.	30분	
	C. 아동인권 퀴즈	아동인권의 전반적 이해도를 점검한다.	30분	

[모듈3]은 아동인권을 다룰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동의 안전, 보호, 교육, 놀이,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3은 5회기와 6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5회기 ‘비차별의 원칙’에서는 비차별의 원칙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배우고, 차별로 인한 인권차별사례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학작품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유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하여 고찰해볼 수 있다.

6회기 ‘주제별 아동인권’은 주제별로 아동인권을 살펴보는 기본과정으로 아동인권의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모듈3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모듈3. 주제별 아동인권		아동인권을 다룰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통해 아동의 안전, 보호, 교육, 놀이,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5. 비차별의 원칙	A.차별이란?	차별받는 느낌 체험해 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30분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B.편견과 고정관념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차별행동을 생각해본다.	50분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C.동화에서 배우기	동화 “빼빼 롱스타킹” 읽고 동화 속 주인공의 생각과 언어, 행동을 통하여 아동 이해한다.	40분	• 선구자들의 아동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6.주제별 아동인권	A.우리 기관 안전한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60분	•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B.우리 아이 안전한가?	유괴와 실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과 관련된 교사지침을 배운다.	40분	•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C.이게 아동학대라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한다.	40분	• 아동학대와 방임	
	D.학대를 보는 눈, 보호하는 손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배우고 유아교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한다.	40분	• 아동학대와 방임	
	E.교육이란? 교육의 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를 배우고 유아의 잠재력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30분	• 아동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F.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놀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다.	30분	• 유아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G.버릇없음에서 참여로	아동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참여가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5분	•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모듈4]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과 매체를 통해 유아교사의 인권존중 문화 형성을 돕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4는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7회기 ‘아동인권 모니터링’은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목표와 역할을 배우는 활동으로 이후 회기에서 적용될 아동인권모니터링의 방법을 습득하는 회기이다.

8회기 ‘컨텐츠 속 인권상황’은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훈련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9회기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동’에서는 4컷 만화와 딜레마상황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안적 문제해결을 모색해보는 활동이다.

10회기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는 갈등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전래동화, 신문기사, 일화 등)를 찾아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입장에 따라 상황을 재분석함으로써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재해석해보는 활동으로 이를 통하여 존중과 공감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회기이다.

〈표 10〉 모듈4의 회기별 구성과 목표

모듈4. 아동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과 매체를 통해 유아교사의 인권 존중문화 증진 도모	
7. 아동인권 모니터링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목표와 역할을 배운다.	40분	교육자료 1, 2, 3, 4장 전반
8. 콘텐츠 속 인권 상황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권감수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40분	
9. 딜레마 상황과 문제 행동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배양 할 수 있다.	40분	
10.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	갈등 상황 속에서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존중하는 마음을 키운다.	50분	

Ⅲ. 프로그램 진행 특징

1. 민주, 참여식 방법

본 유아교사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 참여식 훈련 방법을 권장한다.

2. 상호연계와 독립적 구성

본 프로그램은 모듈-회기-활동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모듈과 회기, 활동은 긴밀한 상호연계를 지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진행자가 적절한 활동의 배합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가능하다.

3.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본 프로그램은 모듈-회기-활동의 순서와 진행시간, 방법 등이 진행자의 역량과 특성과 참여자의 특성과 진행환경에 따라 유연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활동 시간은 1차시 평균 40분 기준 (짧게 30분, 길게 60분)으로 총 23차시 활동이 운영된다.

Ⅳ. 모듈활용방법 및 유의점

모듈을 구성하는 활동마다 목표, 소요시간, 교육방법, 기대효과, 준비물, 진행방법과 진행자를 위한 조언들(Tip), 그리고 참고할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각 활동에 제시된 참고할 텍스트는 교육자료 혹은 부록에서 진행에 도움이 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진행자는 제시된 교육자료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소요시간이나 진행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활동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확장하고 변화하여도 좋다.

교육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참가자의 활동 참여시 권장하는 인원 구성으로 개인과 그룹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활동참여 유형은 강의형, 활동형, 발표형, 토론형, 혼합형으로 나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 교육방법

인원구성유형	개인 / 그룹	
활동참여유형	강의형	진행자에 의한 지식/정보 전달 위주의 유형
	활동형	신체를 활용한 동적 활동이나 색채, 만들기 등의 활동위주의 유형
	발표형	진행자의 주도로 참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는 유형
	토론형	참여자의 주도로 개인/그룹 간 상호 토론이 이루어지는 활동 유형
	혼합형	위의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상호교류 활동(interaction)을 통한 학습 유형

V. 프로그램 평가방법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변화된 인식과 태도의 분석’, 참가자들의 ‘교육에 대한 피드백’, 참가자 ‘피드백의 적절한 해석 및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을 통한 평가는 교육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대상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 참여하는 참가자, 그리고 교사가 속해있는 기관장과 학부모에 의한 평가방법이 있다.

제1장

아동이란?

1장은 나와 아동, 그리고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과 아동존중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을 구성하는 교육자료 내용과 각 회기별 활동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1장의 구성(1, 2회기)

교육자료 1	아동이란?	존재에 대하여
		아동의 정의
		아동기란 무엇일까?
		선구자들의 아동관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사
		아동존중에 대하여
회기	1.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A. 나와 아동
		B. 유아교사로서의 나
	2. 아동기와 아동존중	A. 아동기
		B. 아동존중

교육자료 1. 아동이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아동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존재에 대하여

❖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성찰 하며 살고 있을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 해보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동인권을 이야기 하는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아동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치를 인식하기 전에 아동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 인간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본래적인 권리를 갖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이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인해 지켜지고, 충족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중을 말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이러한 인간존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이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와 가치로 시작된 생각은 자연스레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나’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부족한 사람, 특별한 사람, 키 큰 사람, 눈이 작은 사람, 독심 있는 여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 등……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외모나 피부색이 어떠하든, 능력이나 배경이 어떠하든 이 지구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귀한 생명체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너’ 역시 지구상에 둘도 없는 생명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으로 태어난 생명체,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타고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인권을 이야기하기 전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자.

❖ 아동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동은 ‘우리의 미래’, ‘새싹’, ‘씨앗’, ‘스펀지’, ‘거울’ 등으로 답한다. 그들은 아동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로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은 인간이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중 받아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즉, 인권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아동은 작은 어른이 아니다. 그리고 성인의 축소판도 아니다.

우리는 아동이 인간인 것을 당연한 듯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인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아동을 대하곤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이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임을 체득해야 한다.

아동의 정의

일반적으로 아동이란 전 생애 발달에서 성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발달단계를 의미한다. 성인이 되기 이전 연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아동 외에도 어린이, 유아, 영아, 미성년자, 청소년 등이 있다. 아동기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문영역이나 학자에 따른 이견이 있으나 발달심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내기(수정에서 출생), 신생아기(출생 후 약 4주), 영아기(신생아기 이후 약 24개월까지), 유아기(2~6세), 학령기(7~12세), 청소년기로 지칭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학령기를 아동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 소년, 청소년, 영유아, 어린이, 아동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정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인 유

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근거가 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각각 유아와 영·유아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과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는 반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을 14세 미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20세 미만으로 정의하여 일관되지 않은 아동 연령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민간에서는 아동관련 법률에 있어 연령의 중첩과 누락은 아동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혜택의 차이,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공백, 정확한 자료와 통계 산출의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장기적으로 통합적이고 일관된 아동의 개념정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아동의 정의(협약 제1조)와 동일하다. 그 외에도 민법, 소년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 어린이, 소년 등 성인기 이전 연령을 가장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아동기란 무엇일까?

서구에서는 중세기까지도 아동은 어른의 축소형으로 ‘작은 어른’으로 여겨지거나 아예 아동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때로는 종교적 칭송과 신비화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아동과 아동기를 중요시 여겼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성인의 축소판으로 그려지던 아동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모습과 의복으로 다루어진 것은 17세기 부터였다(정영근, 2002).

17세기에서 18세기 공업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근대적 의미에서의 아동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은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혼다 마스코, 2002).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고, 수동적이고, 약하고, 미숙하므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어른이 제일 잘 알고, 어른에게 좋은 것이 바로 아동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라 여겨졌었다. 대략 17세기

15) 본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적 맥락에서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아동을 영아와 유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중엽까지 아동은 성인의 소유물,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아동의 노동력 착취 역시 당연한 것이었다(권영복, 2001). 그러나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고와 교육적 연구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동관이 제시되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영아학교와 유치원의 등장으로 아동이 성인과 다를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기 전의 유아기와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라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 살자!’라고 한 프리벨(Fröbel)의 영향이 컸다. 1837년 유아기 아동을 위한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치원(Kindergarten)을 설립한 프리벨은 유아기와 학령기 교육의 차별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학령기 아동은 이성적 사고로 지식을 넓혀가는 특성이 있으나 유아기 아동은 자신의 감각을 이용해야한다고 하며 질적으로 다른 교육을 강조하였다(이현섭·김상운·추정선·조선희, 2002; 정선아, 2002).

20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과 아동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아동중심의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동은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아동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었다(이강안, 2009). 심지어 스웨덴의 교육자 엘렌 케이¹⁶⁾는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로 만들었던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선구자들의 아동관

❖ 칼릴 지브란¹⁷⁾: 《예언자》 중 ‘아이들에 대하여’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베차리(Bsharri)에서 태어났다. 그는 철학자, 화가, 소설가, 시인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레바논의 대표 작가이다. 그는 예술 활동에만 전념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화합, 레바논의 종교적 단합을 호소했다. 지브란의 대표적 작품으로 《예언자》, 《부러진 날개》 등이 유명하며, 《예언자》는 그가 미국에서 영어로 쓴 최초의 작품이다. 《예언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20개국 이상의

16) 엘렌 케이 [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2.11.~1926.4.25] : 스웨덴의 여성 사상가로 문학사, 여성 문제, 교육문제에 걸쳐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저작 활동을 했다. 사회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해방, 억압되어 온 여성과 아동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여성운동》 《어린이의 세기》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출처: doopedia 두산백과)

17)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 1883.12.6.~1931.4.10]

언어로 번역되었고 150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그의 작품 《예언자》 중 한편인 ‘아이들에 대하여’는 아동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하여

그러자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한 여인이 말했다.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는 말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라고 하여 모두 그대들의 아이들은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딸이며 아들인 것.

아이들이란 그대들을 거쳐 왔을 뿐. 그대들이 창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순 있으나, 생각까지 줄 순 없는 것.

왜?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순 있으나, 결코 영혼의 집마저 줄 순 없는 것.

왜?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은 결코 방문할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아이들처럼 되려고 애써야 한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애쓰진 말라.

왜? 삶이란 결코 뒤로 되돌아가진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는 것이기에.

그대들은 활,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 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궁수(弓手)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의 한 표적을 겨누고, 그분이 거대하신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신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나아가도록.

그대들의 궁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왜? 그분은 날으는 화살도 사랑하시지만, 날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에.

- 칼릴 지브란 《예언자》 중에서

❖ 야누슈 코르차크¹⁸⁾: 《아이들》

코르차크는 1878년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다. 그는 교육자, 철학자, 의사였고 무엇보다 아동인권 옹호의 선구자였다. 1912년 유대인 고아들을 보살피는 어린이집(Dom Sierot)을 설립한 그는 독일 침공으로 나치의 학살 앞에 그가 돌보던 아이들 200명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였다. 코르차크는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아동인권을 위해 헌신한 선구자였다.

야누슈 코르차크의 대표 작품인 《아이들》에서 그는 아동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하여 단순하면서도 단호하게 언급한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받고 존중 받는 것임을 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은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란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다.

- 야누슈 코르차크의 《아이들》 중에서

❖ 에글린타인 쥘¹⁹⁾: 아동권리선언문

에글린타인 쥘은 1876년 영국에서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6남매와 함께 자랐다. 그녀는 케임브리지 재학 시절 교육이 빈곤을 줄이는 요소라고 주장한 책을 출판하였고 그 시절 빈곤과 자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계1차 대전이 끝나면서 에글린타인과 그녀의 동생은 전쟁의 여파로 인해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경제가 파탄나면서 그 나라

18) 야누슈 코르차크[Janusz Korczak, Janusz Korczak, 1878~1942]

19) 에글린타인 쥘[Eglantyne Jebb, 1876.8.25 ~ 1928.12.17]

의 아이들이 받는 영향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녀들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걱정하였고 아이들의 정의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1919년에 아동인권에 기반을 둔 구호 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만들게 된다. 그 후 그녀는 4년 뒤인 1923년 ‘아동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초안을 발표하였다.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66년 뒤,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아동권리선언문

1. 아동은 그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조건을 공급받아야 한다. (발달, 보호)
2.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하고 병든 아동은 치료 받아야 하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재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발달, 보호)
3. 재난이 닥칠 경우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생존, 보호, 아동 최상의 이익)
4.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와 안전체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며 앞으로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생존, 보호, 발달)
5. 아동은 그들 개개인의 재능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발달, 참여)

❖ 소파 방정환²⁰⁾ : 어린이 공약 3장

방정환은 1899년에 태어나 1931년 32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동문학가, 민족운동가, 아동교육실천가, 아동권리옹호자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20) 방정환[方定煥, 1899.11.9.~1931.7.23] : 아동문학의 보급과 아동보호운동의 선구자인 아동문학가.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 등의 창간을 비롯 잡지를 편집·발간했다. 창작뿐 아니라 번역·번안 동화와 수필과 평론을 통해 아동문학의 보급과 아동보호운동을 하였다. (출처: doopedia 두산백과)

있다. 그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유교적 문화를 빗대어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서 수분과 지기(地氣)를 싹에 올려주어야 하는데 뿌리가 상좌에 있어 싹과 뿌리가 모두 말라버렸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어린이는 말쑥꾼이나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 중심으로 생활이 변해야 하고, 어른의 존재가 어린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우남희, 1999).

1923년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날과 어린이 공약 3장을 선포하였다. 그가 공포한 어린이 공약 3장은 아동을 인격적 주체로 대우할 것과 아동에 대한 노동금지 그리고 교육과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이다(이재연, 1999).

어린이 공약 3장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解放)해야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禮遇)를 허(許)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解放)해야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廢)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各樣)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行)하게 하라.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²¹⁾ : 《삐삐 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스웨덴의 여류 동화작가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출발은 늦었으나, 발을 다쳐 입원 했을 때,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쓴 《삐삐 롱스타킹》로 일약 인기 동화작가가 되었다. 삐삐라는 힘이 센 개구쟁이 여자아이의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일부 교육자의 빈축을 샀지만 저자는 세계적인 동화작가가 되었다.

《삐삐 롱스타킹》은 1945년 출간 되었다. 삐삐는 머리가 빨강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장난꾸러기 소녀로서, 언제나 좌우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고 있다. 힘이 세어 도둑놈을 잡아던지는가 하면, 말을 번쩍 들어올리기도 한다. 게다가 뱃사람이었던 아

21)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Anna Emilia Lindgren, 1907.11.14.~2002.1.28.] : 스웨덴의 여류 동화작가. 《말괄량이 삐삐》로 인기 동화작가가 된 후, 《꼬마 닐스 칼손》으로 닐스 호르겔손상, 《라스무스와 나그네》로 국제 안데르센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doopedia 두산백과)

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화(金貨)가 가득 들어 있는 트렁크를 지니고 변두리의 자그마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혼자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여자아이의 타잔과 같은 활약을 그린 작품은 스웨덴의 어린이들을 열광시킨 동시에 교육자와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문학 평론가 존 란드퀴스트는 “이런 말썽쟁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착한 아이들이 나쁜 아이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작품을 악평했다. 그러나 독자들의 평판이 좋아 속편 《삐삐선(船)으로》 《삐삐의 남양여행(南洋旅行)》 등이 잇달아 출간되어 작자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리고 삐삐 시리즈는 전 세계 80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억 3천만 부가 팔렸다.

작가 아스트리드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내 책을 읽는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 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유도하지 않는다. 내안에 있는 아이가 가장 바라는 대로, 내안에 있는 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그뿐이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 가치관의 형성이다. 나는 예전에 한 독자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었다. 그 편지에는 “어두운 어린 시절에 빛을 주어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 아스트리드의 글²²⁾ 중에서

이러한 선구자들의 탁월한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동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현대적 아동관으로 아동을 인식하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변화를 갖게 되었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선구자 외에도 20세기에는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아동관이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부모를 비롯하여 유아교사 등 아동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실제적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실제적 지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동을 대할 때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 둘째 개개의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그들의 개인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래, 2002).

22)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공식 사이트 Astrid Lindgren's World (<http://www.alv.se/en>)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사

유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한 인격체를 가진 특별한 존재이다. 학자들은 아동발달 단계에서 유아기 아동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한다. 유아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차츰 또래와의 관계를 가지는 시기로서 사회성 발달의 시점이 된다. 또한 언어발달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민감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유아기의 학습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유아교사의 적절한 역할이 아동의 학습을 극대화 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민감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같은 강도의 민감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6세 전 아동에게 투자하면 그 후에 투자하는 것보다 7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는 보고서를 냈다. 또한 아동기에 적절히 지원되는 교육, 의료, 여가 등 사회적 투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연간소득과 연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M Treasury, 2008). 그러므로 유아교사는 유아들의 민감기에 언어, 사회성, 기타 여러 가지 활동 기술을 습득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가 가족 외의 환경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환경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이다. 로버트 폴검의 작품인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단지 제목만으로도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처럼 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은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유아는 과거에 비해 일찍 교육환경과 접촉하게 된다.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는 유아기에서 성인기까지 모든 교육시기에 적용될 것이다. 최첨단 기술과 최고급 교육환경을 갖추었더라도 어떤 교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현저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의존하지 않고, 언어와 놀이, 다양한 자료를 통한 교수방법을 활용하는 유아교육 현장은 다른 어떤 시기의 교육보다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유경숙·김수옥, 2004). 미분화된 발달적 특징을 지닌 유아에게 있어 물리적 환경이나 내용보다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Spodek, 1973; 문채련·이소은, 2005 재인용).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은 아동기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담당해야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물론 국가 역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이 책임과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유아교사는 유아기 아동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능력 있는 교사의 자질을 발휘하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민감기를 사는 시기이기에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배우면 그것이 평생을 사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아동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제시된 글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의 글이다. 이 글이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조그만 소리에 몹시 놀라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자동으로 변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언제나 90도로 배꼽인사를 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유치한 물건에 욕심이 생기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쓰레기나 재활용 물건이 보이면 "이것으로 무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몸에도 맞지 않는 작은 의자에 내 몸을 맡기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내가 없을 때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몹시 걱정돼
맘 놓고 화장실조차 못 가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상처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도, 혹시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상냥하게 웃어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똑같은 질문이 10번 넘게 반복 되어 화가 차올라도

이내 진정시키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가위질을 정말 스피드로 할 수 있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떨어뜨린 밥풀 자국이 정말 힘겹게 느껴지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소풍갔다 돌아오는 차안, 아이들이 피곤해 모두 잠들어 있을 때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가방검사를 해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약했던 비위가 점점 강해져 아이들의 뒤처리와 오바이트 까지
아무렇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를 혼내다가도 빠짝 긴장한 표정이 귀여워 이내 웃어버리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주말에도 오전 10시쯤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하고 싶어지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작은 아이들을 대할 땐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초스피드로 먹어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반찬을 다 나눠주고 반찬이 남지 않았을 때
김치만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소풍날 아이들이 가져온 과자를 종류 별로 먹을 수 있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쇼핑이라도 갈 땐 혹시 학부모가 있나 없나 눈이 레이저로 변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문구점이나 화방에 있는 재료들의 명칭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출근 길 유치원이 보이면 ‘화내지 말자’ 라고 다짐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모든 상황을 쉬운 단어들로 골라 설명할 수 있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피아노, 미술, 영어, 노래, 컴퓨터 등 다방면에 재능이 있어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동화를 읽어 줄 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아기 등의 목소리 외에도 도깨비, 동물 등 모든 형태의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내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너무 많을 땐 어떤 목소리였는지 헷갈리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박물관 같은 견학지에선 구경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인원 수
체크하기 바쁜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집에선 못 잡는 벌레를 유치원에서는 용감하게 잡을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가끔 투명한 도깨비와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는 경찰아저씨와 통화하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맘 놓고 아플 수도 없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 갈 때는 예쁜 모습으로,
하지만 나올 때는 완전 폐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거울 한번 제대로 못 보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하루 종일 천사들과 함께 하고 그 천사들의 우상이며
그 천사들의 스승인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언젠가 그 천사들이 내 가르침을 받고 자라 우리나라에서
큰 존재가 되길 바라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 출처 :어느 어린이집 교사의 글 인터넷 발췌

아동존중에 대하여

아동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아동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흔히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아동에게서 배운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아동을 ‘존중’한다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혹 아동을 존중한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아동을 진정으로(혹은 성인처럼) 존중하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작은 아이가 ‘휴~ 살기 힘들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걸어가는 것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귀엽고 작은 아이가 온 세상 걱정근심을 다 가지고 있듯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빙그레 미소가 나올 것이다. 어쩌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는 이들은 아이의 머리카락 두 볼을 만지고 싶어질 지도 모르겠다. 반면에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그런 한숨을 쉬고 그래! 그 나이에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라며 타이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대상이 직장동료, 아내나 남편, 시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일부 성인은 아동을 대할 때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의 행동, 감정, 정서, 생각에 대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성인이 있다. 아동이 영·유아기 연령대라면 더욱 쉽게 대하기도 한다. 폭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폭력을 더 자주 사용하듯, 존중 역시 경험해 본 이들이 더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동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방법을 개발한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²³⁾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녀는 유아교사가 유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조용히 함께 있어 주고, 어린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어떻게 아동을 존중했을까?

23) 마리아 몬테소리 [Maria Montessori, 1870.8.31~1952.5.6] 이탈리아의 교육자로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의 집(Casa dei Bambini)’을 열어, 이른바 몬테소리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의 권리존중을 주장하여 자유스러운 교육과 개성 발전 교육을 역설하였다. (출처: doopedia 두산백과)

한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았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설명한다.

“아니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도록 조금 도와준 것 뿐이에요.”

여기 그 어린이집과 관련한 몬테소리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다.

몬테소리: 그것은 1907년의 일이었어요. 로마의 빈민 지역인 산 로렌초가(街)에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지어졌지요. 이곳의 부모들은 아침에 일을 나가 저녁때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아파트 여기저기에 낙서를 하거나 시설물들을 부수는 등 말썽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를 앓던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아이들을 맡아 줄 탁아소와 탁아모를 생각해 냈지요.

그 사람들은 내게 아파트 1층에 빈방 하나를 내어 줄 테니, 아이들을 모아놓고 돌봐달라고 제안했어요. 당시 나는 아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던 참이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 드렸지요. 처음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 중에는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무서워하거나 부끄럼 타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반항적인 아이들은 잔뜩 화가 나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자기 주변에 널려있는 다양한 교구에 관심을 보이며 그것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정육면체로 탑을 쌓거나 구멍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의 기둥을 끼어 넣는 작업을 성공할 때 까지 엄청난 집중력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 했지요.

어느 날 나는 한 여자아이가 마흔네 번이나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주위의 시끄러운 노랫소리에 한 번도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오로지 그 작업 만을요! 그렇게 교구를 이용한 지각과 조작의 작업이 단계 별로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수준을 높여갔어요.

또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함께 운동을 하며 훨씬 건강해진 아이들은 서로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서로 달랐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려 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즐겁게 받아들였지요. 아이들이 지닌 인격은 놀라울 만큼 훌륭했

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기만 한다면 더욱 그랬지요.

질문: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교실은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요?

몬테소리 :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믿어야 해요.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낄 줄 알고 자기 잘못을 고쳐 나갈 줄 아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끄러운 교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한 가지 놀이를 통해 조용히 하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일종의 침묵 게임 같은 것이었지요.

한번은 4개월 된 여자 아기를 맡게 되었는데, 나는 이불 속에 포옥 싸여 새근새근 숨 쉬고 있는 그 아기에게 큰 감동을 받았지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췌! 이 아기의 숨소리를 좀 들어 보렴. 너희들은 아무도 이 아기만큼 조용히 숨 쉬지 못하겠지?”

순간 방 안 가득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어느새 스스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느낀 강한 침묵은 그들을 명상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결국 이 게임은 명상 훈련이라는 교과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을 통해 나는 이 침묵 게임이 높은 수준의 자제력과 사회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가르쳤던 거예요.

- 출처 : 유영소(2010). 여자가 세상을 바꾸다(세계편). 교학사

목표

- 인간으로서의 나, 그리고 유아교사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 인간으로서의 아동, 그리고 유아로서의 아동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한다.

구성:

〈표 13〉 1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회기	활동		목표	시간
나와 아동, 교사와 유아	A	나와 아동	나와 아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선구자들의 지혜의 글을 통해 아동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배운다.	30분
	B	유아교사로서의 나	유아교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재정립해본다.	30분

[모듈 1] 1-A. 나와 아동

● 활동목표

- ◆ 나는 누구인가?, 아동은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 성찰해 본다.
- ◆ 나와 아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 발표형

● 기대효과

-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 이고 인간으로서 ‘아동은 누구’ 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반 위에 나와 아동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됨을 교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준비물

- A4지 1장(인원수대로)
- 필기/그림도구(인원수대로)
- 테이프
- 칠판

● 진행방법

- A4지를 반으로 자른다.
- 아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각 5분 이내)
 - ✓ 질문1. 나는 누구인가?

✓ 질문2. 아동은 누구인가?

- 각자 책상위에 준비된 용지 2장에 각각 ‘나’ 는 누구인지, 아동은 누구인지를 15자 이내의 글, 혹은 간단한 상징 및 그림으로 표현한다.(각 5분 이내)
- 각자 완성된 글/그림을 게시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 게시판에 붙인 ‘나’와 ‘아동’에 대한 결과물의 관계를 살펴본다.
- 진행자는 그 중에서 나와 아동의 관계 형성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 참가자들의 글 혹은 상징을 선택한다.
- 진행자는 선택된 글/그림을 통해 이 활동의 의도(나와 아동의 이상적 관계)와 목표를 설명한다.
- 진행자는 레바논의 철학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아이들에 대하여’를 함께 읽고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예) 질문에 대한 답	
나는 누구인가?	아동은 누구인가?
• 나는 꿈을 찾고 그 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 • 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 사회의 질서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격적인 존재 • 나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자이다	•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호하는 앞으로의 세상에 필요한 존재(꿈나무) • 어른의 축소판 • 아동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나라날 수 있는, 있어야 하는 존재 • 내가 없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존재

● Tip

- 본 활동에서 제시되는 ‘나는 누구인가?’ ‘아동은 누구인가?’ 등의 존재론적 질문은 참가자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질문을 접하는 일도 거의 없고,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하루의 일과가 벅찬 것이 현장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는 23세 미혼 여자’ 혹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 ‘경력 2년차 교사’ 등 피상적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 너, 교사, 아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본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진행자는 자신의 존재론적 답변은 어떤 것인지 등 참가자의 생각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나’와 ‘아동’에 대한 생각을 각각 다른 종이에 표현하게 한다.
-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글, 그림 또는 상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격려한다.
- 마무리 글(‘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은 진행자가 아동의 존재를 잘 표현한 다른 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예) 야누슈 코츠작 의 ‘아이들’

● 참고할 텍스트

- ‘존재에 대하여’
- ‘선구자들의 아동관’

[모듈 1] 1-B. 유아교사로서의 나

● 활동목표

- ◆ 유아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유아교사로서 나의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고 글, 그림 혹은 상징으로 표현해 본다.
- ◆ 유아교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을 재정립해본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 토론형

● 기대효과

- 유아교사의 직업관, 지식, 기술, 태도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유아교사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하는 인격체에 대해 생각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선언을 한다.

● 준비물

- A4지 1장(인원수대로)
- 필기/그림도구(인원수대로)
- 테이프
- 철판

● 진행방법

- A4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 아래의 제시된 질문을 택한다.
- 주어진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준비된 용지에 15자 이내의 글, 혹은 간단한

상징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 완성된 글/그림들을 게시판에 서로 나란히 붙인다.
-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사와 아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질문〉

- ✓ 질문1. 유아교사인 나는 무엇인가? 왜 유아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였나? 나의 꿈은? 나의 사명은? 나의 비전은?
- ✓ 질문2. 내가 현재 돌보고 있는 유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특성을 가졌나?
- ✓ 질문3. 유아교사로서의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아교사로서 내가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 ✓ 질문4.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는가?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가? 그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기억에 남는가?

● Tip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진행자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참가자들의 질문 및 피드백을 받는다.
- 진행자는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자료 중 ‘의무이행자, 교사’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 참고할 텍스트

-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사’

목표

- 아동에게 있어 아동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아동기와 아동인권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 아동기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 교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

구성:

〈표 14〉 2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회기	활동		목표	시간
아동기와 아동존중	A	아동기	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역사 속 아동기와 아동관을 배운다.	60분
	B	아동기와 아동 존중	아동기를 위해서는 아동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60분

[모듈 1] 2-A. 아동기

● 활동목표

- ◆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서로 나눔으로써 긍정적 아동기의 중요성을 인식 한다
- ◆ 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 ◆ 역사 속 아동기와 아동관을 배우고 자신의 아동관을 살펴본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개인, 혼합형(발표형, 강의형)

● 기대효과

- 아동기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아동관을 점검하고 긍정적 아동관을 형성할 수 있다.

● 준비물

- A4지(인원수대로)
- 필기도구(인원수대로)

● 진행방법

〈활동1: 아동기 경험 나누기〉

-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동기 중에서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을 글 또는 그림으로 A4지에 표현한다.

좋은 추억 : 가족과 보냈던 시간들, 자유롭고 풍족한 환경과 자연

(예) - 가족 모두가 강에 낚시 갔던 일이 기억난다. 텐트, 강, 낚시하는 아버지, 음식하는 엄마, 동생의 모습이 사진처럼 기억에 남는다.

- 아빠가 업어 주었던 일, 맛있는 것을 가족과 함께 먹었던 일 등

나쁜 추억 :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예) -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해서 처음 학교 갔던 날이 생각난다. 전학 간 첫날 혼자 교실까지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교실 밖에서 서성이다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갔다. 엄마, 할머니에게 매우 혼났었다.

- 할머니가 나를 오해하여 억울했던 일,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일 등

- 참가자들은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긍정적/부정적 사건의 유사성이 무엇인지 또 그 경험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이유에 대해 참가자들이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촉진한다.

〈활동2: 강의〉

- 진행자는 아동기와 아동관의 변화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현재 우리의 아동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Tip

- 본 활동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유아기의 경험을 위주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
- 권리보호를 위해 Bad사건은 가능한 예방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 진행자는 지금 우리의 아동관을 확인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참가자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진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참고할 텍스트

- ‘아동기란 무엇일까?’

[모듈 1] 2-B. 아동기와 아동존중

● 활동목표

- ◆ 아동이기 때문에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그룹,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
- 아동인권은 협력을 통해 지킬 수 있음을 배운다.
- 아동의 인권이 쉽게 무시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은 인권의 주체임을 알게 된다.

● 준비물

- 행동지시문
- 신문 사설 혹은 기사
- 동화책 ‘지혜로운 꼬마원님’
 - ✓ 동영상 꼬마원님의 피 1편 (주니어 네이버 - 동화여행)
 - ✓ <http://study.jr.naver.com/donghwa/view.nhn?donghwaNo=403&categoryId=3&ageType=ALL>
 - ✓ 동영상 꼬마원님의 피 2편: (주니어 네이버 - 동화여행)
 - ✓ <http://study.jr.naver.com/donghwa/view.nhn?donghwaNo=402&categoryId=3&ageType=ALL>

ageType=ALL

● 진행방법

〈활동1: 존중이란?〉

- 진행자는 참가자들 중에 한사람을 앞으로 불러서 준비한 신문기사/사설을 건네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크게 읽어주도록 한다.
- 진행자는 앞으로 나온 참가자가 발표를 하는 도중 참가자 뒤쪽으로 가서, 참가자가 안보이게끔 다른 참가자들에게 행동지시문을 보여주며 그 행동을 따르게 한다.

〈행동지시문의 예〉

- ▶ 손가락질 하며 크게 웃으세요.
- ▶ 다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세요.
- ▶ 의자에 모두 일어서서 발표자를 내려다보세요.
- ▶ 다 엎드려 자는 척 하세요
- ▶ 하품을 하세요.
- ▶ 더 크게 읽으라고 소리치세요.
- ▶ 기타

〈예〉

나영이가 어려운 한문이 섞인 글을 읽는데, 진행자는 등 뒤에서 ‘크게 웃으세요!’라는 지시문 종이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어, 나영이가 발표하는 도중 크게 웃도록 한다.

- 참가자가 지문을 다 읽으면 사람들의 반응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과 함께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할 때의 감정 상태와 느낌을 공유해 보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경청과 존중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도록 한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이러한 존중과 경청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아래의 상황을 이야기 한다.

〈상황〉

“작은 꼬마가 ‘에이 짜증나!’ 하며 씹씹거리며 걸어가는게 얼마나 귀엽고 우스운지 몰라요.” 귀엽고 작은 아이가 그렇게 심각한 감정을 표현한다니, 그 대조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빙그레 웃을게 뻔하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만약 당신이 화가 난 아내나 남편, 직장동료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 출처: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p35

- 위의 상황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감정이나 상황 혹은 발달 상태를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활동2: 전래동화 통한 아동존중 배우기〉

- 진행자는 “지혜로운 꼬마원님” 이야기를 들려준다(글 혹은 동영상).
- 위의 이야기를 통해 유아를 성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Tip

- 활동지시문에 따라 활동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
- 행동지시문은 진행자가 교육환경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종이, PPT, 칠판 등)

● 참고할 텍스트

- ‘아동존중에 대하여’

꼬마원님의 껌 1, 2편(주니어네이버)	줄거리
 꼬마원님의 껌 (1편)	꼬마 원님의 껌 (지혜로운 꼬마 원님)
 열 세 살 밖에 안 되는 어린 원님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13살 밖에 안 되는 어린 원님이 있었다.
 원님의 나이가 어리다고 이방들이 어찌나 비아냥거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님의 나이가 어리다고 이방들이 원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다.



이방은 나이 어린 원님을 시험해 보려고 마을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할 판결을 부탁드렸다.



원님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서 이방은 속으로 놀랐지만 여전히 어린 원님을 깔보는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어느 가을 날, 원님은 이방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일 년 중 제일 크게 자라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방은 ‘수수깡’이라고 대답했다.



원님은 이방에게 수수깁을 꺾지 않고 소매 속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방은 도저히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원님은 이방에게 “일 년 자란 수수깁도 소매 속에 못 넣는 놈이 어찌 13 년이나 자란 나를 품에 넣으려 하느냐!”라고 호되게 말했다.



이후 이방과 아전들은 어린 원님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한다.

제2장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2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나오게 된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통해 아동인권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아동인권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들을 배우고 아동인권을 모니터링 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본다. 회기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5〉 2장의 구성(3, 4회기)

교육자료 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이란 무엇인가?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아동인권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아동권리의 4개 기본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회기	3. 아동인권과 배경	A. 아동인권(Wants and Needs)
		B. 아동인권의 배경과 역사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	A.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
		B. 유엔아동권리위원회
		C. 아동인권퀴즈

교육자료 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일상생활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권리, 혹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듣는 일이 빈번해졌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동네 골목 어귀의 아이들도 권리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권리, 혹은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서는 인권을 국적, 거주 장소, 성별, 국적/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그리고 서로 다른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 즉 인권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진다.

첫째로 인권은 보편성의 원칙을 갖는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늘 적용된다. 어떠한 지도자도 자신들에게 다른 나라와 다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인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인권은 포기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권리는 빼앗거나 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 권리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인권의 상호불가분성). 각각의 권리는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肢體) 같은 것이다. 선별적으로 어떤 권리는 택하고, 다른 권리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권리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건강할 권리의 침해와 연관되는 것이다.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가끔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은 아동이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받고,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는 것 역시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성인이 아동을 위해 베푸는 혜택이 아닌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다.

많은 사회에서 아동은 단지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의사결정에서 소외된다. 아동이 가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성인이 다른 성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로 기소된다. 이러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온 사회가 주목하고, 근절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성인(예를 들면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한 폭력행위는 묵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의 성인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 존중과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인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동인권이란?

아동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아동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권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 아동인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인권은 아동을 위한 인권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前文)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추구한 핵심 가치는 생명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의 등이다. 일부 사람들은 인권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아동을 위한 권리를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인권은 실제로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아동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쉽게 차별에 처하게 되는 특성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권리가 강조되는 것이다.

아동은 전통적으로 부모의 소유로 생각되어 왔다. 아동은 사회적 관점에 따라 불공평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이것이 특별히 아동의 인권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다루고 있는 이유이다.

인권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법을 통해 설명될 수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며, 개별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를 인정한 국제법이다. 아동인권에 관하여 국제적 합의를 이룬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 최초의 아동권리선언(1923)과 아동권리제네바선언(1924)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태동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1923년 영국에서는 에글랜타인 켄(Eglantyne Jebb)에 의해 아동권리와 보호에 관한 5가지 원칙을 규정한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작성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the Nations)에서 이를 ‘아동권리제네바선언’으로 채택하게 된다.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아동의 보호, 재난 시 우선적 아동 구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보호, 아동의 재능개발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양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인숙·오선영·송수진·정필현, 2004).

그 외에도 1920년대에 있었던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살펴보면 한국의 소파 방정환은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어린이공약3장’을 선포하였다.

❖ 국제연합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문(1948) 채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기초가 된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국제인권법의 법적, 개념적 기초를 세우는데 초석이 된다. 그 후 1948년 12월 10일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전문(前文)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최초의 인권에 대한 합의이자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권을 채택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세계인권선언문은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국 헌법의 실재적인 기초가 되었고, 참여민

주주의의 출발이자 NGO의 탄생 배경이 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된다.

❖ 10개 조항으로 확대된 유엔아동권리선언(1959)발표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는 1924년에 채택한 제네바아동권리선언문보다 5개 조항이 많은 10개 원칙을 수록한 아동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는 비차별, 아동발달을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이름, 국적, 사회 안정을 누릴 시민적 권리,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보호권, 아동 최우선 보호 및 구호 등의 원칙과 방임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권이 강조되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채택

1948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으로 출발한 세계인권선언문은 1966년 두 개의 국제규약으로 재구성되는데 ‘자유권’이라고도 칭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사회권’이라고도 칭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이 규약들은 아동이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고용 허용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973) 채택

국제노동기구(ILO)는 1973년 고용 허용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제 138호를 채택했다. 이 협약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 도덕적 가치를 해칠 수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했다.

❖ 여성차별금지협약(1979) 채택

유엔총회는 여성과 여자 아동을 위한 인권보호협약인 여성차별금지협약을 채택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채택

10년에 걸친 아동권리협약 기초 수립 과정을 거친 후 1989년 11월 20일 유엔 제 44차 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90년 1월 26일에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징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며, 개별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를 인정한 국제법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이 채택되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18세 미만의 모든 이를 아동이라 정의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최초의 인권협약이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국가(193개국)가 비준한 인권조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매우 포괄적인 협약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아동의 정의를 협약 제1조에서 ‘국제적으로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41개의 조항들은 아동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그리고 특별 보호를 위한 권리를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은 어떠한 차별이나 억압 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아동은 교육, 주거, 건강 등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마땅히 보장 받을 권리의 주체자이며, 아동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착취 또는 가혹한 사법제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고, 고려해야 할 목소리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약속한 193개 당사국들의 협약이행 상황을 심의 하는 국제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8개 범주를 정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이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에 대한 이행상황을 먼저 점검한다.

일반원칙은 협약의 기본가치가 되는 4개의 원칙으로 ‘비차별의 원칙’(협약 제2조),

‘아동최상이익의 원칙’(협약 제3조),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협약 제6조),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협약 제12조)을 말한다. 4개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차별의 원칙(2조):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

아동최상이익의 원칙²⁴⁾(제3조): 당국이 취하는 모든 과정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과정이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과 사법적, 행정적 절차까지 의미한다.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당국은 생명, 생존과 발달을 위해 최대한의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생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제12조): 아동의 자유로운 참여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칙이며,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까지도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국제적 약속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前文)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의 전문은 아동권리의 기본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제1부는 제1조에서 제41조로 당사국의 실질적인 의무규정(Substantive Provision)을 담고 있다. 제1부의 모든 조항들은 아동인권에 관한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이행조치 규정(Implementation and Monitoring)으로 당사국이 협약을 널리 알리고 실천할 뿐 아니라 이행상황을 감독하

24)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은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여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사항과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각 정부로부터 받은 협약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역시 2부에 명시되어 있다. 제3부는 부칙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절차 등 행정적 사항들이 포함된다(제46조~제54조).

아동권리의 4개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는 아동권리는 4개의 기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4개의 기본권은 생존권(Survival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발달권(Development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으로 협약의 제1조부터 제4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4개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각각의 조항들이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4개의 기본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가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있고, 상호의존/상호보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생존권에 포함된 조항이 발달권에, 혹은 보호권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보호권에 침해가 올 때 아동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동시에 발달권, 참여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존권과 보호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있어서 한 개의 조항이 두 개의 기본권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여러 조항에서 발견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4개의 기본권이 모두 상호연관성을 가지지만 발달권과 참여권은 상당히 깊이 연계 되어있다. 결국 아동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 생존권

생존권은 아동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권리가 보호, 충족, 존중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협약의 여러 조항들이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동의 적절한 건강관리와 의료혜택, 위생, 영양, 사고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으로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가 생존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제6조와 제24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기준을 함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위의 제6조와 제24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동은 생명을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과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약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어떠한 경우의 차별 없이 생존권이 보호, 존중,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아동들이 모두 다 생존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어떤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기본권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지 생각해보자. 가뭄과 기근, 홍수와 지진, 전쟁, 질병과 전염병, 노동착취, 환경파괴 등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3세계 국가의 아동들을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제3세계 국가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채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고통 받는 아이들이나 오랜 가뭄으로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해 영양실조와 질병에 노출된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 역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아이들은 생존권 뿐 아니라 보호, 발달, 참여 등 다른 영역의 권리 역시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아동들이 생존권의 위협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을까? 생존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들은 빈곤한 가정에서 부모의 적

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아동들의 영양, 보건, 의료의 문제를 염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거리에서 앵벌이에 이용당하는 아동, 노동하는 아동,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 가정폭력/학대에 노출된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다문화아동, 장애아동, 영·유아기 아동을 생각할 수 있다. 생존을 위협받는 아동의 범주 속에 영·유아기 아동들이 포함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유아기 아동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동시에 너무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vulnerable) 존재이다.

협약 제5조²⁵⁾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며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존재(evolutionary capacity)²⁶⁾’인데 유아기의 아동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시기(critical period)에 놓여있다. 유아기 아동이 그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 능력 있는 시민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의 생존의 문제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영유아기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아동기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유아기의 생존권 보장은 유아교사들에게 있어서 보육이나 학습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숙지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협약에서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읽고 숙지하게 되면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4개의 기본권 중 두 번째는 아동의 보호권이다. 보호권은 생존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보호권의 보장과 충족에 실패하면 아동의

2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조 :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26) **Evolving Capacity**(발달능력: 아동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아동은 항상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능력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지도 할 것을 협약의 제5조에 명시되어있다. 이것은 국제 인권조약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은 계속 변화는 과정에 있으므로 그들의 발달에 맞추라는 의미로 아동이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될수록 이들에 대한 지시의 필요성은 적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은 커지며, 능력의 획득은 다양한 삶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실현되는 권리의 특성에 따라서 아동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의사결정 영역 하에서 다양한 수준의 보호, 참여, 자율성의 기회를 필요로 한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명시하는 보호권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차별로 부터의 보호’이다. 이는 협약 제2조에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제2조 외에도 제7조, 제23조, 제30조에서 국적에 대한 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 소수 민족 혹은 원주민 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하며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대와 각종 착취로부터의 보호’이다. 이는 협약 제19조에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호,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학대와 각종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항은 제19조와 함께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가 포함 된다. 특히 제35조에서는 아동의 매매, 유괴로 부터의 보호를, 제34조에서는 아동의 성적 착취로 부터의 보호를 규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이다.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한 3개 범주의 세 번째인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하여 제22조 난민아동과 제38조 전쟁, 분쟁 등 무력분쟁지역의 아동 외에도 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25조 양육지정조치 아동의 정기적인 심사, 제39조 재활 혜택 등 특별보호조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

1.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8조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권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 학대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노동, 성폭력 및 착취 등 아동

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충족되고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유아기 아동은 매우 활동적이고 어떤 위험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는 발달 단계에 있는 시기이므로 보호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유아기 아동의 보호권 보장은 절대적이다.

❖ 발달권

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중 세 번째는 아동의 발달권이다. 발달권은 정규, 비정규 교육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교육은 물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협약에서 이러한 발달권을 제27조와 제28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해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학교는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은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정규 및 비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도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항을 보장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와 자료 접근권(제17조), 놀이와 오락 및 문화 활동(제31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4조), 개인의 발달(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정체성, 국적, 성명 등(제6조), 건강과 신체의 발달(제24조), 표현의 권리(제12조, 제13조), 가족 등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이 제공되고 보장(제9조, 제10조, 제11조)될 수 있도록 협약이 명시

하고 있다.

위의 조항들에 명시된 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 여가와 오락을 즐기고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정보에 접근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됨으로 아동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발달권 보장의 목표이다.

❖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개의 기본권 중 네 번째인 아동의 참여권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아동의 문제에 대하여 아동 자신들이 더욱 잘 알고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의 존재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했기에 많은 경우 아동이 무시되거나 아동의 의견이 들리지 않았다. 협약은 제12조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협약 제12조의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권’과 함께 협약 제13조 역시 정보를 얻을 권리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17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와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제18조에서는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본적 관심에 두도록 명시하며, 제18조 3항에서는 취업 부모의 아동들이 자격 있는 아동보호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 그것이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아동에 대하여는 어른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어른의 생각이 아동의 생각보다 올바르기 때문에 어른이 결정하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어른이 내린 결정을 아동들에게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아동관이 바뀌고 아동을 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지면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비록 지금은 미숙하다 해도, 그래서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을 통하여 배우며 더욱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지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인 것이다. 과거에는 아동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기에, 참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청소년기의 아동들은 지금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도, 그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아동의 인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기가 어릴 때 일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된다는 것이다. 유아교사들은 아동의 참여권 신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습득하고 모방하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유아들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실수에 대한 문제해결도 함께 해 나가는 인권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묻고, 들어주고, 설명하고, 확인하는 소통의 장을 통해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과정으로 시작하여 유아의 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상사나 동료들과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풀어나가는 문화 환경이 조성 되면 협약이 명시 하고 있는 아동의 참여권이 보호되고, 충족되고 존중 되리라 생각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이다. 위원회는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비준국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에 대한 권고 및 최종권해를 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또한 국가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특성과 욕구의 다양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협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아동 중심적 맥락에서 협약을 해석하며, 이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기도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²⁷⁾

2000년 5월 25일 유엔 총회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가지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첫 번째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로, 2002년 1월 18일 발효되었으며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형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OPSC는 국가들이 희생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예방, 사회 복귀,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선택 의정서는 2002년 2월 12일 발효된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로, 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하였다. OPAC는 정부의 18세 미만 아동 강제 징집 및 기타 무력 집단의 18세 미만 아동 징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12월 19일 유엔 총회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세 번째 선택의정서인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이후 OPCP)를 채택되었다. OPCP는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 절차에 의해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국제기구에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인청원권제도로 2012년 3월 현재 비준과 발효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국제조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당사국이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과정과 정책 수립 그리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하여 정부(당사국), 유엔기구, 민간단체(NGO) 등과 함께 아동을 포함 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27) 인권 조약들은 때때로 선택의정서가 따라온다. 선택의정서는 조약에 관한 절차를 제공하거나 조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며, 회원국의 서명, 비준과 가입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whatis.htm>)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2004년에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1차, 2차와 3/4 통합보고서까지 총 3번의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 받은 심의는 2011년 9월에 있었던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심의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결과인 최종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할 수 있다²⁸⁾. 구체적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 ▶ 유보조항: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제9조 3항)’, ‘입양허가제(제21조 a항)’,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 1991년 12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발효
- 1994년 11월. 제1차 정부보고서 제출
- 1995년 7월. 제1차 민간보고서 제출
- 2000년 5월. 제2차 정부보고서 제출
 - ▶ 3개 유보조항 철회 못함
- 2002년 6월. 제2차 민간보고서 제출
-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으로 한국 최초 성균관대학교 이양희교수 선출
- 2004년 10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비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 2007년. 이양희교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 2007년 11월. 두 개의 선택의정서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 2007년 12월.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
- 2008년 10월. 3개 유보조항 중 부모면접교섭권 철회
- 2009년 5월. 협약이행 제 3/4차 정부보고서 제출
- 2010년 12월. 제3/4차 민간보고서 제출
- 2011년 9월. 제3/4차 한국 심의

2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http://www.moh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6&BOARD_ID=1003&BOARD_FLAG=06&CONT_SEQ=262129&page=1

목표

- 아동의 인권이 무엇인지 배우고 설명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통해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구성:

〈표 16〉 3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회기	활동		목표	시간
아동인권과 배경	A	아동인권(Wants and Needs)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활동을 통해 배운다.	30분
	B	아동인권의 배경과 역사	아동인권이 나오게 된 역사와 배경을 배운다.	30분

[모듈 2] 3-A. 아동인권(Wants & Needs)

● 활동목표

- ◆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언어로 정의 내리기 전에 활동을 통해 배워본다.
- ◆ 원하는 것(Wants)과 필요한 것(Needs)의 차이를 알고 이를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그룹, 활동형

● 기대효과

- 교육 참가자들이 ‘아동의 인권’을 이해하고, 아동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아동인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준비물

- Wants & Needs 카드 묶음(20장) : 그룹(5~6명)당 카드 1세트 씩
- A4지(그룹수대로)
- 필기도구(그룹수대로)

● 진행방법

- 소그룹(5~6명)으로 모둠을 만든다.
- 각 그룹에게 20장 그림카드를 한 묶음씩 나누어준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알려주며 지시에 따라 카드 게임을 하도록 진행한다.

〈카드 지시 사항〉

1. 책상 위에 20장의 카드를 펼쳐 놓고 아동에게 필요한 것과 아동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2. 20장의 카드 외에 아동이 더 원하는 것 또는 아동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가지(주어진 카드에 없는 것)를 그림카드와 같은 크기의 빈 종이에 그려보자. 이제 20개의 카드는 24개의 카드로 늘어난다.
3. 현재 아동은 만들어진 카드 24가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갑자기 홍수와 지진 발생(자연재해)하여 8가지를 포기해야만 한다. 참가자들은 가지고 있는 24개의 카드 중 8가지를 버린다. 이제 카드는 24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다.
4. 자연재해에 이어 전쟁(인재)이 발생하여 아동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16개의 카드 중 8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재해가 겹친 상황에서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후의 순간까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8개의 카드를 골라보자. 이제 카드는 16개에서 8개로 줄었다.
5. 아동에게 없어서는 안 될 8가지의 것들이 마지막에 남게 된다.

- 각 그룹이 마지막까지 남긴 8개의 그림카드를 게시판에 붙인다.
-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붙인 8개의 카드를 다른 그룹의 것과 비교하고 검토여 본다.
- 진행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토론을 촉진하고 이를 비교하고 검토해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질문〉

- ▶ 질문1.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 ▶ 질문2. 모든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 Tip

- 진행자는 각 참가자가 원하는 것(Wants)과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Needs)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필요한 것(Needs)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권리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다.

반면, 원하는 것(Wants)로 분류된 일부 항목은 특정 상황에서 권리로 요구될 수 있다. 예) TV나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은 정보 수집이나 공유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 진행자는 아동의 권리란 무엇지, 어떻게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충족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NEEDS	WANTS
▶ 깨끗한 공기(제24조) ▶ 깨끗한 물(제24조) ▶ 가족과 편안한 집(제27조) ▶ 교육(제28조, 제29조) ▶ 생각을 말하고 들어줄 기회(제12조) ▶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제24조) ▶ 영양가 있는 음식(제24조) ▶ 놀이(제31조) ▶ 종교, 문화, 언어(제30조) ▶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제19조) ▶ 차별로부터의 보호(제2조)	▶ 자전거 ▶ 멋지고 좋은 옷 ▶ 패스트푸드 ▶ 여행과 휴가 ▶ 원하는 만큼의 돈 ▶ 컴퓨터 ▶ 핸드폰 ▶ 텔레비전 ▶ 나만이 쓸 수 있는 방(단,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생각할 경우 제16조)
〈읽을거리〉 아동에게 필요한 것(Needs)과 아동이 원하는 것(Wants) 아동에게 인권을 설명하고, 인권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질문하면, 돈이나 게임기 등을 이야기한다. 아동에게 인권을 설명할 때 원하는 것(Wants)과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Needs)의 차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것(Needs)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과 보호, 발달, 교육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다. 반면, 원하는 것(Wants)은 생존, 발달 교육 등 1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으로 분류할 때는 처해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목생활을 하는 소수민족의 아이들에게 TV나 이동통신 수단은 교육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정보접근이 정부에 의해 차단된 일부 국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은 정보수집이나 공유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참고할 텍스트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 ‘아동인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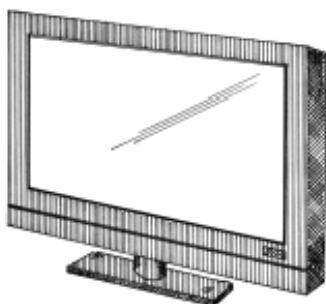
〈Wants and Needs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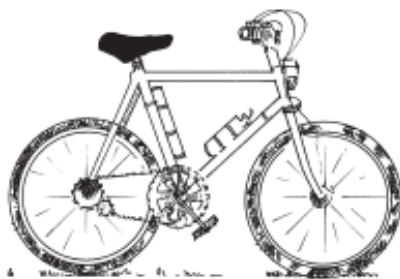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물



텔레비전



자전거



생각을 말하고 들어줄 기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곳



나만이 쓸 수 있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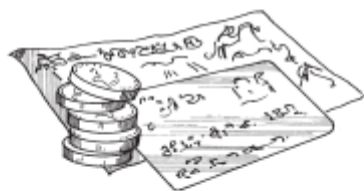
패스트푸드



차별로부터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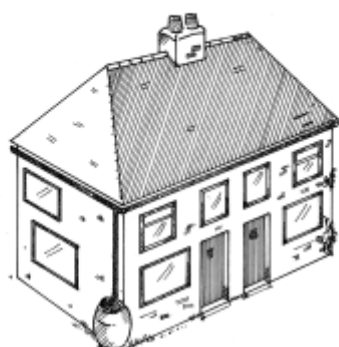
교육



원하는 만큼의 돈



휴가



가족과 편안한 집



종교, 문화, 언어



컴퓨터



멋지고 좋은 옷



깨끗한 공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



핸드폰



놀이

[모듈 2] 3-B. 아동인권의 배경과 역사

● 활동목표

-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이해한다.
- ◆ 역사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 강의형

● 기대효과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력을 돕는다.
- 다른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동인권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었음을 배운다.
- 세계인권선언문이 있음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생기게 된 의미를 통해 아동인권이 가진 특별함을 인식할 수 있다.

● 진행방법

- 진행자는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인권선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이유와 중요성을 설명한다.
- 진행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역사적 흐름을 강의 한다.
- 진행자는 역사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 강의 한다.

● Tip

- 진행자는 아동 인권이 서양에서만 다루었던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동시대에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다루었음을 이야기하고, 아동 인권이 전 세계 보편적인 내용임을 알려 준다.

● 참고할 텍스트

- ‘아동인권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 ‘선구자들의 아동관’

목표

- 아동의 인권을 규명해 주는 국제적인 약속들,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 등에 대해 배우고 이해한다.
- 본 회기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이해한 지식과 정보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구성:

〈표 17〉 4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회기	활동	목표	시간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위원회	A 유엔아동 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협약의 구성과 기본권, 일반원칙을 배운다.	50분
	B 유엔아동 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체계를 이해하고 배운다.	30분
	C 아동인권 퀴즈	아동인권의 전반적 이해도를 점검한다.	30분

[모듈 2] 4-A. 유엔아동권리협약

● 활동목표

- ◆ 아동인권의 준거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협약의 구성과 기본권, 일반원칙을 배운다.

● 소요시간

- 5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활동형, 강의형)

● 기대효과

- 참가자들은 아동의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아동인권의 준거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협약, 선택의정서)과 기본권, 일반원칙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준비물

- 조항카드(Cluster Card): 그룹 당 1세트 씩
- A4지(그룹수대로)
- 필기도구(그룹수대로)
- 테이프
- 유엔아동권리협약

● 진행방법

- 소그룹(5-6명)을 만든다.
- 아동권리의 4개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한다.

- 각 그룹에게 조항카드 세트를 나누어 준다.
- 각 그룹의 참가자들은 조항카드를 4개의 기본권으로 분류한다.
- 각 그룹은 4개의 기본권에 따라 분류한 카드를 A4지에 적고 게시판에 붙인다.
- 참가자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이 분류한 것과 다른 그룹이 분류한 것의 차이를 알아보고,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설명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준다.
- 진행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설명하고, 협약의 일반원칙과 4개의 기본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강의한다.

● Tip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조항카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분류되지 않음에 혼란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보편성의 원칙, 상호불가분의 원칙, 상호의존의 원칙, 상호연관의 원칙)에 대해 필요에 따라 설명해준다.
- 제시된 조항카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추가 활동으로 카드에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할 것을 권장한다.
- 본 활동에 앞서 진행자는 참가자의 유엔(UN)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필요 시 유엔의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 할 수 있다.

● 참고할 텍스트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아동인권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 ‘아동권리의 4개 기본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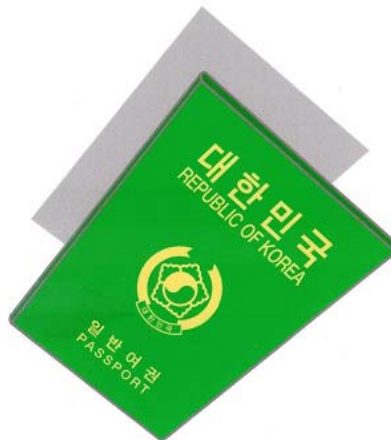
제 2조 :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제 5조 :
부모는 우리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데 책임이 있다.



제 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 7조 :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

국가는 우리의 이름과 국적,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제 9조 :

우리는 부모와 헤어진 경우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날 권리가 있다.



제 10조 :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 11조 :

우리가 유괴를 당할 경우 부모와 국가는 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 12조 :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일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한다.



제 13조 :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얻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생각을 알릴 권리가 있다.



제 14조 :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15조 :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제 16조 :

아동의 개인생활, 가족생활, 가정생활, 편지 교환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 17조 :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 18조 :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는데 책임이 있다. 국가는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19조 :

누구도 우리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를 다치게 할 권리는 없다.



제 20조 :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1조 :

우리가 입양되어질 경우,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제 22조 :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단체나 나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3조 :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4조 :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5조 :

국가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곳에 아동을 수용하는 경우 규칙적으로 그 수용 시설을 평가해야 한다.



제 26조 :

아동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 안정장치로부터 혜택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조 :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 28조 :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중등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제 29조 :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들은 자유로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제 32조 :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제 33조 :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 술, 담배 등의 약물을 만들고 파는 일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제 34조 :

우리는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또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을 말하게 할 수 없다.



제 35조 :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모듈 2] 4-B.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활동목표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체계를 이해하고 배운다.
- ◆ 한국의 아동권리 이행 상황이 어떠한지 배워본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 혼합형(강의형, 토론형)

● 기대효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움으로써 아동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 강의자료

● 진행방법

- 진행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강의를 한다.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해 본다.
- 진행자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이 배운 내용을 습득 정도를 확인한다.
- 진행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다음 회기에서 이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을 설명한다.

● Tip

- 본 활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모듈2의 4-A)의 활동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진행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뿐 아니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상담, 진정, 민원접수의 방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²⁹⁾.

● 참고할 텍스트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29)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humanrights.go.kr/01_sub/body02.jsp

[모듈 2] 4-C. 아동인권 퀴즈

● 활동목표

- ◆ 퀴즈를 통해 아동인권의 전반적 이해도를 점검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 아동의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여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준비물

- 아동인권 퀴즈 문항
- 정답판(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 진행방법

- 모듈2의 3회기와 4회기 활동을 통해 배운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포괄하는 문제를 풀고 최종 승자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 최종적으로 배운 내용에 대한 요점정리를 한 후 종결한다.

● Tip

- 다수의 인원일 경우 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아동인권 퀴즈를 진행한다.
- 주어진 퀴즈문제 예시 외에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 활동을 진행한다.
- 소수의 인원일 경우에는 개인별 혹은 팀 대항전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지나친 정보위주의 퀴즈보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퀴즈 문항에 추가하길 권장한다. 예) 진행자의 이름, 교육 장소 등

● 참고할 텍스트

- ‘교육자료2.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반

퀴즈문제 예시

- 1)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나요? (답) 만18세
- 2)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의 이름은?
(답) 국제연합(UN)
- 3)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 간의 약속은 무엇인가?
(답) 유엔아동권리협약
-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위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
(답)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한 국가는 몇 개인가? (답) 193개국
- 6)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해는? (답) 1989년
- 7)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해는? (답) 1991년
- 8) 우리나라 출신의 유엔사무총장은 누구인가? (답) 반기문
- 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권은? (답) 생존, 보호, 발달, 참여
- 10)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는 모두 몇 개 인가요? (답) 3개
- 11) 왼쪽에는 인권의 종류가 제시되었고, 오른쪽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자
①생존권 ㉠부모가 아픈 자녀를 귀찮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②보호권 ㉡어머니는 적절한 시기에 아동의 소아마비를 치료하지 못했다.
③발달권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
④참여권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에게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물어보지 않았다.
- 12) T(참) 또는 F(거짓)로 표시하십시오
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② 학교는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입학을 거부 할 수 있다.()
③ 아동은 학교 성적에 근거하여 입학을 거부당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항상 남성과 여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장은 아동인권을 다룰 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행동이 무엇인지 배우고 아동의 안전, 보호, 교육, 놀이, 참여의 중요성을 배운다. 회기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8〉 3장의 구성(5, 6회기)

교육자료 3	주제별 아동인권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아동학대와 방임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유아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회기	5. 비차별의 원칙	A. 차별이란?
		B. 편견과 고정관념
		C. 동화에서 배우기
	6. 주제별 아동인권	A. 우리 기관 안전한가?
		B. 우리 아이 안전한가?
		C. 이게 아동학대라고요?
		D. 학대를 보는 눈, 보호하는 손
		E. 교육이란? 교육의 목표
		F.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G.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교육자료 3. 주제별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 충족,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유아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이 특별히 숙지하고 고려해야 할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각 주제는 ‘아동의 안전 사고와 유괴 납치 실종’, ‘아동학대와 방임’, ‘교육의 목표와 놀 권리’ 그리고 ‘아동의 참여증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아동의 권리가 보장 되지 않는 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면, 아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고, 따라서 아동복지는 이를 수 없다. 아동권리, 아동안전, 아동복지는 상호의존적이며,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은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이고 핵심요소이다. 국제사회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안전과 아동권리가 보호되고 충족 되고 존중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및 요구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 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직원의 수 및 적격성 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 하여야 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3항).

아동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를 통한 안전을 보장해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과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9조 에서는 아동은 부모에 의한 학대, 유기, 유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와 아동은 분리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와 유괴·납치·실종에 대한 국내 실태와 예방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04년 9.45명에서 2010년 4.88명으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의 3.7명이나 스웨덴의 2.7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³⁰⁾. 실종아동은 2005년 11,763명에서 2010년 24,09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의 유괴, 납치, 실종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아동안전사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아동이 원가정에서 이탈되면 안전한 양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며, 이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화 되는 심각성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5년 실종아동 문제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전화(182), 실종유괴아동 엠버경고시스템 등이 구축되면서 8세 이하 아동의 발견율은 99.95%로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 혹은 보호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하지만 발견율이 100%가 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인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므로 발견율 100%보다는 발생율 0%가 의미 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률제정과 정책수립, 보호대책도 필요하지만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 환경과 가정,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 사회의 관심과 환경 조성 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나 교사가 취해야 할 안전수칙이나 인식개선, 실천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체계가 갖추어진 대다수의 유아교육기관이라면 기관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비치하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점검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아래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반드시 안전수칙과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1&bbs=INDEX_001&clas_div=C&rootKey=1.48.0

31) 통계청 실종아동발생 및 처리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10

❖ 안전수칙 세우기

- ✓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내·외 장소와 장난감 등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실내·외 모든 시설과 교구 교재 등을 매일 점검한다.
- ✓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유아들과 함께 실습하고 화재 시 대피훈련도 규칙적으로 시행한다.
- ✓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이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놓는다.
- ✓ 긴급 상황 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정확한 연락처(보호자,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를 비치한다.
- ✓ 간단한 원외 활동이나 외출이라도 사전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 ✓ 약이나 기타 유아에게 위험요소가 되는 물질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 유아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위생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습관이 되게 한다(손, 치아, 환경 청결).
- ✓ 음식조리, 식품 저장, 식품관리, 유아의 식습관 훈련 등, 매사에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유아의 음식물 섭취직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 ✓ 부모가 유아에게 투약을 부탁할 시 의사나 약사가 처방한 약인 경우 글로 요청받아 시행한다(반드시 기록을 남긴다).
- ✓ 유아가 원에서 머무는 동안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사건 경위와 진전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고 부모 등원 시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기록해 둔 문서에 부모 확인을 받아둔다.
- ✓ 규칙적으로 비상약품 상자를 점검하여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나 비품이 제대로 구비되어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은 즉시 채워 넣는다.
- ✓ 유아나 유아의 부모, 가족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사적인 내용은 생명에 위해가 있지 않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 ✓ 유아를 혼자 두지 않는다. 특히 유아를 차에 남겨두고 볼 일을 보러가지 않아야 한다.

- ✓ 아동의 소지품에 이름을 크게 써 붙이지 않는다.
 - ✓ 교사는 아동의 신상(키, 몸무게, 혈액형, 신체의 특성 등)에 관한 최근 기록을 보관한다.
 - ✓ 전학이나 소풍 시, 길을 잃었을 때 만날 장소를 정해준다. 홀로 다니지 않고 반드시 짝지어 다니도록 정한다.
 - ✓ 부모와 교사는 항상 아동의 동태와 행선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아를 맡기지 않는다. 부모 외의 다른 사람이 아동을 귀가시킬 경우 부모와 연락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아동을 인계한다.
-
- ✓ 혹시 유아의 놀이 활동, 언어 사용, 행동에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될 경우 그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 ✓ 유아에게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증거를 얻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한다.
-
- ✓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하거나 체벌하지 않는다.
 - ✓ 유아와 이야기 할 때 존중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한다.
 - ✓ 늘 개방적인 자세로, 정직하게 대한다(‘비밀을 지키라’든지, ‘말하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는다.).
 - ✓ 유아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운다.
 - ✓ 교사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 등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배운다.
 - ✓ 교사는 안전사고와 실종예방을 위해 역할극, 놀이, 및 구체적 교구 등을 활용한 교육을 유아에게 제공한다.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예방 뿐 아니라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안전수칙과 지침을 수립하고, 점검하더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건, 위생, 납치, 유괴, 학대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아이가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즉 자존감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은 유아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교사는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 스스로가 자신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인 아동복지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제19조, 제20조의 두 개의 조항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제2조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20조는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의 보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전체 조항은 아래와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국내법인 아동복지법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한다. 이는 학대행위를 아동의 복지나 감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 범주를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더 나아가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포괄적 범주를 포함한 규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 그리고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 제6호)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³²⁾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

32) 아동학대의 유형과 구체적 행위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발췌 <http://korea1391.org>

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 행위로는 명,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물건을 던지거나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거나 발과 주먹으로 치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체학대의 내용과 구체적 행위는 아래의 표에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신체학대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 행위	• 명,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두 번째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원망적, 거부적, 경멸적 언어폭력뿐 아니라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와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정서학대	
내용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식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여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를 통한 정서학대의 예	• 양육 상의 문제 - 너를 키우느라 쓰고 싶은 돈도 마음대로 못 쓴다. - 너를 키우느라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한다. - 너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피곤해 죽겠다. - 너를 누가 대신 길러줬으면 좋겠다. • 아이에 대한 비난 - 너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다. - 너 때문에 집안일이 안된다. - 너 같은 건 정말 괜히 낳았다. • 다른 아이와 비교 -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정말 못났다.

	- 너보다 네 형제나 자매가 훨씬 더 낫다. • 아이에 대한 기대와 협박 - 네가 잘못되면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거다. -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조상 불 면복이 없다. - 네가 공부 못하면 키울 맛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 부모에 대한 불복종 -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굶겨 버리겠다. -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유치원에 다시 못 다니게 하겠다. - 부모 말 듣지 않으면 너를 어디다 팔아 버리겠다. - 부모 말 듣지 않으면 매로 때려주겠다.
--	---

세 번째 학대유형인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성학대	
내용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체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마지막 학대 유형인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방임은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치료적 방임으로 나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방임	
내용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	---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유아가 학대와 방임에 노출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금 당장의 안전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속히 발견하고, 학대에 노출된 유아의 긍정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를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징후	
신체학대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 담배불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 Shaken Baby Syndrome • 두뇌손상 • 사망 등

정서학대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언어장애
성학대	• 성적(性的) 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협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비행, 가출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늘 외톨이로 친한 친구가 없음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항문 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방임	• 물리적 방임 - 옷이 더럽고 악취가 난다. - 몸이 짓물러있고 욕창이 있다. - 머리 모습이 단정치 못하고 악취가 난다. 손톱 발톱이 너무 길다. - 힘이 없고 어지럽다고 자주 말한다. - 자주 배고프다고 말한다. - 간식이나 점심을 늘 더 달라고 한다. - 친구의 간식이나 점심을 빼앗아 먹는다. -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키가 작고 말랐다. -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체중이 적게 나간다. -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나있다 - 단정치 못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 옷과 신발이 더럽다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 너무 크거나 작은 옷을 입고 있다 - 우산과 모자를 제때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의료적 방임 - 충치가 많은 편이다. - 자주 눈이 충혈 되어 있다. - 항문이 가렵다고 말한다. - 자주 미열이 난다. - 배가 아프다고 자주 말한다. - 예방접종이 되어있지 않다.

	-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 감기에 자주 걸려있다. - 안색이 좋지 않고 헐쭉하다. - 자주 준다. - 어지럽고 힘이 없다고 자주 말하며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 도덕 및 교육적 방임 - 아무 연락도 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다. - 자주 지각한다. -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수업이 끝나도 가지 않고 서성거린다. - 욕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말한다. - 실수해도 아무 말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 돈이나 물건을 훔쳐 와도 내버려 둔다고 말한다. - 거짓말해도 내버려둔다고 말한다. • 정서적 방임 - 자주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자발적으로 활동하려하지 않는다. - 매사에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다 - 눈치를 많이 보거나, 깜짝 깜짝 놀란다. - 두리번두리번 거린다. - 교구나 장난감을 마구 집어 던지고 부순다. - 뚜렷한 이유 없이 친구들을 마구 때린다. -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하면 싸운다. - 시켜도 하지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친구들이 웃는데 웃지 않는다. - 대부분의 친구들이 슬피하는데 슬피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친구들이 끼리끼리 노는데도 혼자 있다. - 누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자주 말한다. - 차별대우 받고 있다고 말한다.
--	---

간혹 아동학대가 의심되더라도 남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기관과 교사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혹은 괜히 오해를 해서 아닐 경우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 미성숙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신고가 모두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경찰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후 사례를 판정하여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적절한 교육과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고소, 고발 및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더욱이 유아교사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비밀보장과 신분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교사는 아동발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유아와 오랜 시간 함께 할 뿐 아니라 보호자와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가정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동발달을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된 아동학대 발생요인과 앞서 언급된 아동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징후를 숙지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아동학대 발생 요인

■ 부모요인

- 부모의 미성숙
 - ✓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 지나친 기대
 - ✓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가진 능력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 잦은 가정의 위기

-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로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 정서적 욕구불만
 -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
- 사회적 고립
 - ✓ 아동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 ✓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 중 30~60%정도는 자신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다.
- 알코올중독 · 약물중독
 - ✓ 알코올중독 · 약물중독에 빠진 부모들은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 ✓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아동에 대한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체벌과 훈육을 혼동한다.
-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 원치 않는 아동
-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 아동요인

- 아동요인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래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특성:

- ✓ 미숙아, 기형아
- ✓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 ✓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 ✓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 ✓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 ✓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 ✓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 ✓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런 울음과 외모
- ✓ 수유의 어려움
- ✓ 분리 불안의 결함
- ✓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 ✓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센
- ✓ 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

■ 가정적·사회적 요인

- 가정적·사회적 요인은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되며, 이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 가족관계의 문제
 - ✓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하여 발생
- 가족구조의 문제
 - ✓ 미성년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가족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 ✓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의 존재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아동의 경청, 아동의 생각, 아동의 행동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혹시 아동이 어른의 말을 경청하기, 어른들이 한 말을 되새겨 생각해 보기, 어른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기라고 생각하였는가? 혹은 아동과 어른이 서로 경청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아동들의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 또는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때 ‘버릇없다’고 이야기 하곤 한다. 버릇이 없다는 것은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아이들에게 ‘버릇없다’, ‘건방지다’, ‘당돌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유아기의 부정적 경험은 자신을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유아의 참여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유아가 발달적으로 미성숙하여 유아 자신에게 더 의미 있고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의 의견표명은 훗날 성인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 버릇없는 아이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유아의 의견 존중과 참여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유아의 참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참여를 그들이 가진 권리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라는 존재가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시행착오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야하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지시자가 아니라 유아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조성해주고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아동의 참여 증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아동은 참여의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역량, 기술, 지적능력 등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다.

둘째로 아동은 참여를 통해 적절한 사회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다.

셋째로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참여의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부적절한 학대 등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넷째로 참여를 통해 아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

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나아가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섯째로 참여는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

결국 참여를 통한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고, 교사 스스로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진행방법과 과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사소한 것이고 허무맹랑하게 여겨지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여하려는 마음과 노력은 가치를 기억해야한다.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활동적이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유아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교육은 인간의 권리이다. 아동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아동은 인간적 존엄성과 아동인권이 존중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권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교육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 교육(accessible)을 제공받아야 하며(available),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acceptable), 변화하는 아동의 필요에 적절히 맞출 수 있는 교육(adaptable)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환경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동을 진정한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견 존중되고 반영되며,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진행될 때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은 이해, 평화, 관용, 남녀평등과 우정, 존중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장소와 과정이다. 아동 친화적인 교육환경은 차별 없이 그들의 특성과 의견이 존중되며, 자유롭게 탐구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일 것이다.

모든 아동은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법적 준거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독립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지닌 아동을 존중하는 철학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법적인 준거이자 이러한 특성들을 지닌 아동들을 존중하는 철학적 의미 또한 내포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전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반영 되어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학습 위주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인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에게 부과되는 학습 양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한국의 교육현장은 아동발달이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의 통합을 이루어 전인적 인격체를 목표로 하는 교육에 거의 상반된 교육 환경이다.

학습위주의 교육풍토와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교사는 자신이 가진 교육철학과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교육관을 굳건히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아기 아동을 맡아 교육하는 유아교사들의 책임은 막중 하다. 유아기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이며, 대부분의 습관이 습득되고, 신체 · 정서 · 인지 · 사회성 발달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아동인권 교육이 시작되는 가장 적절한 연령으로 유아기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유아기의 특성과 중요성 때문이다.

학습위주와 선행학습을 중요시 하는 교육 환경은 유아교육 현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역시 한국의 경쟁적 교육 환경의 영향으로, 영·유아기 자녀에게 까지 입시와 관련된 지식의 선행학습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

국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짐작했는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여가, 놀이,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아동의 권리다’라고 말하면 이해 못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놀이는 아동발달에 있어 절대적 가치를 지닌,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 받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 국가는 아동을 놀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강요된 학습은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으며, 유아들이 놀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놀이를 통하여 유아는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즐기기도 하지만 다툼과 갈등을 겪으며 화해 능력이나 상호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을 경험하면서 성숙 해 간다.

우리는 노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은 놀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의 눈을 피해 놀이를 해야 하고, 놀다 들어가면 벌을 받거나 꾸중을 듣는다는 생각에 놀아도 불안하다. 그러나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인지, 정서, 사회, 신체적 발달 등 총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다룬 발달권이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포괄하는 것은, 지식위주의 교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특히 여가는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쉼의 필요성을 포함 하고 있어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여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창의적인 잠재력 개발의 기회를 암시한다. 놀이는 통제나 구속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 어떤 활동보다 아동기에 가장 적절하고 흥미로운 활동이다(여기서 이

야기하는 통제나 구속이 없다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것과 다른 의미이다).

진정한 놀이를 하면 유아는 성인의 평가나 목표성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특별한 상태에 있게 된다. 또한 유아는 놀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감과 자신감을 얻고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므로 놀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놀이가 가진 기능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놀이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돕고 체력을 증진시켜 신체의 원활한 협응능력을 길러준다.
- ✓ 놀이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정서 발달을 돕는다.
- ✓ 놀이과정에서 차례 지키기, 약속 지키기, 양보하기 등의 행동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사회화 기술을 배우게 된다.
- ✓ 탐색적 활동,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취욕이 생겨 지적 발달을 가져온다.
- ✓ 여러 형태의 놀잇감으로 여러 가지를 변형하여 노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길러진다.
- ✓ 놀이를 통해 많은 욕구를 만족시킨다. 실제 상황 속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소망이 때로는 놀이 속에서 충족될 수 있다.
- ✓ 놀이는 자기통찰의 기회를 주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스스로 놀이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현실감 있는 자아상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 놀이는 치료적인 기능을 가진다. 아동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놀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서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놀이치료를 통해 정서 장애를 극복하고 건전한 자아를 회복시킨다.

사실 유아의 일상생활은 놀이의 연속이다(박정옥·김태인, 2011). 그러나 유아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탐색과 놀이, 놀이형태의 학습이 혼재되는 경우가 있다. 학습과 달리 탐색과 놀이의 경우 부과된 목적에 의해 지시받는 것이 아니기에 내적으로 동기화된 놀이행동임은 유사하다. 그러나 유아의 탐색은 사고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놀이는 행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되, 불필요한 개입을 하거나 의도적 반응을 삼가야 한다. 이러한 개입이나 반응은 유아가 충분한 시간동안 탐색하고, 자

신의 관심을 창의적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아가 충분한 시간동안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성장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목표의 달성일 것이다. 이는 또한 인권, 평화, 관용, 정의가 존중되는 국제사회를 이끌게 될 인재를 키우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 한편을 나누고자 한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자란다

비난받고 자란 아이는
 혈뜬는 것을 배우고
 증오심을 키우며 자란 아이는
 다투는 것을 배우고
 조롱받고 자란 아이는
 수치심을 배우고
 치욕을 겪으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은 아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정과 신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삶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

- ‘아시아의 인권교육’ 중-

목표

- 비차별 원칙과 관련된 조항을 배운다.
- 차별받는 느낌을 경험해 보고 차별, 편견, 고정관념에 대해 알 수 있다.
- 유아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구성:

〈표 19〉 5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회기	활동	목표	시간
비차별의 원칙	A 차별이란?	차별받는 느낌 체험해 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30분
	B 편견과 고정관념	편견(Prejudice)과 고정관념(Fixed Idea)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차별행동을 생각해본다.	50분
	C 동화에서 배우기	동화 “빼빼 룡스타킹” 읽고 동화 속 주인공의 생각과 언어, 행동을 통하여 아동을 이해한다.	40분

[모듈 3] 5-A. 차별이란?

● 활동목표

- ◆ 차별받는 체험을 통해 차별받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 ◆ ‘차별’을 정의 하고, 관련 국제규약의 조항들을 배워 익힌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과 차별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활동형, 강의형)

● 기대효과

- 차별받는 느낌을 이해하고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의 원칙과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아동 관련 협약의 내용을 숙지한다.

● 준비물

- 3~5가지 모양의 스티커(인원수대로)
- A4지(인원수대로)
- 필기도구(인원수대로)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비차별의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난민아동 차별로부터 보호)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장애아동 차별로부터 보호)

● 진행방법

〈활동: “안녕하세요?”〉

-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이마에 스티커를 무작위로 한개 붙인다.
- 각 참가자는 자기이마에 어떤 스티커가 부착되었는지 모르며, 다른 참가자들의 이마에 붙인 스티커에 대해 침묵해야하는 규칙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 진행자는 각각의 스티커에 따른 지시사항이 있음을 알려준다.

〈지시 사항의 예〉

- 스티커 A = 손을 잡으며 상대방에게 반갑게 이야기하기
- 스티커 B = 상대방을 가리키며 비웃기
- 스티커 C = 상대방을 살짝 껴안으면서 인사하기
- 스티커 D = 상대방이 말을 걸으면 무시하기
- 스티커 E = 상대방을 칭찬해주기 (옷, 머리모양, 안경, 신발 등등 다양하게)

- 참가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상대방의 스티커를 확인한다.
- 상대방의 스티커에 해당하는 지시사항을 따른다.
- (예 : 스티커 A를 붙인 나영이는 스티커 D를 붙인 병수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후, 나영이는 병수가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이야기하려 하자 나영이는 병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
- 참가자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만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시간이 종료 되면,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스티커 종류별로 모이도록 한다.
- 각 스티커의 참가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강의: 차별이란?〉

- 본 활동의 취지는 차별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언급한 후, 각자 차별의 정의와 차별경험의 느낌을 정의 내려 보고 종이에 써보도록 한다.
- 참가자들의 차별에 대한 정의와 차별경험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진행자는 차별의 사전적 정의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제2조) 등의 차별관련 조항(제22조, 제23조)을 설명한다.

- 진행자는 아래 상자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별의 정의를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한다.

“차별”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차별’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2조에서 비차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차별’이라는 용어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소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근거하여 차별, 배제, 제한, 우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Tip

-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이유 없이 무시 할 때 느끼는 당혹감에 대하여 언급하고 남과 다른 점을 경쟁의 기초로 삼지 않고, 서로 다름과 각각의 독특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조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스티커의 가짓수는 참가자들의 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 스티커의 모양은 진행자가 원하는 모양/색으로 대체 가능 (동그라미, 세모, 별 등 / 빨강, 노랑, 초록색의 구분 등)
- 스티커의 지시사항은 진행자의 임의로 바꿀 수 있다. 단, 지시 내용 중 1개 이상은 ‘차별 받는’ 느낌이 드는 행동으로 만든다.

● 참고할 텍스트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 ‘부록.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모듈 3] 5-B. 편견과 고정관념

● 활동목표

- ◆ 편견(Prejudice)과 고정관념(Fixed Idea)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이 원인 된 ‘차별행동’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5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활동형, 토론형)

● 기대효과

-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 인식한다.
-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이를 벗어나도록 노력할 수 있다.

● 준비물

- 짧은 글(편견 에피소드) : 그룹수대로
- A4지(인원수대로)
- 색연필, 크레파스 등 그림도구(인원수대로)
- 테이프

● 진행방법

- 소그룹을 만든다.
- 각 그룹에게 상황이 적혀있는 서로 다른 짧은 글을 하나씩 준다.

짧은 글(고정관념 에피소드)의 예

- ▶ 발레선생님께서 축구하는 아이를 혼내셨어요. (성)
- ▶ 학생주임선생님께서 머리가 길다고 자르셨어요. (성)
- ▶ 우리 아이는 담배를 피요. (연령)
- ▶ 옆집 아저씨네 아들은 걷지 못해요. (장애, 연령)
- ▶ 장애인 한분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장애)
- ▶ 외국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종)
- ▶ 엄마가 아들을 혼내고 있어요. (연령)
- ▶ 기타

- 각 그룹은 제시된 글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했다.
- 토론한 상황을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본다.
- 각 그룹에서 완성된 그림을 칠판에 붙이고 그림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그리기 예시〉

1. 발레선생님께서 축구하는 아이를 혼내셨어요. (성)



추가설명: 일반적으로 발레 하는 사람은 여성, 축구하는 사람은 남성으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발레 하는 남성도 있고 축구하는 여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2. 옆집 아저씨네 아들은 걷지 못해요. (장애, 연령)



추가설명: 걷지 못한다는 말에 우리는 다리를 다친 아이, 혹은 휠체어를 탄 아이를 생각한다. 1살짜리 아이도 걷지 못한다는 것처럼 유연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3. 외국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종)



추가설명: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동남아나 제3세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떠올리곤 한다.

- 진행자는 각 그림마다 담겨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참가자들에게 찾아보게 한다.
- 토론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편견과 고정관념(국적, 인종, 혹은 장애, 특성, 성별, 피부색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 행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탐색하여 세 가지 이상의 이유를 찾아 배우고 이해한다.

〈토론주제〉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할까?

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예) - 정보의 부족.

- 자신과 다름에 대한 두려움.
- 문화와 종교의 다름.
- 역사적으로 (어떤 한 민족이나 그룹을 오랜 세월 차별해옴)
- 권력과 신분의 다름.
- 정치적인 이유
- 기타

● Tip

- 진행자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따라 그림 그리기, 토론, 지침 만들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다름’을 인식하는 것과 ‘틀림’을 인식하는 것이 다름을 깨닫고 ‘다름’을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림’으로 표현되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열등/우월하게 여기는 것은 차별이 됨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참고할 텍스트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모듈 3] 5-C. 동화에서 배우기

● 활동목표

- ◆ 동화 ‘삐삐 룽스타킹’을 읽고 동화 속 주인공의 생각과 언어, 행동을 통하여 아동을 이해할 수 있다.
- ◆ 유아기 아동을 보는 성인의 아동관을 살펴볼 수 있다.
- ◆ 유아기 아동을 보는 유아교사인 나의 아동관을 성찰할 수 있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그룹, 토론형

● 기대효과

- 동화 ‘삐삐 룽스타킹’을 통해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권리의 주체’임을 깨닫는다.
- 편견과 고전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보육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한다.

● 준비물

- 동화책 ‘삐삐 룽스타킹’의 에피소드
- 영상 : EBS 지식채널e 95화 ‘삐삐 어찌구 저찌구 룽스타킹’ (방송일 2006년 5월 1일, 5분 7초)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isike&menu_seq=1&enc_seq=1177724
- 전지(그룹수대로)
- 매직(그룹수대로)
- 테이프

● 진행방법

- 진행자는 EBS 지식채널e 95화 ‘삐삐 어찌구 저찌구 룡스타킹’ 영상을 보여주고 동화 ‘삐삐 룡스타킹’의 배경과 간략한 줄거리를 설명한다.



‘삐삐 어찌구 저찌구 룡스타킹’ 영상 중

- 소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에게 동화책 “삐삐 룡스타킹”의 에피소드를 나누어 준다.

〈에피소드 예시: ‘내 이름은 삐삐 룡스타킹’ 중...〉

1. 선생님이 삐삐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아니카를 보았다.

“자, 아니카. 너한테 문제를 낼게. 구스타프가 같은 반 친구들과이랑 소풍을 갔어. 구스타프는 소풍 갈 때 1크로나(스웨덴의 화폐 단위. 1크로나는 100요레)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7요레가 남아 있었어. 구스타프는 얼마나 썼을까?
삐삐가 또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나도 알고 싶어. 구스타프는 왜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지? 구스타프는 탄산음료를 사 먹었을까? 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귀는 잘 씻었을까?”

선생님은 수학 수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2. 선생님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 주었다.

“지금부터 뭐든지 마음껏 그려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책상에 앉아 숙제 검사를 했다. 얼마 뒤에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뽀뽀만 쳐다보고 있었고, 뽀뽀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니, 뽀뽀! 종이는 어찌고 바닥에다 그리니?”

“종이엔 벌써 다 그렸어요. 내 말을 그리려면 그렇게 작은 종이로는 어렵도 없다고요. 이제 겨우 앞다리를 그린걸요. 꼬리를 그리려면 복도까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글 출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2000). ‘내 이름은 뽀뽀 롱스타킹’, 햇살과 나무꾼 역. 서울: 시공주니어.

- 각 그룹은 에피소드를 읽고 아래 제시된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전지에 정리 게시판에 붙인다.

〈질문〉

- 뽀뽀의 어떤 행동이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나요?
- 뽀뽀는 어떤 특성을 가진 아동인가요?
- 뽀뽀의 행동을 바라보는 성인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 내가 뽀뽀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 교사입장에서 뽀뽀가 우리 반 아이라면 어떨까요?

- 그룹별로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그룹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 참가자들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아동을 보는 유아교사인 나의 아동관을 성찰해 보도록 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유아교사로서 아동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비차별 행동 지침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교사의 비차별 행동 지침 (예)〉

- ▶ 항상 모든 아동이 다 참여하고 있는지, 배제되거나 뒤에 홀로 남는 아동은 없는지 늘 주의 깊게 살핀다.
- ▶ 차별이 무엇인지, 차별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한다.
- ▶ 아동 뿐 아니라 동료나 부모 등 만나는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한다.
- ▶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배우고 이해한다. 그래야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다.
- ▶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놀이와 활동에 모두 함께 포함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 ▶ 만일 주변에 차별당한 아동이 있을 경우, 방관하거나 방임하지 말고, 그 아동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한다. 그래야 다시 차별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 Tip

- 주어진 에피소드 외에 ‘뽀뽀 룽스타킹’의 다른 에피소드나, 다른 동화책, 동영상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 진행자는 활동의 진행 상황에 따라 비차별 행동 지침 작성 등 일부 활동을 생략하거나 축약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참고할 텍스트

- ‘선구자들의 아동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목표

-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본다.
-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동 인권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알 수 있다.

구성:

〈표 20〉 6회기의 활동별 목표 및 시간

회기	활동	목표	시간
주제별 아동인권	A 우리 기관 안전한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60분
	B 우리 아이 안전한가?	유괴와 실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과 관련된 교사지침을 배운다.	40분
	C 이게 아동학대라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한다.	40분
	D 학대를 보는 눈, 보호하는 손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배우고 유아교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한다.	40분
	E 교육이란? 교육의 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를 배우고 유아의 잠재력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란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30분
	F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놀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다.	30분
	G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아동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참여가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5분

[모듈 3] 6-A. 우리 기관 안전한가?

● 활동목표

- ◆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 유아교육기관 주변 유해환경을 점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안전 관련 조항들을 배운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활동형, 강의형)

● 기대효과

- 아동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장소를 점검할 때, 어디를 살펴 볼 것인지, 어떤 자세로 살펴볼 것인지, 위험한 곳과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찾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

● 준비물

- A4지(인원수대로)
- 필기도구(인원수대로)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3항, 제6조, 제9조 1항

● 진행방법

- 소그룹을 구성한다.
- 참가자들은 주어진 종이에 자신이 속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과 기관 주변의 평

면도를 그린다.

- 평면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점검이 필요한 환경과 장소

<기관 평면도>

- ▶ 현관문과 입구
- ▶ 복도, 계단, 승강기
- ▶ 교실
- ▶ 주방
- ▶ 화장실, 세면대
- ▶ 실외 놀이터와 놀이기구
- ▶ 실내 놀이공간
- ▶ 강당, 체육실
- ▶ 싱크대
- ▶ 교무실, 원장실
- ▶ 교재교구실(창고)
- ▶ 급식실
- ▶ 베란다
- ▶ 담장과 울타리
- ▶ 주차장

<교실 평면도>

- ▶ 장난감
- ▶ 책상, 의자
- ▶ 미술재료(가위, 풀 등)
- ▶ 실내 환경(온도, 습도, 공기, 채광 등)
- ▶ 침대, 이불

<기관 주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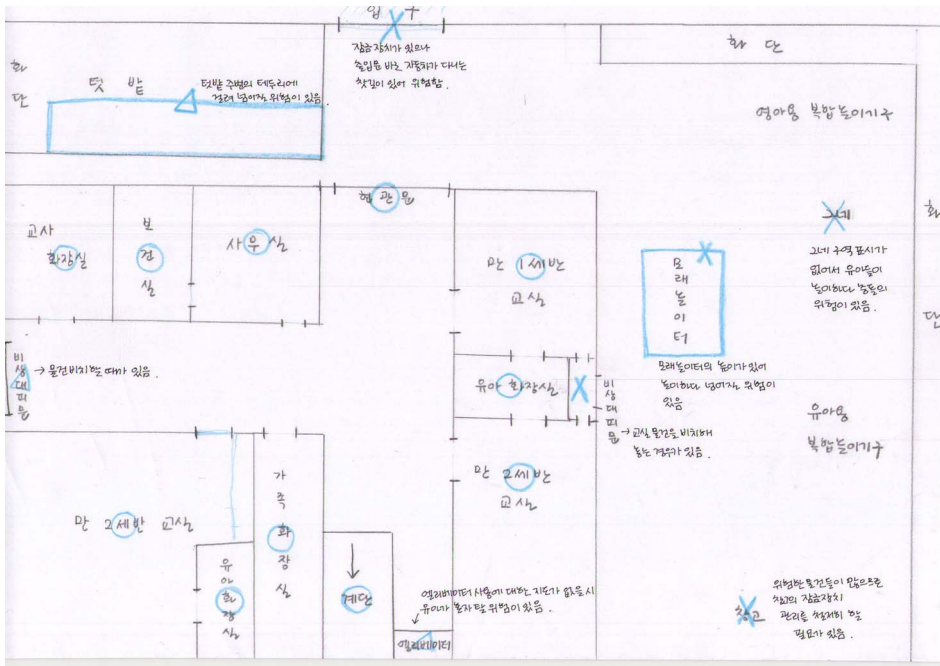
- ▶ 인근 도로
- ▶ 상가
- ▶ 차량
- ▶ 기타 유해환경

- 참가자들은 평면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엑스(X)로 표시,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곳은 세모(△),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 안전점검을 마친 참가자들은 자신의 그림과 그룹 내 다른 참가자들의 그림을 비교해 보고 서로 공통된 부분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곳(장소)을 어떻게 점검(방법)해야 할지 토론하면서 안전점검표(안전수칙)을 만들어 본다.
-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룹원들이 함께 완성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보고 그룹의 대표가 나와서 발표한다.
- 진행자는 활동의 목적과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중요한 점들을 설명하고 발표에

대한 피드백(안전점검표와 평면도)을 준다.

- 진행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안전 관련 조항에 대해 알려주고 아동안전도 역시 아동인권에 포함됨을 알려준다.

〈평면도 그리기 예시〉



〈진행자의 코멘트〉

- ▶ 위의 예시에서 아동에게 위험한 장소로 턱이 있는 곳(모래놀이터, 툇밭), 울타리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놀이터(그네), 위험한 물건이 많은 창고와 엘리베이터, 비상 대피문을 선정하였다.
- ▶ 본 활동을 통해 해당교사는 비상대피문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물품이나 교구를 쌓아 놓는 경우가 있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는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 Tip

- 본 활동의 평면도 그리기는 기관 전체의 평면도, 본인이 맡은 교실의 평면도 또는 기관 주변의 평면도(주변 도로, 통학로 등)을 그릴 수 있다. 참가 인권수가 많은 경우 각 그룹별로 다른 평면도를 그려보는 제안 할 수 있다.
- 진행자는 아동 안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아동인권 이슈 중 하나로, 부모와 교사 외에 국가 역시 의무이행자로서 아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 참고할 텍스트

-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 ‘부록.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모듈 3] 6-B. 우리 아이 안전한가?

● 활동목표

- ◆ 유괴와 실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과 관련된 교사지침을 배운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강의형, 발표형)

● 기대효과

- 유괴와 실종은 사전 예방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
- 유괴범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 안전망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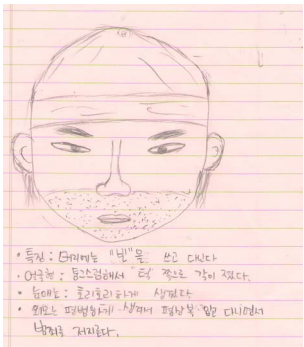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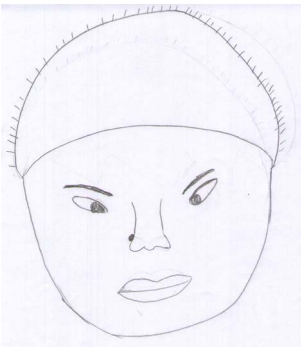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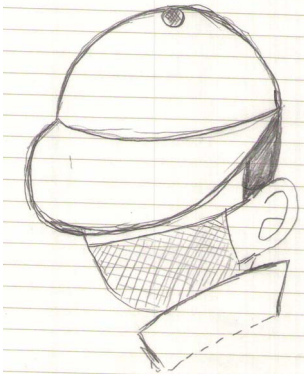
- A4지(인원수대로)
- 필기도구(인원수대로)
- 테이프

● 진행방법

- 참가자들은 나누어 준 종이에 ‘유괴범’을 그리고 특징을 간략히 적어본다.
- 완성된 그림을 칠판에 붙인다.
- 참가자들이 그린 유괴범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이야기 해 본다.
- 진행자는 일반적으로 유괴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참가자들에게 설명

한다(고정관념: 남자, 모자나 선글라스/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림, 험상궂은 얼굴, 상처/흉터, 입 꼬리가 올라가거나 비열한 표정, 수염, 짧은 머리 등).

- 진행자는 유괴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유괴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아동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유괴범 그리기의 예시1〉		
남성: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 신체의 일부를 가림		
		
		

〈유괴범 그리기의 예시2〉

남성: 얼굴의 상처, 짙은 눈썹, 눈꼬리가 올라간 특징, 점



〈유괴범 그리기의 예시3〉

여성: 입 꼬리가 올라가거나, 입술이 붉은, 특징이 두드러짐



● Tip

- 진행자는 성인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유괴범의 인상착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음을 언급하고 유아를 위한 유괴와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납치와 유괴 뿐 아니라 실종 역시 심각한 아동안전 사건임을 설명한다.

● 참고할 텍스트

- ‘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납치·실종’

[모듈 3] 6-C. 이게 아동학대라고요?

● 활동목표

- ◆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배울 수 있다.
- ◆ 유아교육기관과 그 종사자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개인, 강의형

● 기대효과

-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와 방임 등)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알 수 있다.
- 유아교사는 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아동보호전문가임을 인식 할 수 있다.

● 준비물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9조, 제20조)

● 진행방법

- 진행자는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과 영향에 대해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

1. 학대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제19조, 제20조)과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를 소개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과 유기, 착취 등)과 구체적인 행위를 소개한다.

3. 아동학대의 실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본다.

4. 아동학대의 기억과 영향

아동기에 경험했던 체벌과 학대, 비교와 무시, 냉대와 굴욕 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5. 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중요성

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초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마무리로 언급한다.

- 진행자는 많은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유아교육기관이며, 유아교사임을 강조한다.

● TIP

- 본 활동은 강의식이기 때문에 진행자는 강의 자료 외에 다양한 사례(신문기사, 영화, 전래동화 등)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유기만이 학대가 아님을 강조한다. 아동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행위,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언행들 중 상당수가 학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식 하도록 지도한다.

● 참고자료

-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신통계자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참조
- 아동학대 관련 신문기사 등

● 참고할 텍스트

- ‘아동학대와 방임’

[모듈 3] 6-D. 학대를 보는 눈, 보호하는 손

● 활동목표

- ◆ 아동학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한다.
- ◆ 유아교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한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개인, 강의형

● 기대효과

-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 진행방법
- 진행자는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과 영향에 대해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

1. 학대의 이유

아동학대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2. 학대를 보는 눈

학대 피해아동의 특성(신체적, 행동적 징후 등)을 설명한다.

학대하는 성인(가해자)의 특성을 설명한다.

3. 보호하는 손 : 신고의무자, 교사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학대신고의무자관련 규정과 의무, 신분보호 등의 원칙을 설명한다.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일반적 이유와 오해를 설명한다.

신고방법과 신고전화번호(1577-1391, 129번) 등을 설명한다.

- 진행자는 유아교육기간과 유아교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 한다.

● Tip

- 진행자는 일부 어린이집의 어린이 학대 사건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와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 진행자는 교사가 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부각시킨다.
-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학대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권장한다.

● 참고자료

-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 사례

● 참고할 텍스트

- ‘아동학대와 방임’

[모듈 3] 6-E. 교육이란? 교육의 목표

● 활동목표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를 배우고 유아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 강의형

● 기대효과

- 교육의 목표를 이해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 누구나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교육의 목표가 명확할 때 올 수 있는 효과들을 배움으로서 현장에서 아동의 잠재력을 활용한 교육을 하게끔 도와준다.

● 준비물

- A4지(인원수대로)
- 필기도구(인원수대로)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 시 ‘아이들은 배운 대로 자란다’ (교육자료3의 ‘아동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참조)

● 진행방법

- 진행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에 대해 설명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모듈1의 1-B ‘교사로서의 나’의 활동을 회상하도록 한다.
- 모듈1의 1-B 활동 결과물에서 이상적으로 생각 했던 교사의 모습,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29조의 교육목표 그리고 현재 교육 현실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 ‘아이들은 배운 대로 자란다’ 시를 함께 읽어보고 활동을 마무리 한다.

● Tip

- 사전에 ‘교사로서의 나’(모듈 1의 1-B)의 활동을 안 한 경우에는 도입으로 해 볼 것을 권장한다.

● 참고할 텍스트

- ‘유아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 ‘부록.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모듈 3] 6-F.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 활동목표

- ◆ 놀이가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가치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 ◆ 놀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발표형, 강의형)

● 기대효과

- 놀이 중요성과 재미를 통해 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알 수 있다.
- 놀이가 영·유아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 전지(그룹수대로)
- 필기도구(그룹수대로)

● 진행방법

- 소그룹을 만든다.
- 참가자들은 각 그룹별로 어렸을 때 즐겨하던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10분가량)
- 그룹별로 전지와 필기도구를 나누어 준다.
- 이야기 나눈 어렸을 적 즐겨하던 놀이 중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 선택한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긍정적/부정적)에 대해 생각해 보

고 부정적 영향의 대처방안도 찾아 써보도록 한다.

- 본 활동은 놀이의 즐거움과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추억의 놀이를 회상하고 활동을 진행할 때 유쾌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도록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유도한다.

(예) 한 가지 예로 공기놀이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공기놀이의 예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대처 방안
▶ 소근육 발달 ▶ 눈 손 협응 능력 ▶ 숫자 배우기 ▶ 셈하기 ▶ 평형감각 ▶ 집중력 ▶ 규칙 ▶ 인내심 ▶ 사회성(팀 대항)	▶ 근육 뭉침(한자리에서 하는 활동) ▶ 한손만 사용 ▶ 금전적 손실(공깃돌 분실) ▶ 친구들과 다툼(대항전) ▶ 손 다침	▶ 장시간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다양한 응용으로 양손 사용을 촉진한다. ▶ 놀이 장소를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서 한다(매트 등). ▶ 과도한 경쟁은 피하도록 한다.

- 각 그룹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해 본다.
- 진행자는 영·유아기의 놀이가 갖는 긍정적 영향과 놀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 Tip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놀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할 때 마치 놀이를 하고 있는 듯이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촉진한다.
- 진행자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과 같은 새로운 놀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게임중독 등) 참가자들과 토론해 본다.

● 참고할 텍스트

- ‘유아 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모듈 3] 6-G.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 활동목표

- ◆ 교사는 공동 작업을 통해 집단 내 참여의 수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두가 중요함 느껴봄으로서 참여의 의미 배운다.
- ◆ 아동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참여가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소요시간

- 45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활동형, 강의형)

● 기대효과

- 의견존중의 중요성을 그룹작업을 통해 체득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의견 존중에 대한 이해와 적용 필요성을 배양한다.
- 유아의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 유아에게도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깨닫는다.

● 준비물

- 전지(그룹수대로)
-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그룹수대로)
- 테이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 진행방법

- 4-5명으로 그룹을 구성한다.

- 각 그룹에게 전지와 색칠도구를 나누어준다.
- 진행자는 각 그룹에게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단, 의논이나 이야기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 주제: 크리스마스, 내가 좋아하는 곳, 가족, 소풍 등
- 각 그룹은 작품이 완성되면 그림을 그리는 동안의 느낌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침묵하는 동안의 무시 받는 느낌이나 답답함, 불쾌감 등의 다양한 감정에 관한 표현을 하도록 촉진한다.
- 조별로 함께 의논하여 작품의 제목을 지은 후 벽에 전시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 간에 서로 다른 역동의 다양한 참여 방식(소극적, 적극적, 능동적, 주도적, 수동적 등)이 있음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제시된 것처럼 의견존중 역시 아동이 가져야 할 권리의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교사는 아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함을 강조한다.

● Tip

- 진행자는 비언어적 상황에서도 무시당하거나 소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통해 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근간임을 설명한다.
- 진행자는 유아(아동)의 참여의 증진을 위해서 성인(교사, 부모)이 유아의 참여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촉진시켜줄 준비가 되어야 함에 비중을 두고 설명하여야 함

● 참고할 텍스트

-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 ‘부록.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제4장

아동 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4장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과 매체를 통해 유아교사의 인권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다. 본 모듈은 교사 스스로가 권리주체자이며, 동시에 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의무이행자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자는 본 모듈의 진행을 위해 ‘교육자료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부분을 숙지할 것을 권장한다. 본 회기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 4장의 구성 및 회기별 목표(7~10회기)

교육자료 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아동인권을 강조한다면, 교사와 부모의 인권은?
회기	7. 아동인권 모니터링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목표와 역할을 배운다.
	8. 콘텐츠 속 인권 상황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권감수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9. 딜레마 상황과 문제행동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다.
	10.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갈등 상황 속에서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존중하는 마음을 키운다.

교육자료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인권에 대해 이야기 했다. 앞선 이야기를 통해 아동은 인격체이며,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의 소유물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권리주체자(rights holder)임도 알 수 있었다.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대상을 권리주체자라고 한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자이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 부모, 교사, 지역사회와 국가 등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충족시키며, 존중해야한다.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 대상을 의무이행자(duty bearer)라고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요인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에게 있어 의무이행자인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은 발달적 특수성으로 인해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국제 규약 및 협약과 구별된 아동 최상의 이익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충족시키고, 존중함에 있어서, ‘아동최상이익의 원칙’이 항상 그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단순히 아동이 작고 취약해서 재난 시 제일 먼저 구제의 대상을 삼아야 한다는 의미보다 한층 높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아동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에서는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기관 모두가 아동의 삶에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특히 이 원칙은 ‘모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유아기 아동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유아교사에게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할 수 있다. 유아교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육 현장에 실현하기 위

해서는 개별 아동의 상황을 사정(assessment)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경청은 유아보육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유아교사는 아동에게 필요한 것과 아동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아동이 원하는 바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상반되는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사는 아동발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아동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 교사가 함께하는 아동이 어떤 발달단계에 처해있고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 이해해야 하고, 교사 자신의 의견이 비록 아동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이 교사가 생각하는 최상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 최상의 이익은 협약 제3조에서 공공기관, 민간기관, 법원 행정당국, 그리고 입법기관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에서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입안 및 조치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아동에 관한 인식과 태도,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준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때 달성 가능한데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결정에 반영하는 규범과 절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제대로 이행되기는 어렵다. 의무이행자로서의 교사는 유아교육 전반에 걸쳐 아동 최상의 이익을 그 핵심가치로 삼아 아동과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인권을 강조한다면, 교사와 부모의 인권은?

모든 인간은 권리주체자이자 의무이행자이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 역시 아동인권을 보호, 충족, 존중할 의무이행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체자인 것이다. 즉, 아동인권의 존중만큼 교사나 부모의 인권 역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동인권이 강조된다면 상대적으로 교사와 부모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권은 총합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인권이 증진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

나 부모의 권리가 아동을 무시하고, 때리고, 착취하며, 위협에 방치하고, 아동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사와 부모, 아동의 인권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또한 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의 인권이 보호, 충족, 존중받기 위한 1차적 의무이행자는 아동이 아닌 국가와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맞벌이와 근무시간 연장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유아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근로시간이 길어져야 한다면, 이는 유아의 인권을 위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부모가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아동인권을 다루다보면, 한 아동의 인권이 다른 아동의 인권이나 부모, 교사의 권리와 상충되는 예민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교사는 문제 상황이 인권과 관련된 상황임을 인식하는 인권감수성과 그 상황에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인권추론능력,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가치 등 여타의 다른 가치보다 인권을 우선시 하는 인권가치동기화, 마지막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권행동실천력이 요구된다(문미희, 2005).

진정한 아동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교사는 스스로가 아동인권을 충족해야 할 의무이행자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체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아동 역시 자신이 권리주체자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이행자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선순환을 이룰 때,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의무이행자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또 권리주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충족되며 존중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활동목표

- ◆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목표와 역할을 배운다.
- ◆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안다
- ◆ 권리침해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
- ◆ 유아기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틀에 맞게 분석하여 국가, 기관, 교사, 부모, 아동의 측면에서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활동형, 토론형)

● 기대효과

- 아동인권 이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체계를 이해한다.
- 유아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인권침해사례를 찾아내는 안목과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인권감수성을 배양한다.
-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고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방법을 연구하는 자세를 키운다.

● 준비물

- 아동인권 침해 사례(그룹 수만큼)
- 전지(그룹수대로)
- 필기도구(그룹수대로)

- 테이프

● 진행방법

- 진행자는 사전에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그룹 수만큼 준비한다.(신문기사, 인권위 아동인권진정례 등)
- 소그룹을 만든다.
- 진행자는 준비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읽도록 한다.
- 그룹 별로 주어진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 진행자는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목표와 역할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한다.
- 각 그룹은 진행자가 들려준 사례를 모니터링 6단계를 사례에 적용해보는 토론활동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6단계〉

- ① 문제를 규명하기
- ②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 ③ 누구의 책임인가?
- ④ 어떻게 문제를 풀까?
- ⑤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풀까?(국가, 기관, 교사, 부모, 아동)
- 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 각 그룹의 결과물을 A4지에 정리해 보고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것/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 진행자는 아동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국가, 가정, 교사, 아동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마친다.

● Tip

- 진행자는 실생활에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모니터링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알려준다.

- 진행자는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국내, 국외 막론하고 다양하게 준비 할 수 있다.
- 아동인권 침해 사례는 책, 영화, 신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의 사례들을 활용 할 수 있다.

● 참고할 텍스트

- ‘교육자료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전반

〈예시 글 하나〉

커피콩은 A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커피콩의 수확시기인 10월에서 2월까지지는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커피농장에서 일하며 수백만 자루의 커피콩을 수확한다. 커피수확기에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동이다. 이제 겨우 여섯 살인 아이도 커피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이는 산기슭에 위치한 커피농장에서 매일 10시간씩 커피콩을 수확하는 일을 하고 하루에 150달러어치 정도의 커피콩을 수확하고, 8달러를 임금으로 받는다. 농장주인은 아동이 커피콩을 수확하는 것이 위험한 줄 알고 있지만 수확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한편 A국은 아동노동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아동 모니터링 6단계 적용〉

① 문제가 무엇인가?

- ▶ 아이들이 어른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고된 일을 위험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
- ▶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것 같다.(하루에 150달러치의 콩을 파는데 하루에 받는 임금은 8달러)

② 원인이 무엇인가?

- ▶ 커피콩을 수확하는 데 일손이 부족해 아이들까지 고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③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 ▶ 아이들의 부모와 고용주: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는 것과, 아동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에 대해
- ▶ 국가: 아동의 노동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혹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노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 ▶ 커피산업시장에 연루되어있는 기업, 소비자, 등등: 더 싼 값에 커피콩을 구입하여 더 싼 가격에 커피를 파려고 하고, 소비자도 더 싸게 커피가 공급되는 것을 좋아

한다. 이것은 곧 A국과 같은 나라의 아동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해결 방법은?

- ▶ 아동의 노동에 대한 법을 마련 한다: 나라가 가난하여 아동의 노동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최소한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며, 적절한 작업시간, 환경, 임금 등의 보호 안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법 마련
- ▶ 아동이 아닌 성인의 인력을 확충한다.
- ▶ 커피콩 산업 이외에 아동이 노동에 참여할 만하면서도 커피콩 대신 국가 수입에 도움이 될 만한 산업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러한 산업을 추진한다.

⑤ 누구와 함께 해결할 것인가?

- ▶ 정부의 관련 부처들과 그 공무원들
- ▶ 커피농장 고용주
- ▶ 아동의 부모
- ▶ 국제기구의 도움 및 원조
- ▶ NGO 단체들
- ▶ 커피 산업 부문의 기업과 그 소비자들

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 ▶ 공정거래 된 커피를 사먹기(공정거래 커피에 대해 알리기)
- ▶ 커피 따는 어린이 노동에 대해 주변에 알리기

〈예시 글 들〉

A씨는 아이가 셋인 싱글맘이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다.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아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세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다. 큰 아들은 경찰서나 보호소 같은 곳에 말을 하면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을 염려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들을 챙기던 중 이웃의 신고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었다.

〈아동 모니터링 6단계 적용〉

① 문제가 무엇인가?

- ▶ 아이들끼리 살아가게 되었으며,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정부나 관공서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
- ▶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나 의료적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생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처해있다.

② 원인이 무엇인가?

- ▶ 아이들을 보호할 1차 책임자인 엄마가 집을 나갔다.
-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③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 ▶ 가족 : 가출한 엄마와 알려지지 않은 아이의 아빠 역시 책임이 있다.
- ▶ 국가: 국가의 출생신고 제도에 문제가 있음.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부족.

④ 해결 방법은?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임산부의 분만을 돕는 전문가에게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교육 및 의무화하도록 출생등록제도 보완.

⑤ 누구와 함께 해결할 것인가?

- ▶ 정부의 관련 부처들과 그 공무원들
- ▶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 ▶ 아동의 부모
- ▶ NGO 단체들
-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 ▶ 주변 이웃을 돌아보기
- ▶ 출생신고의 중요성이나 미혼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 주변에 알리기

● 활동목표

- ◆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권감수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토론형, 발표형)

● 기대효과

- 생활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접할 때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아동인권 친화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준비물

- 콘텐츠(동화: 흑부리 영감)
-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

● 진행방법

- 소그룹을 만든다.
- 진행자는 여러 사진을 제시하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씩 고르도록 한다.
- 그룹별로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 토론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촉진한다.

- 진행자는 제시된 매체를 아동인권 친화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촉진한다.
- 진행자는 그룹별로 느낌 점에 대해서 적절히 피드백 해주고, 이런 것이 아동 인권을 바라보는 인권감수성임을 설명해 준다.
- 또한 이러한 인권감수성을 지녀야 아동인권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마무리 한다.

〈사례: 구두와 여자아이의 발(사진)〉



<출처: <http://bigcan.egloos.com/m/4786866>>

느낀 점

- ▶ 사진 속에는 여자의 발만을 보여주지만 사진 프레임 밖에는 어떤 모습일지 많은 궁금증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 ▶ 불편한 하이힐을 신느라 힘들었던 발이 주어진 환경에 간혀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 같다

〈그 외에 사용하면 좋을 사진의 사례〉

- ▶ 여러 자화상 그림(얼굴표정, 피부색, 머리모양 등 다양한 얼굴 모습의 사진)
- ▶ 공부를 한 칠판을 뿌듯하게 들고 있는 여자아이
- ▶ 교실 안에서 나란히 웃고 있는 아이들
- ▶ 바닥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강렬한 눈빛의 아이
- ▶ 다리가 하나 없는 어른을 올려다보는 아이

Tip

- 진행자는 위에 제시한 ‘그 외에 사용하면 좋을 사진의 사례’의 사진을 직접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 진행자는 사진 외에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인 ‘흑부리 영감님’, ‘피터팬과 후크 선장’ 같은 동화나 영화 등을 제시하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특징과 상황에 대해 위에서 배운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이야기 해보는 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예) 후크 선장

후크선장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갈고리 손, 괴팍하다, 악당이다, 피터팬을 괴롭힌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후크선장이 실제로 장애(갈고리 손)를 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시계 똑딱 소리, 악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참고할 텍스트

- ‘교육자료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전반

● 활동목표

- ◆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토론형, 발표형)

● 기대효과

- 생활 속 여러 딜레마 상황을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 준비물

- 4컷 만화
- 인권 딜레마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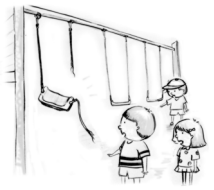
● 진행방법

〈활동1: 4컷 만화〉

- 소그룹을 만든다.
- 진행자는 여러 상황이 제시된 4컷 만화 중에 앞의 3컷만을 보여준다.
- 비어있는 마지막 한 칸에 들어갈 글/그림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고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완성해 보도록 한다.
- 완성된 4컷의 상황을 그룹별로 발표해 본다.

- 진행자는 완성된 4번째 컷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것을 이야기 해준다.

예) 4컷 만화 1 : 그네 상황

			
3명의 아이들이 함께 그네를 타기 위해 놀이터에 나왔어요.	근데, 세 개의 그네 중 하나가 끊어져 있어요.	다함께 그네를 타고 싶은 아이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4번째 컷의 예

- ▶ 남은 두 개의 그네로 바이킹을 탄다.
- ▶ 순서를 정하고 번갈아 가며 탄다.
- ▶ 선생님에게 그네를 고쳐달라고 한다.
- ▶ 다른 놀이기구를 탄다.
- ▶ 등

4컷 만화의 다른 예들

-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 한 아이가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공원에 나왔다. 그런데 공원에 마주친 친구는 개를 너무 무서워한다. 함께 산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 수련회에 간 아이들의 취침시간이 다가왔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자고 싶은데 어떤 아이들은 밤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활동2: 딜레마 상황〉

- 진행자는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나누어 준다.
- 각 그룹은 제시된 딜레마 상황의 질문들을 토론했고 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한다.
- 진행자는 딜레마 상황에 대해 긍정적/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대안을 모듈 4-1에서 배운 ‘모니터링 6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도록 한다.

〈딜레마 상황의 예1: 약을 거부하는 아이〉

장애통합반을 맡고 있는 나영 선생님은 요즘 병수 때문에 온 신경이 예민해졌다. 병수는 간질장애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다. 간질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의 복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병수는 간질약을 먹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얼마 전 병수는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 주로 아이를 양육하는 할머니께서 병수가 너무 약 먹는 것을 싫어해 먹이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의사는 약복용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지만 여전히 병수는 약복용을 거부한다. 나영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눕히고 팔다리를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입을 벌려 약을 먹인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어린이집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운다. 이 때 어린이집을 방문한 한 학부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

〈함께 고민해 볼 질문들〉

- 이 장면을 목격한 학부모는 어떤 생각으로 신고를 하였을까?
- 약 먹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병수가 원하는 대로 약을 먹이지 말아야 할까?
- 이 이야기에서 나영 선생님의 심경의 변화는 어떠했을까?
- 병수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 만약 선생님이 나영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선생님은 나영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딜레마 상황의 예2 : 식습관 지도상황〉

1년차 한숙 선생님은 간식시간이나 식사시간 마다 고민이 됩니다. 식습관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남기지 않고 먹게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 같아 맘이 편치 않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었던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 아이들에게

는 그런 경험을 하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기지 않고 골고루 먹도록 지도하지만 때에 따라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먹거나 남겨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한숙 선생님 반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면 마치 교사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서 억지로 먹이지 말아야 할지, 아이의 식습관을 위해서 교사가 강요해야 하는 것인지 한숙 선생님은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함께 고민해 볼 질문들〉

- 한숙 선생님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 한숙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의 의견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선생님은 한숙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만약 선생님이 한숙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아이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딜레마 상황의 예3 : 엄마들의 편견과 차별〉

어느 날 나영 선생님은 병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수엄마는 병수와 같은 반인 영현이네 엄마가 미혼모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네? 하고 반문했지만 병수 엄마는 병수를 영현이와 같은 반에 있게 하기 싫다며 영현이를 어린이집에 못 나오게 하지 않으면 원을 옮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영 선생님은 곤란해졌습니다.

〈함께 고민해 볼 질문들〉

- 나영 선생님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 만약 선생님이 나영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병수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 선생님은 나영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병수와 영현이 모두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 Tip

- 진행자는 모든 상황에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 있음을 강조한다.
- 제시된 4컷 만화의 예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보도록 한다.
-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투사하여 토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진행자는 토론 중간에 개입을 통해 중재한다.
- 진행자는 주어진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주어진 활동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참고할 텍스트

- ‘교육자료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전반

● 활동목표

- ◆ 갈등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전래동화, 신문기사, 일화 등)를 찾아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입장에 따라 상황을 재분석함으로써 상반된 입장을 이해해 본다.
- ◆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재해석해보는 활동을 통하여 존중과 공감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소요시간

- 50분

● 교육방법

- 그룹, 혼합형(활동형, 토론형)

● 기대효과

- 입장을 바꾸어 보는 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증진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다.
- 특정 상황을 일방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포용력을 갖출 수 있다.

● 준비물

- 갈등상황이 묘사 된 글
예) - 전래동화(반쪽이, 흥부놀부, 흑부리 영감 등),
- 이주연의 산마루서신 2012년 2월 4일자 ‘실제상황’
- 전지(그룹수대로)
- 필기도구(그룹수대로)

● 진행방법

- 소그룹을 만든다.
- 진행자는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그룹별로 나누어준다.
- 진행자는 각 그룹별로 나누어 준 이야기 속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등장인물을 찾아보도록 한다.
-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찾은 등장인물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아래에 주어진 질문에 대해 각각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대답해 보도록 한다.
- 그룹별로 결과물을 전지에 정리한 후 발표해 본다.

〈질문의 예〉

- 1) 현재 각 등장인물의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 2) 인권이 침해당한 역할, 인권을 침해한 역할은 누구이며 그 밖의 다른 인물들의 역할(방관자, 중재자, 문제해결자, 갈등유발자 등)은 무엇인가?
- 3) 내가 만약 각각 등장인물이라면 어떠한 심경이었을까?
- 4)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였을까?
- 4) 이야기의 결말은 어떠한가?
- 5) 새로운 결말을 만든다면?

- 진행자는 적절한 피드백을 하고, 참가자들 중 몇 명을 선정하여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 Tip

- 이야기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
- 참가자들의 수가 많을 경우 그룹별로 역할을 지정하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역할의 입장에 대해 상호토론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참고할 텍스트

- ‘교육자료4.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 전반

〈활동 이야기 예시〉

실제상황

산마루 서신 2012년 2월 12일자

실제로 TAM Airline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50대의 여성이 자신의 자리에 도착하니 옆자리에 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화난 표정으로 스튜어디스를 불렀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와서 "뭐가 문제지요?" 하고 묻자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보면 몰라요? 내 자리가 저 흑인 남자 옆자리잖아요. 난 저 남자 옆에 못 앉아요. 다른 자리 주세요."

스튜어디스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자리가 다 차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분 후 스튜어디스가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기장과도 확인해보았지만 이코노미석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등석 자리밖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어 스튜어디스가 말했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보통 같으면 승객을 이코노미석에서 일등석으로 자리를 옮겨드리는 걸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저희 항공사의 손님이 어떤 불편한 사람 옆에 앉도록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스튜어디스는 흑인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 짐 챙기셔서 일등석으로 오십시오."

그 여자의 인종차별을 못 믿겠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기립박수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 활동의 예〉

	50대 여자	흑인 남자	스튜어디스
질문1. 문제 상황	불쾌한 상황: 흑인남자 옆에 앉아야함	불쾌한 상황: 인종차별을 당 함, 모멸감을 주는 사람을 만 남 자신이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킴.	난처한 상황: 인종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 처함
질문2. 역할	인권 침해자, 가해자, 갈등유 발자.	피해자, 인권을 침해당한 사 람, 소수자, 약자.	중재자, 문제 해결자, 위트 있는 사람.
질문3. 심경	짜증남, 불쾌함, 앞이 캄캄 함, 괴로움.	황당함, 무시당한 느낌, 화 남, 재수 없음, 모멸감, 분노.	황당함, 어이없음, 난감함.
질문4. 원인	어렸을 적에는 흑인과 같이 앉지 않도록 교육받음. 흑인남성에게 부정적 사건을 당한 경험이 있음. 사실은 흑인 남자가 엄청 뚱 뚱해서 자리가 좁음. 흑인남자에게 냄새가 심하게 났음.	그동안 알게 모르게 경험했 던 인종차별로 인해 피해의 식과 열등감이 강했음. 자신이 나서려던 순간 스튜 어디스가 먼저 나섰음. 너무 어의가 없어서 아무 말 도 할 수 없었음. 여자가 옆자리에 앉지 않으 려는 것이 인종문제라고 생 각하지 않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었음. 인권에 대한 사전교육을 확 실히 받았음. 스튜어디스도 흑인이었음. 사실은 기장이 그렇게 이야 기 하라고 하였음. 흑인남자가 엄청 잘생겨서 잘 보이고 싶었음.
질문5. 결말	스튜어디스는 50대 여자와 흑인 남자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튜어디스의 지혜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50대 여자) 이익을 취하 는 것을 막고, 인권이 침해당한 사람(흑인 남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		
질문6. 새로운 결 말	사전 예방: 탑승권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곤란하거나 어려워하는 사항에 대해 항 공사에 알려주어 사전에 이러한 갈등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사전 교육: 항공기를 예약 시 승객에게 여러 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승객의 불평은 항공사측에서 탑승거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추가 질문	만약 스튜어디스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모든 좌석이 꽉 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 구정화 (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8(1), 1-12.
- 구정화·설규주·송현정 (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3~2010).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 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 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유치원장(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2009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교사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2009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심화과정: 인권으로 통하는 학교 만들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학교 인권교육 전문가 워크숍.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세진 (2002). 초등학교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자·김규수·김현정·장희경 (2003). 도시지역 유치원의 일일교육계획안에 나타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 교육내용 분석, 통일 사회지향적인 민주시민교육활동프로그램 모형 준거개발을 위한 기초연구(Ⅲ). 열린유아교육학회지, 8(2), 49-71.
- 김숙자·김현정 (2008).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지, 12(2), 117-134.

- 김숙자·김현정·변선주 (2008).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 나타난 인권 교육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4. 유아교육학논집, 12(6), 5-29.
- 김영옥·최미숙 (1995). 유아기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적 관심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지, 15(1), 39-58.
- 김정래 (1999).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원리. 아동권리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21-47.
- 김홍규 (2007). Q 표본의 특성연구: 특성, 종류, 준비과정. 한국주관성연구학회지, 14, 19-39.
- 나 정 (2001). 한 교원 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류은숙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문미희 (2005).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문용린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경양 (2005). 빈곤결식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69, 28-31.
- 박상준 (2003).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115-141.
- 박은혜 (2009).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보육교사용). 보건복지부·세이브더칠드런.
- 서영숙·서혜정·김진숙 (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 및 요구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지, 13(3), 213-236.
- 서영숙·서혜정·김진숙 (2010). 아동권리교육이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지, 14(6), 35-60.
- 서정은 (2001).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서현아·배지미 (2004). 유치원 교사의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1), 115-146.
- 성정숙 (1999). 학생과 교사의 아동·청소년 권리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길연 (2009).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심정보 (2000).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국제이해교육, 4, 35-74.
- 심정보 (2002).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안경환 (2004). 교사를 위한 인권 용어 사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안동현 (1997). 아동의 권리, 필요성, 역사성 및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지, 창간호, 9-22.
- 양심영 (2003). 아동인권교육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아동인권교육 포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강안 (2009). 아동기 개념 형성과 모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배근 (1997).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한국아동권리학회지, 창간호, 35-46.
- 이소라 (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희 (1999). 유아용 권리교육 프로그램. UN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9-73.
- 이양희 (2004).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양희·구미향·정영선(2009). 세계시민으로서 아동. 한국아동학회지, 30(6), 183-194.
- 이용교 (1999). 아동권리 지킴이 프로그램.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5-100.
- 이용교 (2003). 아동의 참여권에서 본 영유아보육 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8(2), 89-110.
- 이재연·강성희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지, 창간호, 65-83.

- 이재연·이소라 (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지*, 2(1), 25-41.
- 이혜경 (2006).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원·최경옥·이혜영 (2009).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론 교과목의 개발과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회*, 29, 73-96.
- 이희경·김성수 (2000). 유아교사의 역할 Q-set 개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지*, 4(1), 27-54.
- 인권운동사랑방(2000).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2000 워크샵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2001).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2000 워크샵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2003).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2000 워크샵 자료집.
- 정선아 (2002).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지*, 6(2), 365-384.
- 최윤진 (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최윤진 (1999). 청소년 권리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10(1), 5-23.
- 한영숙 (2006). 초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지도자료 개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옥경 (2010). 아동권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아동참여권 증진을 위한 권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한국어린이재단, 27-56.
- Agee, J. (1997). Readers becoming teachers of literature.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29(3), 397-431.
- Beeby, C. E. (1966). *The quality of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ild Rights Foundation (2006). *Experience in Child Rights Mainstreaming in the Education System*. CRF.

- Council of Europe(2009).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Poland: OSCE/ODIHR.
- Jensen, M. A., & Chevalier, Z. W. (1990). *Issues and advocacy in early education*. Massachusetts: Simon & Schuster, Inc.
- Korthagen, F. A. J. (2001). *Linking Practice and Theory: The Pedagogy of Realistic Teacher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Seattle, WA.
- Lansdown, G. (2005).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Flornce, Italy: UNICEF Innocenti. Reseach Centre.
- Morrison, G. S. (1976).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Columbus: the Free Press.
- Read, K., & Patterson, J. (1980). *The nursery school and kindergarten*. New York: Holt, Rinehatt and Winston.
- UN (2003). *ABC -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 UN (2010).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ited Nations.
- UN CRC (2005).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United Nations.
- UN CRC (2011).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 UNESCO. (1998). *All Human Being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Belgium, The Teacher Library, UNESCO.
- UNESCO (2006). *Plan of Actio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First Phase*. Paris: UNESCO.
- USAID (2009). *DOORWAY III: Teacher Training Manual on School-Related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and Response*. USAID.
- Whitebook, M., Howes, C., Phillips, D., & Pemberton, C. (1989). *Who cares? Young Children*, 45(1), 41-45.

〈교육프로그램〉

- 권영복 (2001). 아동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영·김수암·김현아·정금자 (2000). 유아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인숙·오선영·송수잔·정필현 (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대한민국정부 (2008).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 문미희 (2005).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경기: 한국학술정보.
- 문채련·이소은 (2005).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 한국생활과학지, 14(3) 387-399.
- 박정옥·김태인 (2011). 아동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야누슈 코르차 (2002). (야누슈 코르차의) 아이들 (노영희 역). 서울: 양철북.
- 우남희 (1999). 어린이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소파 방정환에 대한 다각적 분석. 아동권리연구, 3(2), 101-106.
- 유경숙·김수옥 (2004). 유아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13(2), 293-302.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9). 아시아의 인권교육. 서울: 사람생각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0).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 이강안 (2009). 아동기 개념 형성과 모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화·도미향·김민정·서우경 (2001). 그것은 아동 학대예요. 서울: 동문사.
- 이재연 (1999). 소파 방정환과 한국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연구, 3(2), 107-119.
- 이현섭·김상운·추정선·조선희 (2002).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정선아 (2002).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 고찰-인쇄술과 대중교육의 맥락에서-. 아동권리연구, 6(2), 36-384.
- 정영근 (2002). 루소와 개혁교육학의 아동기 이해와 인격으로서의 어린이.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30, 117-13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d.). 아동학대. 2012년 3월 2일 검색,
<http://http://korea1391.org>

혼다 마스코 (2002). 20세기는 어린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 <어린이의 세기>에서 <어린이의 권리조약>까지 (구수진 역). 서울 : 한림토틀북.

Allson Lee (2008). Childminder's Guide to Health & Safety and Child Protection. UK: Continuum.

CRIN (n.d.). Guide to child rights mechanisms. 2012년 2월 8일 검색,
<http://www.crin.org/resources/infoDetail.asp?ID=19952&flag=report>

EBS 아동범죄미스터리의 과학 제작팀 (2010). 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갈까?. 서울: 지식채널

HM Treasury (2008). Ending Child Poverty; Every-body's Business. 2012년 2월 7일 검색, http://www.hm-treasury.gov.uk/d/bud08_childpoverty_1310.pdf

부록

육구조사 질문지(설문조사)

육구조사 질문지(면접조사)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



시·도	원번호	응답자일련번호

유아 ·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팀은 유아와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아동인권연구팀과 국제아동인권센터가 만나 이루어진 팀입니다. 연구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유아와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마련을 위하여 「**유아용 · 유아교사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생님들의 견해를 파악하여 향후 현장에서 활용될 유아 및 유아교사를 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인권교육과 관련 정책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질적인 향상과 유아교사로서 충실히 아동권리의 의무이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1부 유아교사에 관한 질문, 2부 유아에 관한 질문**으로 두 부분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반드시 선생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문항 하나를 선택해주시고, **중복응답 할 경우 응답처리를 할 수 없게 되니 확실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 13조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공한 설명을 모두 숙지하시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란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2011년 11월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팀
책임연구원 이 양 희 · 김 인 숙

※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팀 책임연구원 이 양 희 · 김 인 숙>

전화 : 010-4937-1017 / 02)741-3132 / FAX : 02)6455-3132

주소 : 우110-608.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819호 국제아동인권센터

E-mail : younga214@naver.com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응답자에 관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성별	☐ ①여자 ☐ ②남자	2. 연령	만 세 (년생)
3. 원 주소	사·도 시·군·구 읍·면·동		
4. 원 명	유치원 / 어린이집		
5. 분류	☐ 국공립(☐ 시립 ☐ 구립) ☐ 법인 ☐ 민간 ☐ 직장보육 ☐ 가정 보육		
6. 자격사항	유치원정교사 ☐ 시설장 ☐ 1급 ☐ 2급 보 육 교 사 ☐ 시설장 ☐ 1급 ☐ 2급 ☐ 3급 유아특수교사 ☐ 1급 ☐ 2급		
7. 직급	☐ 시설장·원장·원감 ☐ 교사 ☐ 기타()	8. 경력	만 년
9. 교사의 전공		10. 담당 유아연령	만 세
11. 연락처	원)	E-mail)	

※ 문항 선택 시 유의 사항 ※

1. 반드시 선생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문항 하나만 선택 (중복응답 X)** 해주십시오. 중복응답 할 경우 응답처리를 할 수 없게 되니 확실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문항의 진행 방향을 잘 파악하여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누락 된 문항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유아교사에 관한 질문

○ 1부는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에 관한 조사입니다. 응답에 따른 문항의 순서를 잘 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권리교육이나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있다(문항1-1로 진행) ☐ ②없다(문항2로 진행)

1-1. 들어보셨다면, 언제 처음 접하셨습니까?

- ☐ ①교사가 되기 전 ☐ ②교사가 된 이후

1-2. 들어보셨다면, 어떻게 처음 접하셨습니까?

- ☐ ①책이나 TV 등 매체 ☐ ②대학 교육과정 ☐ ③자격 및 보수교육
☐ ④외부특강 ☐ ⑤기타()

1-3. 아동(18세 미만)은 물론 아동을 직접 만나는 교사에게 인권교육이란 ‘미래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충분히 동의하며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②동의하지만 인권교육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 ③동의하지만 인권교육 실시는 현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④동의하지 않는다. ☐ ⑤잘 모르겠다.

2. 시민운동단체나 인권관련단체, 아동관련 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없음(문항2-1로 진행) ☐ ②있음(단체명:)(문항3으로 진행)

2-1. 아직 없으시다면, 앞으로 참여나 후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대체로 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3. 선생님은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 ①있음(문항3-1로 진행) ☐ ②없음(문항4로 진행)

3-1. 어떤 기관으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 ①정부기관(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 ②시민단체나 인권관련 단체 ☐ ③아동관련 단체
☐ ④교원단체(전교조, 한국교총 등) ☐ ⑤대학 교육과정 내
☐ ⑥대학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 ⑦기타()

3-2. 언제 처음 인권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 ①교사가 되기 이전 ☐ ②교사가 된 이후

3-3.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인권교육이나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없음(문항4로 진행) ☐ ②1~2회(문항3-4로 진행)
☐ ③3~4회(문항3-4로 진행) ☐ ④5회 이상(문항3-4로 진행)

3-4. 자신이 가장 최근에 받으신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 ☐ ①특강 ☐ ②보수교육 ☐ ③자격·승급교육
☐ ④법인이나 재단 내 교육 ☐ ⑤대학수업 ☐ ⑥기타()

3-5. 가장 최근에 받으신 인권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인권의 역사 ☐ ②인권과 법
☐ ③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 ④아동관련 이슈(장애아교육, 아동학대, 안전 등)
☐ ⑤기타()

3-6. 가장 최근에 받으신 인권교육은 어땠습니까?

- ☐ ①매우 효과적(문항3-7로 이동) ☐ ②비교적 효과적(문항3-7로 이동)
☐ ③보통(문항3-7로 이동) ☐ ④효과적이지 않음(문항3-8로 이동)
☐ ⑤전혀 효과 없음(문항3-8로 이동)

3-7.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까?(문항3-9로 이동)

- ☐ ①유아교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 콘텐츠(내용)
☐ ②인권감수성 향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콘텐츠(내용)
☐ ③교육방법의 적합성 ☐ ④실제 적용의 용이 ☐ ⑤기타()

3-8.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문항3-9로 이동)

- ☐ ①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한 교육 콘텐츠(내용)
☐ ②교육강사의 전문성 부족
☐ ③정보전달 위주의 교육에 그친 교육 내용 ☐ ④교육방법의 부적절함
☐ ⑤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미흡 ☐ ⑥기타()

3-9.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자신이 직접 교실에서 활용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 ①예(문항3-10으로 이동) ☐ ②아니오(문항5로 이동)
☐ ③직접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활용을 해볼 의향이 있음(문항5로 이동)

3-10. 어떤 형태로 활용하셨습니다?

- ☐ ①유아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 전반 ☐ ②영역별 교육프로그램
☐ ③부모교육 및 교사교육 ☐ ④기타()

3-11. 활용했을 때 효과는 어땠습니까?

- ☐ ①매우 효과적 ☐ ②비교적 효과적 ☐ ③보통
☐ ④효과적이지 않음 ☐ ⑤전혀 효과 없음

4. 발령 이후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교육이 마련되지 않음
☐ ②특별연수로 이루어져 자신에게 기회가 없었음
☐ ③기회는 있었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④과중한 업무 ☐ ⑤기타()

5.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전혀 필요 없음 ☐ ②대체로 필요 없음 ☐ ③보통
☐ ④대체로 필요함 ☐ ⑤매우 필요함

6.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연수를 진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 ①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 ②거의 참여할 생각 없음 ☐ ③보통
☐ ④대체로 참여할 생각 있음 ☐ ⑤적극 참여할 생각 있음

7.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연수 방법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보수교육 ☐ ②자격·승급교육 ☐ ③관할지역별 특강
☐ ④원 자체 특강 ☐ ⑤대학 교육과정 내 ☐ ⑥기타()

8. 인권교육의 진행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강의 ☐ ②프로젝트 탐구 학습
☐ ③역할극 ☐ ④모둠활동(토론 및 협동)
☐ ⑤시청각 자료 활용(영상 및 매체) ☐ ⑥현장체험 / 캠프
☐ ⑦게임·놀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 학습 ☐ ⑧기타()

9.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수학습원리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다양한 프로그램(놀이/게임)을 통한 태도 및 심리적 변화
☐ ②모방을 이용한 모범사례의 학습
☐ ③문제해결중심접근 ☐ ④배운 내용의 현실 연계 및 적용
☐ ⑤사례분석을 통한 인지적 갈등 유발을 통한 사고력 함양
☐ ⑥기타()

10.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②인권감수성 훈련 내용
☐ ③아동권리의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생존 및 발달)
☐ ④아동을 존중하는 태도 ☐ ⑤체벌이나 부적절한 언행
☐ ⑥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 형성 ☐ ⑦기타()

11. 유아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인권관련 문제는 무엇입니까?

- ☐ ①아동학대와 방임 ☐ ②아동과 교사의 안전 ☐ ③영양 및 보건
☐ ④놀이와 여가 ☐ ⑤의사소통 방법 ☐ ⑥교사의 권리
☐ ⑦기타()

* 문항 10, 11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주제가 있으면 기술 해주십시오.

12.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성과 현실가능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을 기대하십니까?

- ☐ ①기존의 연수나 보수교육을 통한 워크숍 ☐ ③특강
☐ ②인권교사교육을 받은 현직교사의 전달연수 ☐ ⑤사이버교육
☐ ④인권이나 아동관련 단체의 캠프형태 ☐ ⑦기타()
☐ ⑥사이버교육과 캠프 병행

13.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행할 때, 몇 회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일회성 특강 ☐ ②5-7회기 단기프로그램 ☐ ③한 학기 교육프로그램
☐ ④정기적 프로그램 ☐ ⑤기타()

14.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행할 때, 한 회기 당 몇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시간 이내 ☐ ② 2-3시간 ☐ ③ 5시간 ☐ ④ 8시간 ☐ ⑤ 기타()

15.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강사진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인권교육을 받은 현직교사 ☐ ② 아동(교육)전문가
☐ ③ 인권변호사 ☐ ④ 인권단체, 아동관련단체의 교육훈련가
☐ ⑤ 관련학과 대학교수 ☐ ⑥ 기타()

16. 선생님께서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구성하시겠습니까?

- ☐ ① 아동인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재
☐ ② 인권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과 사례 중심의 워크북
☐ ③ 인권적인 학급 및 기관 운영을 위한 현장 적용 자료집
☐ ④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 중심의 자료집
☐ ⑤ 기타()

17.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실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료나 프로그램의 부족 ☐ ② 수업시간 확보의 어려움
☐ ③ 참여자의 동기 부족 ☐ ④ 전문강사의 부족
☐ ⑤ 교사 및 기관장의 관심부족 ☐ ⑥ 기타()

18. 만약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이 정책상 실시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① 예 ☐ ② 아니요

육구조사 질문지(면접조사)

인권 및 유아교육 전문가

인권의 정의, 개념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아동인권이란? 왜 아동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

선생님이 받아보신 인권교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에 대해 말씀해주시오.

유아 대상으로 한 차별 상황 중 가장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에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어떤 방향으로 아동인권을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교사

인권의 정의, 개념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아동인권이란? 왜 아동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인권교육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에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때, 어떤 방향으로 아동인권을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Human Rights, child rights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다른 용어가 있다면?

아동인권 관련 요소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까?

유아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원장

인권의 정의, 개념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아동인권이란? 왜 아동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으셨나요?

현재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이 있습니까?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아동최상의 이익’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으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가장 기억하고 계신 유아 대상으로 한 차별 상황이 있다면?

유아에게 참여적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인권교육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에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어떤 방향으로 아동인권을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인권 관련 요소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까?

유아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유아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신다면, 어려운 점은? 그 어려운 점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그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모

인권의 정의, 개념

영상)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평소 인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평소 아동인권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있으시다면?

왜 아동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현재 이 원에 다니는 자녀분과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인권교육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에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면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동인권 관련 요소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까?

유아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일반인

인권의 정의, 개념

영상)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평소 인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평소 아동인권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있으시다면?

왜 아동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

인권교육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이 원에 다니는 자녀분과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인권교육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유아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에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사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면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아동인권 관련 요소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까?

유아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쉽게 풀어 쓴 UN 아동권리조약³³⁾

- 제 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 제 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제 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 제 4조: 국가는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현실화시킬 의무를 갖는다.
- 제 5조: 국가는 아동의 능력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해야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여야 한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제 6조: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제 7조: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가능한 한 날 낳아준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8조: 우리는 국가에 의해 신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 9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주지 않을 때 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 10조: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거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를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3) 본 내용은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2004)에서 발체 함

- 제 11조: 불법적으로 유괴를 당하거나 외국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국가는 우리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 제 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제 13조: 우리는 말, 글, 예술 등을 통해 우리 생각을 표현하고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과 정보를 얻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 제 14조: 우리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 제 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모임은 안 된다.
- 제 16조: 우리는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을 불법적으로 함부로 간섭받지 않는다. 명예 훼손이나 모욕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 제 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고 해로운 정보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제 18조: 부모님 두 분 모두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양육·보호 시설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 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 제 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 22조: 우리가 난민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받고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생활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플 때는 모든 보살핌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제 25조: 보호나 치료를 위해 나라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국가는 정기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정을 실시해야 한다.
- 제 26조 : 우리는 사회보장을 통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7조 :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할 정도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 제 28조 :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이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 29조 :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제 30조 : 우리가 소수집단이나 선주민인 경우, 우리들의 문화를 즐기고, 우리들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 31조 : 우리에게 쉼과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가나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 제 32조 :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이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해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 33조 : 우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 34조 : 우리는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제 35조 :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 36조 :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37조 :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고문을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어른들과 함께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감옥에 있더라도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8조 :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39조 : 전쟁이나 홍수, 지진, 고문, 학대 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를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0조 :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경찰과 변호사와 판사는 우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우리 나이를 고려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처벌의 목적은 우리가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한다.

제 42조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도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유아교사 인권교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을 검토해주신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정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자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숙 교수님 경인여자대학 아동보육과
주혜영 원장님 산내들 생태어린이집

도와주신 보조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김나영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석사
전미아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옥경 선생님 도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한숙 선생님 성남시립장애아전담 한마음어린이집

도와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산내들 생태어린이집
서울경인유치원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